

발행인: 서울특별시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731-6112

서울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2620호 2005. 3. 17.(목)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자 치 법 규

[조 례]

제4263호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5

※ 서울시보게재를 의뢰한 각급 기관에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보 게재내용은 발행일에 서울시 사무자동화 및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 게재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TEL. (02)731-6112
- 서울시보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때는 다음날 발행.
- 서울시보게재접수는 D-3일까지 접수하며, 전자문서나 디스켓 또는 e-mail : sibo2000@seoul.go.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접수마감>

월요일 14:00

- ※ 시보게재접수를 중복되지 않게 보내기 바랍니다.
(예, 시보를 발행한 후 접수되는 경우)
-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원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중복된 공고(신문,관보,시보,구보)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시다.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속>

공 람									



제4264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7
제4265호 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운영조례	8
제4266호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0
제4267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11
제4268호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	11
제4269호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	12
제4270호 서울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	13

[규 칙]

제3431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14
제3432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	16
제3433호 서울특별시측량업등록및행정처분기준에관한규칙	21
제3434호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등의안전관리규칙	24

[입법예고]

제2005-321호 서울특별시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운영조례안입법예고	26
제2005-351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27
제2005-360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28
제2005-361호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28
제2005-362호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29
제2005-378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30

◎ 시

제2005-6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폐지)	31
제2005-69호 서울특별시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	31
제2005-70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변경)	33
제2005-71호 공릉2택지개발사업지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38
제2005-72호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39
제2005-73호 도시계획사업(하천)실시계획변경인가	39
제2005-76호 도시관리계획(종로·세종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	50
제2005-77호 도시관리계획(주교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50

◎ 공 고

제2005-326호 우면산터널통행료변경	52
제2005-335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자행정처분청문 실시	52
제2005-337호 종교관계비영리법인설립허가	54
제2005-340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자행정처분	54

제2005-343호	신정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54
제2005-345호	다단계판매업자등록사항변경	55
제2005-356호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업자행정처분청문 실시	55
제2005-358호	서빙고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재공람	56
제2005-359호	청담·도곡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재공람	61
제2005-363호	여의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재공람	69
제2005-364호	잠실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위한공람	75
제2005-365호	암사·명일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공람	81
제2005-366호	가락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재열람	86
제2005-367호	이수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재열람	90
제2005-368호	원호·이촌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재열람	94
제2005-369호	서울특별시의회부의안건	101
제2005-370호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위탁운영체모집	101

◎ 구 고 시

제2005-12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종로구)	103
제2005-14호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지형도면작성(광진구)	104
제2005-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결정(변경)및지형도면(동대문구)	105
제2005-28호	도시관리계획결정의실효고시및재결정(중랑구)	106
제2005-29호	도시계획시설(나들이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지형도면(중랑구)	107
제2005-15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인가(강북구)	109
제2005-1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실시계획인가(도봉구)	112
제2005-16호	도봉제1구역주택재개발사업공사완료(도봉구)	113
제2005-17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결정(도봉구)	114
제2005-2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응암4동어린이놀이터)실시계획작성(은평구)	114
제2005-2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실시계획인가및시행자지정(양천구)	118
제2005-2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실시계획변경인가(양천구)	118
제2005-1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동작구)	119
제2005-13호	공용건축물건축협의및도시계획시설(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관악구)	122
제2005-14호	도시계획시설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실시계획(변경)인가(관악구)	123
제2005-22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서초구)	124
제2005-10호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지형도면승인(송파구)	125
제2005-1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강동구)	125

◎ 구 공 고

제2005-164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을위한열람(성동구)	127
제2005-14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강북구)	144
제2005-17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인가열람(은평구)	147
제2005-100호	도시계획시설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독산·난곡지구)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금천구)	153

◎ 사업소고시

제2005-41호 하천점용허가(한강시민공원사업소)	155
제2005-3호 소방시설업등록(영등포소방서)	155

◎ 사업소공고

제2005-가-2호 도시공원시설(천호동공원전시관)관리위탁(녹지사업소)	156
제2005-49호 공인신조등록및폐기(시립대학교)	156
제2005-3호 소장작품구입(시립미술관)	157
제2005-6호 소방시설업등록(성동소방서)	157
제2005-5호 소방시설업신규등록(중랑소방서)	158
제2005-1호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성북소방서)	158
제2005-7,8호 소방시설업신규등록(마포소방서)	158
제2005-13호 소방시설업신규등록(서초소방서)	159

◎ 기 타

제2005-43호 하천점용허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160
제2004-9-1호 변경고시(국방부)	160
제2004-35-1호 실시계획승인(변경)(국방부)	162

자 치 법 규

[조 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인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263호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개발기금의 설치) ①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이하 “지역개발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집행을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두되, 이를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제3조 (지휘·감독)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기본계획 및 그 업무의 관리·집행 등과 관련하여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4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시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운영에 대하여는 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지역개발기금의 조성) 지역개발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지역개발채권의 발행수입
3. 지역개발기금의 운용수익금
4. 정부지원금 및 정부융자금
5. 그 밖에 지역개발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6조 (지역개발기금의 용도) ①지역개발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2.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3. 지역개발기금조성을 위한 융자금 및 서울특별시지역개발채권의 상환
4. 그 밖에 지역개발기금의 운용목적상 그 활용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기금의 용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자는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개발기금의 운용규모
2. 지역개발기금의 용자계획
3. 지역개발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현금의 일시전용)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자는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설치) ①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재정운영과 지역개발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개발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개발기금의 용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 사업의 투자재원확보와 지역개발기금 재원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지역개발채권(이하 “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개발채권은 공사채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지역개발채권의 매출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과 매입면제대상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자에 대하여는 시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도시철도공채를 제외한다)를 중복하여 매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지역개발채권의 매출방법) 시장은 당해 연도중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에 대한 도시철도공채의 매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기간동안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매출 및 상환업무 위탁)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업무 및 원리금상환업무에 대하여 시금고의 본점 및 지점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지역개발채권의 상환등) ①지역개발채권의 원금과 그 이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행일부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에 상환하며, 당해 채권의 이율은 연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일부부터 기산하되,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 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동 기금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 운용·관리하도록 함.
- 나.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용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다.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자에 한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매출대상에 대하여는 도시철도공채를 제외한 다른 지방채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도록 함.
- 라. 지역개발채권 매출방법은 당해 연도중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공채의 매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기간동안 이를 매출하도록 함.
- 마.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은 그 발행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일시 상환하도록 하며, 당해 채권의 이율은 연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을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을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
- 3.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 4.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 5. 과학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법률 제 6060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 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 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한다.
-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인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264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연간 65,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2조제2항·제3항 본문 및 제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취득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②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세 면제에 대한 특례) 제2조 제3항 본문 및 제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본인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한 자로서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 까지분의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가 국가대부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등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세 등의 감면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함으로써 조세행정의 합리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에 대하여도 이를 면제하도록 함.

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도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함.

다. 2005년부터 자동차세가 대폭 인상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자동차세액의 50%를 경감하도록 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운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265호

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출연하는 예술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단체”라 함은 음악·연극·무용 및 뮤지컬 등 예술분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그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설립) 예술단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예술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연예술활동의 수행
2.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3. 공연예술시설의 관리·운영
4.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협력
5.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

<p>하는 사업</p> <p>6. 그 밖에 예술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제5조(기본재산 등) ①예술단체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p> <p>②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예술단체의 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p> <p>제6조(정관) 예술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p>제7조(임원) ①예술단체에 이사장·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p> <p>②이사장 및 대표이사는 시장이 각각 임면한다.</p> <p>③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p> <p>제8조(임원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예술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p> <p>②감사는 예술단체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제9조(이사회) ①예술단체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p>	<p>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한다.</p> <p>제10조(직원) 예술단체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p> <p>제11조(사업연도) 예술단체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p> <p>제12조(사업계획서의 승인 등) ①예술단체는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예술단체는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술단체의 경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14조(경영평가)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술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예술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의 수행방식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예술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p>
---	--

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의 공연문화예술을 획기적으로 진흥하고, 시민에게 질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출연금으로 설립되는 예술관련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음악·연극·무용 및 뮤지컬분야에 대하여 예술단체를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
- 나. 예술단체는 공연예술활동의 수행, 공연 예술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공연예술 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다. 예술단체에 이사장·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되, 이사장 및 대표이사는 시장이 각각 임명하도록 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함.
- 라. 예술단체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의하도록 하고, 예술단체는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 마. 시장은 예술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당해 예술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266호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및”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공영차고지로부터 6km 이내에 노선의 기·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와 공영차고지 해당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은 입주업체가 사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부과·징수한다.

- 1.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연 15

퍼센트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중전의 별표 1)제2호중 “성수1가1동”을 “성수1가2동”으로 하고, 동표제3호중 “성수2가2동, 성수2가4동”을 “노유1·2동”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연체요금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영차고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영차고지 시설사용료 미납에 대한 연체료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함으로써 입주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종전에는 공영차고지 사용료 미납에 따른 연체요율을 일률적으로 연 15퍼센트로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퍼센트·13퍼센트·14퍼센트로 차등적용 하도록 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267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 외의 부분중 “30일”을 “3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자동차전용도로 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점용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의 자동차전용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30일 초과인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만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10일 초과인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도 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268호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1호중 “임대보증금은 제9조 규정에 의한 재산가격의 25퍼센트로 하되, 납부는 일시금으로 한다. 다만, 청구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의 2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차액은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를 “임대보증금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월임대료의 24월분으로 하되,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로 하고, 제2호중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로 하며, 제4항중 “증액”을 삭제하고, “시장이 정한다”를 “관리인이 정한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산가격의 산정) 점포의 재산가격 산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제3항중 “시장이 공공목적이나 지하도상가관리의 필요에 의하여 점포의 철거 또는 재배치하고자 하는 경우”를 “관리인이 지하도상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수선 또는 점포를 재배치하는 경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철거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를 “철거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대보증금 산정 및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수의계약의 임대보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수의계약에 대한 임대보증금 산정 및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수의계약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점포 재산가격의 25퍼센트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이를 월임대료의 24월분으로 산정하는 한편, 당해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종전에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증액 청구의 기준을 시장이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청구의 기준을 관리인이 정하도록 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269호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도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영 제41조제1항제8호”를 “영 제41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

47조의6”을 “주택법 제76조”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서류가”를 “서류틀”로 한다.
 제24조제3항제1호중 “건축법 제2조제1호”
 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5조제3항중 “제64조제1항”을 “법 제64
 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7호중 “공고”를 “고시”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8. 제4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
 역의 변경지정 및 고시
 제42조제1호중 “구의회”를 “지방의회”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5.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
 구역의 변경지정(영 제12조 및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 ②(정비구역지정의 입안신청에 관한 적
 용례) 제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요구되는 정비구
 역지정 입안신청분부터 적용한다.
- ③(정비구역 변경지정의 권한위임에 대
 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
 으로부터 시장에게 신청된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정비
 구역지정을 입안하는 경우 당해 입안요
 구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비구역의 변경지
 정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
 임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화·효율화
 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동의
 을 산정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도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대한 동
 의로 보도록 함으로써 정비구역지정
 입안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함.
- 나.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이나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비구역의 변경지정권한을 구청장에
 게 위임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함.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산업
 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270호

서울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

서울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산업통상진흥
 원설립·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서울산업진흥재단”을 “재단법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
 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7호 내지 제9
 호로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3. 창업정보의 제공

6.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관리·운영

제14조중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를 “시

의 일반회계”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경영평가)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의 수행방식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의 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바목중 “산업진흥재단”을 “재단법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서울산업진흥재단”을 “재단법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산업진흥재단”의 명칭을 “재단법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동 재단의 전략산업육성 및 해외통상지원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고, 동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규 칙]

◎서울특별시규칙 제3431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총계란중 본청 “3,235”를 “3,296”으로, 사업소 “6,628”을 “6,567”로 하고, 일반직 계란중 총계 “6,419”를 “6,432”로, 본청 “2,464”를 “2,480”으로, 사업소 “3,510”을 “3,507”로 하며, 일반직 3급 소계란중 총계 “20”을 “19”로, 본청 “11”을 “10”으로 하고, 일반직 3급 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또는공업부이사관란중 총계 “6”을 “5”로, 본청 “5”를 “4”로 하며, 일반직 5급 소계란중 총계 “830”을 “832”로, 본청 “440”을 “442”로 하고, 일반직 5급 행정란중 총계 “351”을 “352”로, 본청 “261”을 “262”로 하며, 일반직 5급 통신란중 총계 “13”을 “14”로, 본청 “4”를 “5”로 하고, 일반직 5급 토목또는건축란중 총계 “5”를 “6”으로, 본청 “4”를 “5”로 하며, 일반직 5급 수도토목또는연구원(환경·공업)란 다음의 통신란을 삭제하고, 일반직 6급 소계란중 총계 “2,077”을 “2,085”로, 본청 “987”을 “992”로, 사업소 “943”을 “946”으로 하며, 일반직 6급 행정란중 총계 “808”을 “809”로, 사업소 “144”를 “145”로 하고, 일반직 6급 세무란중 총계 및 본청 “27”을 각각 “29”로 하며, 일반직 6급 임업란중 총계 “43”을 “44”로, 사업소 “22”를 “23”으로 하고, 일반직 6급 의무란중 총계 및 사업소 “13”을 각각 “12”로 하며, 일반직 6급 간호란중 총계 “100”을 “101”로, 사업소 “95”를 “96”으로 하고, 일반직 6급 토목란

<p>중 총계 “184”를 “186”으로, 본청 “61”을 “63”으로 하며, 일반직 6급 수도토목란중 총계 “146”을 “147”로, 사업소 “144”를 “145”로 하고, 일반직 6급 건축란중 총계 “51”을 “52”로, 본청 “32”를 “33”으로 하며, 일반직 7급 소계란중 총계 “2,210”을 “2,214”로, 본청 “819”를 “827”로, 사업소 “1,254”를 “1,250”으로 하고, 일반직 7급 행정란중 본청 “433”을 “434”로, 사업소 “198”을 “197”로 하며, 일반직 7급 세무란중 총계 및 본청 “28”을 각각 “30”으로 하고, 일반직 7급 전산란중 총계 “111”을 “112”로, 본청 “79”를 “80”으로 하며, 일반직 7급 기계란중 본청 “14”를 “15”로, 사업소 “87”을 “86”으로 하고, 일반직 7급 임업란중 총계 “66”을 “67”로, 본청 “21”을 “22”로 하며, 일반직 7급 환경란중 본청 “12”를 “13”으로, 사업소 “17”을 “16”으로 하고, 일반직 7급 수도토목란중 총계 “107”을 “106”으로, 사업소 “106”을 “105”로 하며, 일반직 7급 통신란중 총계 “41”을 “42”로, 본청 “17”을 “18”로 하고, 일반직 8급 소계란중 총계 “810”을 “823”으로, 본청 “81”을 “83”으로, 사업소 “669”를 “680”으로 하며, 일반직 8급 행정란 중 총계 “139”를 “141”로, 본청 “31”을 “33”으로 하고, 일반직 8급 기업행정란중 총계 및 사업소 “185”를 각각 “196”으로 하며, 일반직 9급 소계란중 총계 “274”를 “261”로, 사업소 “249”를 “236”으로 하고, 일반직 9급 행정란중 총계 “44”를 “41”로, 본청 “6”을 “4”로, 사업소 “32”를 “31”로 하며, 일반직 9급 기업행정란중 총계 및 사업소 “61”을 각각 “50”으로 하고, 일반직 9급 기계란중 본청 “1”을 신설하고, 사업소 “14”를 “13”으로 하며, 일반직 9급 화공란중 본청 “1”을 신설하고, 사업소 “16”을 “15”로</p>	<p>하며, 일반직 9급 의료기술란중 총계 및 사업소 “11”을 각각 “12”로 하고, 별정직 계란중 총계 “131”을 “130”으로, 사업소 “51”을 “50”으로 하며, 별정직 6급상당 소계란중 총계 “56”을 “55”로, 사업소 “26”을 “25”로 하고, 별정직 6급상당 아동특수교사란중 총계 및 사업소 “3”을 각각 “2”로 하며, 별정직 7급상당 항공관독사란중 총계 및 본청 “1”을 각각 “2”로 하고, 별정직 7급상당 영화기사란중 총계 “2”를 “1”로 하고, 본청 “1”을 삭제하며, 기능직 계란중 총계 “3,839”를 “3,827”로, 본청 “567”을 “612”로, 사업소 “2,972”를 “2,915”로 하고, 기능6급 소계란중 본청 “13”을 “18”로, 사업소 “241”을 “236”으로 하며, 기능6급 전기장란중 본청 “3”을 “4”로, 사업소 “95”를 “94”로 하고, 기능6급 기계장란중 본청 “4”를 신설하고, 사업소 “124”를 “120”으로 하며, 기능9급 소계란중 총계 “1,501”을 “1,499”로, 본청 “252”를 “272”로, 사업소 “1,137”을 “1,115”로 하고, 기능9급 토목원란중 본청 “1”을 신설하고, 사업소 “9”를 “8”로 하며, 기능9급 전기원란중 본청 “7”을 “9”로, 사업소 “137”을 “135”로 하고, 기능9급 기계원 기계란중 본청 “10”을 “14”로, 사업소 “251”을 “247”로 하며, 기능9급 위생원사역란중 총계 “68”을 “65”로, 본청 “7”을 “6”으로, 사업소 “38”을 “36”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원워드란중 본청 “69”를 “70”으로, 사업소 “49”를 “48”로 하며, 기능9급 사무원필기란중 총계 “76”을 “77”로, 본청 “28”을 “29”로 하고, 기능9급 조무원조무란중 본청 “9”를 “18”로, 사업소 “280”을 “271”로 하며, 기능9급 조무원사송란중 총계 “4”를 “5”로, 사업소 “2”를 “3”으로 하고, 기능9급 전산원란중 총계 “65”를 “64”로, 사업소</p>
--	---

“43”을 “42”로 하며, 기능9급 방호원란 중 본청 “29”를 “32”로, 사업소 “116”을 “113”으로 하고, 기능10급 소계란중 총계 “786”을 “776”으로, 본청 “128”을 “148”로, 사업소 “560”을 “530”으로 하며, 기능10급 전기원란중 총계 “119”를 “117”로, 본청 “4”를 “11”로, 사업소 “108”을 “99”로 하고, 기능10급 기계원 기계란중 총계 “204”를 “201”로, 본청 “24”를 “36”으로, 사업소 “172”를 “157”로 하며, 기능10급 운전원란중 총계 “64”를 “62”로, 사업소 “51”을 “49”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원위드란중 총계 “87”을 “86”으로, 사업소 “16”을 “15”로 하며, 기능10급 조무원조무란중 본청 “15”를 “16”으로, 사업소 “83”을 “82”로 하고, 기능10급 조무원사송란중 총계 및 사업소 “16”을 각각 “14”로 하며, 기능10급 전산원중 총계 “17”을 “18”로, 사업소 “8”을 “9”로 하고, 기능10급 방호원란중 총계 “52”를 “51”로, 사업소 “38”을 “37”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각각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랑·난지하수처리사업소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서울오페라하우스 건립 및 청계천복원 기념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84명(일반직 22명, 별정직 2명, 기능직 60명)의 직급·직렬 및 관리기관을 조정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규칙 제3432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인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1. 근속승진임용 또는 우대승진임용
2. 명예퇴직·공무사망에 의한 특별승진임용
3.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
4. 대우공무원 선발

제11조의2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정보통신망(인터넷을 말한다)에 의한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 위원

<p>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p> <p>③제한경쟁특별임용을 위한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p> <p>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을 위하여 응시자의 출신 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p> <p>제18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p> <p>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p>	<p>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p> <p>제19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계산의 기준일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로 한다.</p> <p>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3	주민등록초본 1통	○	병역사항 포함(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8	시험요구서 1부	○	
<p>별표 5 항공직렬의 일반항공직류 및 정비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정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기사(항공, 무선설비)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기사(항공, 무선설비)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기사(항공, 무선설비)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p>별표 6 제2호가목의 선박직렬의 선박일반 직류란 및 항공직렬의 일반항공직류 ·</p>			<p>조종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선박일반	1급항해사(3), 1급기관사(3), 1급통신사(4)	1급항해사, 2급항해사(2), 1급기관사, 2급기관사(2), 1급통신사(2)	2급항해사, 3급항해사(2), 2급기관사, 3급기관사(2), 1급통신사, 2급통신사(3)	3급항해사, 4급항해사, 3급기관사, 4급기관사, 2급통신사(2)	5급항해사, 6급항해사, 5급기관사, 6급기관, 2급통신사, 3급통신사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5)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p>별표 8 제1호의 기계직렬의 농업기계직류란, 전기직렬의 일반전기직류란, 자원직렬의 자원직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의 자원직렬 자원직류의 5급 이상관중 “지질”을 “응용지질”로</p>			<p>하며, 동호의 농업직렬의 직류란중 “식물검역”을 “식물방역”으로 하고, 동호의 항공직렬의 정비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p>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소방관리 기술사)	기능장(기계공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관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기기, 전기공사)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계, 정보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p>별표 8의3 제1호의 가산대상자격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산대상 자 격 증</p>	<p>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p>	<p>직업상담사 2급</p>	<p>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 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p>																				
<p>별표 8의4 행정직렬의 일반행정직렬·법무행정직렬 및 감사직렬, 세무직렬의 지방세직렬, 사회복지직렬의 사회복지직렬 및 기업행정직렬의 기업행정직렬의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농촌지도직렬 농업기계직렬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란중 “플랜트배관, 건축배관설비”를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공업배관, 건축배관설비”로, 기계직렬 기계운전직렬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란중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을</p>		<p>“천장크레인운전, 천장기중기운전, 로우더운전”으로, 기계직렬 조선직렬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란중 “선체의장, 동력기계정비”를 “선체의장, 선박기관정비, 동력기계정비”로, 자원직렬 자원직렬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란중 “지질”을 “응용지질”로, 공업연구직렬 산업경영직렬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란중 “소방”을 “소방설비”로, 건축연구직렬 건축직렬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란중 “소방”을 “소방설비”로 한다.</p>																					
<table border="1"> <tr> <td rowspan="3">행정</td> <td>일반행정</td> <td>-</td> <td>변호사, 변리사, 법무사</td> </tr> <tr> <td>법무행정</td> <td>-</td> <td>변호사, 변리사, 법무사</td> </tr> <tr> <td>감사</td> <td>-</td> <td>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td> </tr> </table>	행정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법무행정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감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table border="1"> <tr> <td>세무</td> <td>지방세</td> <td>-</td> <td>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td> </tr> <tr> <td>사회복지</td> <td>사회복지</td> <td>-</td> <td>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td> </tr> <tr> <td>기업행정</td> <td>기업행정</td> <td>-</td> <td>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td> </tr> </table>	세무	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기업행정	기업행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법무행정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감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세무	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기업행정	기업행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p>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별지 제12호 서식]

년도 ○○시험 면접시험 평정표(제18조 관련)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 시 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불합격	
		담당 확인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인사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안건을 명문화하여 인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제고하고, 공무원 임용시험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입증지외의 다른 방식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대한 서류전형합격방법 및 면접시험실시방법을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함으로써 임용시험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종전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의결 대상안건을 미리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다음과 같이 서면의결 대상안건을 규칙에 직접 명문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함.
 - (1) 근속승진임용 및 우대승진임용
 - (2) 명예퇴직·공무사망에 의한 특별승진임용
 - (3)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지급
 - (4) 대우공무원 선발
- 나.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 다. 공무원채용을 위한 서류전형에 있어 소정의 자격기준에의 해당여부를 기준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인원의 10배수 이상인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자격기준외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라.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필요한 소요 경력의 계산을 위한 기준일의 경우 종전에는 최초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로 이를 이원화하여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시험요구일로 일원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시험운영의 합리성과 내실화를 도모함.

☉서울특별시규칙 제3433호

서울특별시측량업등록및행정처분기준에 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인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측량업등록및행정처분기준에 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측량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51조제3항 단서 및 측량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지점등록 및 중복등록에 대한 등록기준과 영업정지 및 과태료의 경감·가중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기준) 측량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의 지점등록·중복등록을 위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영업정지의 경감·가중 기준) ①공공측량업자 및 일반측량업자가 영업정지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의 1/4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동거나 성격 또는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영업정지기간의 1/4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 경감·가중 기준) ①공공측량업자 및 일반측량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감·가중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측량법 제39조의2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감기준 : 과태료처분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중기준 : 과태료처분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②공공측량업자 및 일반측량업자외의자에 대한 과태료는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당해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경감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경감기준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의 지점등록·중복등록기준

1. 지점 등록

가. 공공측량업

구 분		공공측량업(본점)		공공측량업(지점)	
기술능력	1. 고급기술자	1인 이상		1인 이상	
	2. 중급기술자	2인 이상		1인 이상	
	3. 초급기술자	2인 이상		1인 이상	
	4. 측량분야의 중급기능사	1인 이상		-	
장비기준	1.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		택 2	
	2. 레벨(2급)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3급이상)	1조 이상	택 1		
	4.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나. 일반측량업

구 분		일반측량업(본점)		일반측량업(지점)	
기술능력	1. 고급기술자	1인 이상		고급기술자 1인 이상	
	2. 측량분야의 중급기능사	1인 이상			
장비기준	1. 트랜싯트(3급이상)	1조 이상	택 1	택 1	
	2. 데오드라이트(3급이상)	1조 이상			
	3. GPS수신기(2급이상)	2조 이상			
	4. 레벨(3급이상)	1조 이상			

2. 중복등록

구 분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기술능력	1. 고급기술자	1인 이상		고급기술자 1인 이상 또는 중급기능사 1인 이상	
	2. 중급기술자	2인 이상			
	3. 초급기술자	2인 이상			
	4. 중급기능사	1인 이상			
장비기준	1. 데오드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		-	
	2. 레벨(2급)	1조 이상		-	
	3. 거리측정기(3급이상)	1조 이상	택 1	-	
	4.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1조 이상	택 1
	5. 트랜싯트(3급이상)	-	1조 이상		
	6. 레벨(3급이상)	-	1조 이상		
	7. 데오드라이트(3급이상)	-	1조 이상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측량법 및 측량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공
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에 관한 사무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당해 측량업의 지점등록
및 중복등록을 위한 세부등록기준을 명
확히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
편, 공공측량업자 및 일반측량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의 경감·가
중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처
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공측량업자 및 일반측량업자가 각각
지점을 두는 경우 당해 지점의 등록기
준과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의 등
록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기
준을 각각 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를 도모 함.
- 나. 공공측량업자 및 일반측량업자에 대하
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영업정
지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
는 당해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1/4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감하도록 함.
- 다. 공공측량업자 및 일반측량업자에 대하
여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과태료처
분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고,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때에는 당
해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하도록 함.

○서울특별시규칙 제3434호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등의안전관리규
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인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등의안전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소속
소방공무원등의 안전한 소방활동의 수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
방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소방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소
방방재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서
울특별시소방서(파출소 및 구조대를
포함한다)·서울특별시소방학교·서
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서울특별시
항공대·서울특별시의무소방대 및
서울 특별시의용소방대를 말한다.
- 2. “소방공무원등”이라 함은 제1호의
소방기관에 각각 소속된 소방공무
원·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말한다.

제3조(소방안전현장의 준수)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등에 대하여 별
표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현장을 준
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소방활동에 대한 안전의식과 책임감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교육의 실시) ①소방기관의 장
은 소속 소방공무원등에 대하여 월 1
회 이상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소방학교의 장은 안전관
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편
성·운영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
전관리책임관을 위한 특별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책임관) ①소방공무원등의 소방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안전관리책임관을 둔다.

1. 소방방재본부: 소방행정과장
2.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장
3.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4. 소방학교: 총무과장
5. 청와대소방대: 청와대소방대부대장
6. 항공대: 항공대장
7. 파출소 및 구조대: 파출소장 및 구조대장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관리책임관을 둔다.

1. 화재·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책임관
2. 교육·훈련의 실시 및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방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사고방지교육의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발생의 조사·보고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방지대책의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기관별로 소방활동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소방활동의 중지요청) ①소방공무원등이 화재·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조제2항의 안전관리책임관에 대하여 본인의 소방활동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장구의 고장 등으로 소방활동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일시적인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소방활동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활동의 중지를 요청받은 안전관리책임관은 당해 요청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소방공무원등의 소방활동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③안전관리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활동의 중지상황에 대하여 지체없이 당해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고조사반의 운영) 소방방재본부장은 소방공무원등이 소방활동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또는 소방공무원등의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고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방안전현장(제3조관련)

- I. 나의 안전은 나와 국민의 생명이며, 우리 가족의 행복이다.
- I. 나의 안전장구 점검은 동료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 I. 나의 안전장비 확보는 내 숨결이며 생명선이다.
- I. 나의 안전과 동료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 I. 나는 자만심은 버리고 경계심은 늦추지 않는다.
- I. 나의 안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 I. 나는 결코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우리시소속 소방공무원등의 소방업무수행 및 교육훈련과정에서 공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방공무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소방안전현장을 제정하고, 소방활동의 수행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책임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상적인 소방활동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활동의 종합적인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소방활동에 대한 안전의식과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방안전현장을 제정하는 한편,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등에 대하여 소방안전현장의 성실한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시행하도록 함.
- 나.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등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서울특별시소방학교의 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함.
- 다. 소방공무원등의 소방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을 위하여 소방기관별로 안전관리책임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안전관리책임관이 담당하는 업무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함.
- 라. 소방공무원등이 안전장구의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소방활동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관에 대하여 본인의 소방활동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관은 당해 요청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제2005-321호

서울특별시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119시민수상구조대설치·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여름철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자율적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난 구조·구조활동을 수행하는 시민 자원봉사자 중심의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소방방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물놀이장소에서 인명구조·구급 및 안전사고예방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운영하도록 하되, 구조대원은 자원봉사자로서 대학생, 일반시민, 수상구조관련업무 종사경험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선발하도록 함.
- 나. 본부장은 서울특별시장이 구조대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물놀이장소에 물놀이장소의 규모·이용자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의 구조대원을 배치하도록 함.
- 다. 구조대의 운영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

- 고, 물놀이장소의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라. 본부장은 구조대의 운영장소에 구조대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함.
- 마. 본부장은 효율적 구조업무수행을 위하여 선발된 구조대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구조대원에게 복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복제의 제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하도록 함.
- 바. 본부장은 구조대원의 사기진작이나 안전의식의 강화를 위해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조대원에게 교육훈련비·여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사. 본부장은 구조대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대원이 업무수행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지급기준은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 재해보상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 아. 본부장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구조대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 구조구급과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2번지, 전화 : (02) 730-2119, FAX : 738-5119, E-mail : jaeok812@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5-351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융자금중 경영안정자금의 상환기간을 현행 “1년 거치 3년”에서 “1년 거치 4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5. 4. 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산업지원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전화:3707-9318, Fax:3707-9369, E-Mail:mgli@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5-360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산하 문화·공원시설과 미술관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때에 미술관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 또는 시출연기관에서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문화시설이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후 14일 이내에 미술관을 관람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이 관람료를 할인하도록 함.

할인된 관람료

구분	구분기준	금액(원)			
		현행관람료		할인관람료	
		개인	단체 (20인 이상)	개인	단체 (20인 이상)
어른	25세 이상 64세 이하	700	550	400	400
청소년 및 군인	◦ 13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 하사이하의 군인 (전투경찰·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를 포함한다)	300	250	200	200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5년 4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시립미술관장(참조: 총무부장,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전화: 2124-8853, 팩스: 2124-8830, E-mail: ghekim@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5-361호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서울역사박물관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산하 문화·공원시설과 박물관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때에 박물관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박물관 유료정기이용권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 또는 시출연기관에서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문화시설이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후 14일 이내에

박물관을 관람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이 관람료를 할인하도록 함.

할인된 관람료

구분	구분기준	금 액(원)			
		현행관람료		할인관람료	
		개인	단체 (20인 이상)	개인	단체 (20인 이상)
어 른	19세 이상 64세 이하	700	550	400	400
청소년 및 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하사이하의 군인 (전투경찰·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를 포함한다)	300	250	200	200

나. 유료정기이용권은 1만원으로 하며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및 그 동행자 1인은 발행일부터 1년간 자체상설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대관 특별전 등 기획 전시를 관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인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5년 4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역사박물관장(참조: 총무부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2-1, 전화: 724-0111, 팩스: 724-0241, E-mail: thryu@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5-362호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

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기금의 용자순위는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용자함(안 제2조 제1항)

나. 용자금의 이율은 연리 2.6퍼센트(최초 5년간 1년단위 복리, 잔여기간은 단리로 한다)로 하며, 용자기간은 7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용자약정시 결정함(안 제2조 제3항)

다.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발행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함(안 제4조 제1항)

마.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에 날인할 시장의 관인은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에 인쇄된 인영으로 같음함(안 제13조)

바. 채권이자는 연 2.5%의 이율로 최초 5년간은 1년단위 복리, 나머지 2년간은 단리로 계산하며 원미만은 절사함(안 제20조 제2항)

사. 기타 채권의 발행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발행절차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음(안 제5조 내지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5. 4. 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분석담당관, 전화 : 02-731-6146, 팩스: 02-731-6669, E-mail:snoopy29@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명칭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지사 권한인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를 위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 승인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동안 구청장에게 위임하였던 청계천로 천변측의 가로수 녹지대 및 하천의 관리를 청계천 복원 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3. 3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혁신분권담당관 전화: 2171-2104, FAX: 2171-2190, E-mail : chol258@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5-378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시·도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6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89번지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을 변경결정(폐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시장)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으로서의 기능상실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 가.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폐지)조서
 - 구분 : 폐지
 - 시설명 : 시장
 - 시설의 세분 : -
 - 위치 : 금천구 독산동 989번지
 - 면적
 - 기정 : 3,608.1㎡
 - 변경 : 감)3,608.1㎡
 - 변경후 : 0
 - 최초결정일 : '71.11.12
 - 비고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나.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결정(폐지)조건
 - (1) 건축계획
 - 건폐율59.84% 이하, 용적률199.97% 이하
 - (2) 공공기여방안
 - 공개공지(504.11㎡) 및 공중화장실

(38.22㎡) 설치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731-6346) 및 금천구청 도시관리과(☎ 890-2400)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69호

서울특별시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 8.21)로 아파트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97호(2002.11.11)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제3항, 주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부칙 제5조제3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1. 아파트지구개발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 가. 명칭 : 서울특별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 나. 위치 : 서초구 반포동·잠원동·서초동 일대
 - 다. 면적 : 2,714,011.2㎡
 - 1) 반포지구(영동아파트1지구) : 1,591,192.5㎡
 - 2) 반포지구2(저밀도변경부분) : 1,122,818.7㎡
 - 3) 서초지구(영동아파트3지구) : 1,187,270.5㎡
2. 지구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가. 지구의 구분(변경없음)
 - 나. 주구의 구분(변경없음)

3. 토지이용계획 가. 지구별 면적(변경없음) 나. 지구별 토지이용계획				1) 반포지구(변경없음) 2) 반포지구2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면적(m ²)	비율(%)	면적(m ²)	비율(%)		
계		1,122,818.7	100.00	1,122,818.7	100.00	변경없음	
주거용지	주택용지	806,895.1	71.86	806,137.0	71.8	758.1m ² 감소(4주구)	
중심시설	지구중심	-	-	-	-	-변경없음	
	지구중심	38,151.5	3.40	38,151.5	3.40	-변경없음	
	분구중심	-	-	-	-	-변경없음	
도시계획 시 설	도로용지	90,689.9	8.08	87,915.8	7.83	758.1m ² 증가(4주구)	
	도로 및 공공공지			3,532.2	0.31	3,532.2m ² 중복결정	
	공원용지	53,935.1	4.80	53,935.1	4.80	-변경없음	
	학교용지	104,563.1	9.31	104,563.1	9.31	-변경없음	
	공공청사	5,861.0	0.52	5,861.0	0.52	-변경없음	
	녹 지	19,163.0	1.71	19,163.0	1.71	변경없음	
	시 장	3,560.0	0.32	3,560.0	0.32	-변경없음	
3) 서초지구(변경없음) 4. 건축물 규제사항(변경없음) 5. 토지 등의 권리관계 :변경없음 6. 영향평가 관련사항 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이행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이행 다) 인구영향평가 협의결과 이행 7. 기타 가) 개발사업단위별 사업계획승인 전 「아파트지구 시기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개발사업 시행				나) 심의대상 : 금회 변경되는 지역의 기존 세대(9,020세대) 중 2,500세대를 초과하여 사업계획승인 할 경우 다) 기존건축물의 처리 : 관계규정 및 소유자간 협의에 의함 8. 금회(세부)변경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중복 결정 및 도로(6m) 신설결정 1) 공공공지(지상), 도로(지하) 중복 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녹지 및 휴게공간	서초구 반포동 2-1번지(지상)	-	3,532.2	3,53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97호(2002.11.11)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은 폐지
	도로	지하도로	서초구 반포동 2-1번지(지하)	-	3,532.2	3,532.2	

○ 중복 결정 사유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도로 및 공공공지	위치 : 서초구반포동 2-1번지 (신반포1차 단지 내) 면적 : 3,532.2㎡ 변경 : 공공공지(지상), 도로(지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 단지 내부를 관통하는 20m도로는 기본계획 공람·공고 시부터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나의 단지를 2개의 단지로 양분하여 부대복리시설의 중복설치 및 관리 처분 문제와 양분화에 따른 소규모 단지화의 문제점이 있어 주민제안을 통해 민원사항 해결이 가능토록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상부: 공공공지, 하부: 지하도로).				
2) 도시계획시설(도로6m) 신설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류	-	6	일반도로	114	서초구 반포동 2-1	서초구 반포동 2-1	일반도로	-
○ 도로결정 사유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도로	위치 : 서초구 반포동 2-1번지 면적 : 3,532.2㎡ 내용 : 6m 도로 신설					- 도시계획도로 6m 신설은 기존 신반포 상가등의 진·출입 도로로 20여년간 사용되어 왔으며 2-1번지 주택용지로 계획 상가의 진출입 문제가 발생되어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6m도로를 신설.				
9. 관계도서의 비치 및 열람방법 가)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3707-8294) 서초구청 건축과(☎570-6493)에 비치.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공항연립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p>◎서울특별시고시 제2005-70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변경) (공항지구중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제1종지구단위계획과공항연립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6호(2000. 2. 2)로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p>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공항동 45, 72 방화동 612, 620 일대	115,340	증) 6,166.9	121,506.9	1996.7.5	공항동 70-136일대 추가결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m ²)	변경 사유							
변경	강서구 공항동 45, 72 방화동 612, 620 일대	121,50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항연립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공동주택 재건축이 추진중에 있으나 지하철5호선 통과로 인한 개발한계 발생 및 공항연립 연접 노후단독주택지에서도 공동주택건설 가능성이 높은 상태 임 • 따라서 노후주택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공동주택 적정규모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후단독주택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편입 							
2.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21,506.9	-	121,506.9	100.0	-					
근린상업지역	68,571.0	-	68,571.0	56.5	-					
일반 주거 지역	소계	51,621.9	-	51,621.9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311.0	-	12,311.0	10.1					
	제3종일반주거지역	9,130.9	증) 731.0	9,861.9	8.1					
	준주거지역	30,180.0	감) 731.0	29,449.0	24.2					
자연녹지지역	1,314.0	-	1,314.0	1.1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다.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변경없음									
신설	소로	2	4	8	국지도로	61	공항동 66-111	공항동 70-193	일반도로	공항연립 특별계획구역내

마.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마.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공공지	방화동 620-119	87	-	87	2000.2.2	-
신설	공공공지	공항동 68-3일대	-	증) 311	311	-	공항연립 특별계획구역내
사.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아.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자.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차.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카.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타.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파.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공항연립 특별계획구역외 변경없음 1) 공항연립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면적	3,008.1m ²		9,866.0m ²		-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용도	공동주택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건폐율	60%		50% 이하		-		
용적률 (%)	기준용적률	300%		225.24% 이하		• 「단독주택등저층주택지관리 방안」을 적용함	
	허용용적률	360%		-			
	상한용적률	-		250.21% 이하			
높이(해발)	57.86m		57.86m 미만		-		
권장규모(m ²)	3,000m ²		9,000~10,000m ²		-		
도로	-		• 폭 8m, 연장 61m		• 소로2-4 신설		
공공공지	-		• 폭 5m, 면적 311m ²		• 공항동 68-3 일대 신설		
건축선 후퇴	• 8m도로변 -건축한계선 1m		• 남부순환로변 : 6m • 남부순환로변 6m도로변 : 2m		-		
공개공지	• 째지공원 : 150.4m ² (5%)		• 째지형공지 : 구역면적의 5%(493.3m ²) 이상		-		
기타	• 개화로변 8m도로 계획		• 남부순환로변 6m도로 계획 • 내부통과도로 신설(8m)		• 고시도면과 일치되게 정정 • 소로2-4 신설		

3. 공항연립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가. 공항연립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항연립 특별계획구역	강서구 공항동 71-2 일대	3,008.1	증) 6,857.9	9,866.0	2000.2.2	

○ 공항연립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m ²)	변경사유
변경	강서구 공항동 71-2 일대	9,86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연립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공동주택 재건축이 추진중에 있으나 지하철5호선 통과로 인한 개발한계 발생 및 공항연립 연접 노후단독주택에서도 공동주택건립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 따라서 노후주택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공동주택 적정규모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접한 노후단독주택지를 특별계획구역에 추가편입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소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866.0	-	9,866.0	100.0	-
일반주거지역	소계	9,838.2	-	9,838.2	99.7	-
	준주거지역	731.0	감) 731.0	0.0	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9,107.2	증) 731.0	9,838.2	99.7	-
자연녹지지역		27.8	-	27.8	0.3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m ²)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	강서구 공항동 72-81번지 일대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7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연립 특별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단일 개발단위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혼재하게 되므로 토지이용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준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4	8	국지도로	61	공항동 66-111	공항동 70-193	일반도로	공항연립 특별계획구역내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2-4	• 도로신설(폭원 : 8m / 연장 : 61m)	• 남부순환로와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동서방향의 소로 신설				
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공항동 68-3일대	-	증) 311	311	-	공항연립 특별계획구역내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폭원 : 5m / 연장 : 61m / 면적 : 311m ²)		• 남부순환로와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소로2-4와 연계하여 보행 및 휴식공간 조성				
마.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건축률	50%이하		50%이하		-		
용적률	기준용적률	225.24%이하	225.24%이하		변경전 용도지역에 대하여 「단독주택등저층주택지관리 방안」을 적용함		
	허용용적률	-	-				
	상한용적률	250.21%이하	250.21%이하				
높이(해발)	57.86m 미만		57.86m 미만		-		
바. 건축물 배치·형태 및 외관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한계선	• 남부순환로변 : 6m • 남부순환로변 6m도로변 : 2m		• 남부순환로변 : 6m • 남부순환로변 6m도로변 : 2m		-		
건축물형태	-		• 한동의 층수는 가급적 균일화		-		
입면변화	-		• 공동주택저층부(2층이하) 입면변화 유도		-		
입면적제한	-		• 1동의 입면적 2,500m ² 이하		-		
지붕및옥탑	-		• 경사지붕 또는 경관을 고려하여 디자인된 지붕형태		-		
사.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차량출입 금지구간	-		• 남부순환로변 차량출입 금지구간 지정		-		
주차공간확보	-		• 주차대수는 법정필요 대수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확보		-		

아. 기타 공지 등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 구역면적의 5%(493.3m ²) 이상	•쌈지형공지 : 구역면적의 5%(493.3m ²) 이상	-		
전면공지	-	•남부순환로변 6m도로변 건축한계선 부분(폭2m)	-		
완충조경	-	•남부순환로변 건축한계선 부분(폭6m)	-		
<p>4.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 도서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p> <p>5. 시민의 열람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3707-8292) 및 강서구 도시계획과(☎ 2600-6844~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p>		<p>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기획과(☎3707-8287) 및 노원구청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 950-4311)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장</p>			
<p>○서울특별시고시 제2005-71호 공릉2택지개발사업지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p> <p>1. 건설교통부고시 제1991-769호(1991.12.10)로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404호(1995.12.30)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3-159호(2003. 6.12)로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된 공릉2택지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p>					
<p>1. 변경결정 취지</p> <p>○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제 4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릉2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일부 토지(단독주택용지)에 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과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조정하려는 것임.</p> <p>2.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p> <p>가.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신설)</p>					
구분	위치	면적(m ²)	도시계획 시설	토지이용 용도	
신설	공릉동 120-18외2필지	879.9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용지	
나. 토지의 용도변경					
구분	위치	면적(m ²)	도시계획 시설	토지이용 용도	비고
변경전	공릉동 120-18외2필지	879.9	-	단독주택 용지	
변경후	공릉동 120-18외2필지	879.9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용지	신설
※ 변경사유 : 화랑용사촌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건립					

다. 가구·획지별 규모와 건축계획

- 1) 주택용지(변경없음)
- 2) 공공시설용지(신설)

가구·획지 (블록별)	위치	부지면적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층)	비고
사회복지 시설3	공릉동 120-18 -19,-20	879.9	사회복지시설용지 -불허용도 : 관련법상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허용되는건폐율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허용되는건폐율	3층이하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72호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 6. 25.)로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05-25호(2005. 1.31.)로 변경 고시된 은평구 불광동 550, 551번지 일대의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법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가. 위치 : 은평구 불광동 550, 551번지 일대(구역번호 8번)

나. 변경내용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c	8	불광동	551 551	2.6	190%	12층 이하	60%	1	주택 재개발사업	수복 (전면)	
변경	c	8	불광동	550 551	2.6	190%	12층 이하	60%	1	주택 재개발사업	수복 (전면)	구역추가 (0.05ha)

다. 변경사유 : 도로의 재정비가 필요한 토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

라. 관계서류의 공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236) 및 은평구 주택과(☎350-1381)에 관계서류 및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변경인가된 홍제천 복개지상 건축물(아파트·상가)철거 및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누락된 토지소유권이 추가되었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73호

도시계획사업(하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83호(1978. 3. 9)로 도시계획시설(하천)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390호(2004.11.25)로 실시계획인가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3호(2005. 2.11)로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건설관리과 ☎731-1482~5, 토목과 ☎731-0415~7)에 비치하고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가. 사업의 명칭 : 홍제천복개지상 신영
 상가아파트 건축물정비 및 하천복원
 나.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도시계획사
 업(하천)
 다.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종로구 신영
 동 119-1의 2필지 홍제천 복개지상
 라.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신영상가아
 파트 1개동 연면적 9,475㎡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명 : 서울특별시
 ○주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006년 12월 31
 일까지
 사.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토지)소유권
 리자(일부변경) : 누락토지조서추가
 (붙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
 구청(건설관리과 ☎731-1482~5, 토
 목과 ☎731-041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 경 토 지 조 서

○사업명 : 신영상가·아파트 철거 및 하천정비사업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소재 지	지목	수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목	토지 전체 면적 (㎡)	소유권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1			누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11	표명권	종로구 신영동 65	압류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2		
														압류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2		
														근저당권	(주)한국신탁은행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4		
2			누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11	표상진	신영동 119-1 신영아파트 후면5호	근저당권	(주)한국신탁은행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4		
3			누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11	차경순 외1인	종로구 신영동 32-1					
4			누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11	김태심	종로구 신영동 156-9					
5			누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11	이한규	종로구 신영동 66	근저당권	(주)우리은행	중구 회현동1가 203 자하문지점		
6			누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13	홍성원 외1인	서대문구 홍제동 459 홍제원 현대아파트 114-701	근저당권	(주)우리은행	중구 회현동1가 203 자하문지점		
7			누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11	신문자	종로구 신영동 158-17					
8			누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11	전영영	종로구 신영동 135-1	근저당권	(주)한국신탁은행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4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소재 지	지목	수용 면적 (㎡)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소 재 지	지목	토지 전체 면적 (㎡)	소유권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성명
9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12	장윤규	종로구 구기동 56-7				
10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12	이점순	종로구 구기동 98 구기빌라 - 104호				
11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23	박대부	종로구 신영동 136-2				
12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12	김무용	종로구 신영동 230-3	근저 당권	세검정새 마을금고	종로구 신영동 196-5	
13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11	윤영호	종로구 신영동 132				
14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11	이정림	서대문구 홍은2동 5-5				
15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07	임향욱	종로구 신영동 226-7				
16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07	채정국	서대문구 영천동 100 독립문산호아파트 104-1004				
17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07	박명희	송파구 송파동 147-5 401호				
18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08	권병길	종로구 누상동 166-25 한마루빌 101호				
19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07	양길섭	송파구 송파동 166 가락삼익맨션 216-702호				
20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05	유정자	성동구 금호동 상가 1331 두산아파트 116-702호				
21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05	김효정	강동구 암사동 442-1 한강현대아파트 102-1201호				
22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05	김승준	강서구 화곡동 957-24				
23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07	이권수	노원구 상계동 720 주공아파트 611동 1304호	압류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2	
24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07	황경희	종로구 평창동 482-9	근저 당권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북약지점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소재 지	지목	수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 재 지	지목	토지 전체 면적 (㎡)	소유권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성명
25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07	김갑수	종로구 신영동 70	근저 당권	세검정세 마을금고	종로구 신영동 245-1	
26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07	세검정 호남향 우회	종로구 신영동 119-1				
27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07	세검정 호남향 우회	종로구 신영동 119-1				
28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2	이준석	동대문구 제기동 153 안암골 벽산아파트 106-1901				
29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246	김제홍	도봉구 도봉동 642 현대성우아파트 101-411				
30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24	조수연	강남구 삼성동 17 롯데아파트 103-603				
31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24	박용길	종로구 신영동 167-1 경동빌라 1-101호				
32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권기탁	동대문구 이문동 165-79				
33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이란재	종로구 신영동 119-1 신영아파트 206호	근저 당권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세검정지점	
34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	전선희	종로구 신영동 119-1 신영아파트 207호	압류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2	
35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최운실	서초구 양재동 10-34 B동 103호				
36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김화현	종로구 신영동 119-1 신영아파트 209호	근저 당권	세종증권 주식회사	강남구 대치동 891	
37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이소민	용산구 이촌동 302-48 미주아파트 비동 502호				
38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24	이미숙	광진구 구의동 611 현대아파트 206-2001				
39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7	양동영	동작구 대방동 501 대림아파트 110-205				
40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6	김용호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1-5 수리아파트 826-2402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소재 지	지목	수용 면적 (㎡)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소 재 지	지목	토지 전체 면적 (㎡)	소유권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41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4	권진숙	관악구 신림동 110-46					
42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3	류근원	중구 회현동1가 147-23 시범아파트 1029호		근저 당권	수산업협 동조합중앙회	송파구 신천동 11-6 장안평지점	
43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3	한명훈	종로구 신영동 119-1 신영아파트 217호		근저 당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신촌지점	
44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56	임정순	종로구 신영동 119-1 신영아파트 218호	권리자	(주)서울 신탁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10-1 신반포지점		
													채권자	이숙희	용산구 동부이촌동 정우아파트 701호		
													권리자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2		
													근저 당권	한국산업 리스(주)	중구 소공동 1		
													근저 당권	한영희	성북구 정릉동 800-50		
													근저 당권	윤상태	강서구 화곡동 900-56 지층 2호		
45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28	김혜진	강남구 개포동 476 한마을 아파트 116-1401		근저 당권	덕양신용 협동조합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7	
46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8	김미영 외1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19 하나아파트 208-206		근저 당권	덕양신용 협동조합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7	
47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4	전성순	은평구 불광동 292-78 3층					
48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73	권창륜	종로구 구기동 82-6	권리자	종로구청	종로구 수송동 146-2		
													근저 당권	김동현	동작구 사당동 316-160		
49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62	조순정	종로구 평창동 170 금강파트빌리지 2-207		근저 당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10-1 평창동지점	
50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22	김운배	송파구 오금동 2 대림아파트 2-702		근저 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구 회현동1가 203 자하문지점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소재 지	지목	수용 면적 (㎡)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소 재 지	지목	토지 전체 면적 (㎡)	소유권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51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7	분효일	동작구 상도1동 450-7				
52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최효준	관악구 봉천동 1597-16				
53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심연희	양천구 목동 231-37 경우하이츠 맨션 401				
54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	국지수	송파구 거여동 202-200	근저 당권	이명옥	종로구 신영동 119-1 신영아파트 306호	
55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이희영	양천구 신정동 336 청구아파트 1013-201				
56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임진덕	서초구 잠원동 73 신반포2지구아파트 108-408				
57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24	김계정	서대문구 연희동 69-61				
58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24	김이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89-2	근저 당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10-1 행당동지점	
59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24	이영자	종로구 평창동 64-3 금강하이츠빌라 1-101호	근저 당권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도화동지점	
60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2	이병인	마포구 망원동 458-55				
61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8	최연주	관악구 봉천동 1708 두산아파트 101-802				
62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4	정형교	강동구 명일동 328-5	근저 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구 회현동1가 203 독립문지점	
													근저 당권	오환용	종로구 신영동 119-1 신영아파트 316호		
63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2	진재홍	서대문구 홍제동 459 홍제원 현대아파트 103-1403				
64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5	오경애	강남구 울현동 309-22	근저 당권	장운성	종로구 신영동 10-14	
65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8	강승미	송파구 방이동 212-8 코오롱아파트 105-401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소재 지	지목	수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목	토지 전체 면적 (㎡)	소유권	소유자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성명
66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2	김유겸	도봉구 쌍문동 30-7	근저 당권	교보생명 보험(주)	종로구 종로1가 1	
												전세권	문명숙	종로구 신영동 119-1 신영아파트 3층 320호		
67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24	정은현	광진구 광장동 567 광나루현대아파트 103-208				
68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24	주혜영	서초구 반포동 60-5 반포미도2차아파트 501-305				
69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24	최혜성	송파구 문정동 150 올림픽훼밀리아파트 307-502				
70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박현우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21-803				
71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노도형	성동구 성수동2가 299-188				
72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	박순화	종로구 신영동 119-1 신영아파트 326호	권리자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2	
												근저 당권	수산업협 동조합중 양회	종로구 경운동 88 가락동 지점		
73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백경숙	송파구 오금동 55-15				
74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박민규	종로구 신영동 119-1 신영아파트 329호	근저 당권	주식회사 국민은행	종구 남대문로2가 9-1 세검정지점	
75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24	문주란	구로구 고척동 226-31	근저 당권	주식회사 조흥은행	종구 남대문1가 14 이태원지점	
76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7	신연승	양천구 신정동 907-5 광성하이츠빌라 501	근저 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	종구 회현동1가 203 광명역지점	
77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7	임영애	노원구 상계동 6-36	근저 당권	수산업협 동조합중 양회	송파구 신천동 11-6 장안평지점	
78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24	최문정	서초구 잠원동 70-1 우성아파트 101-605				
79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윤경섭 외1인	서초구 양재동 150-2 우성아파트 103-1302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소재 지	지목	수용 면적 (㎡)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소 재 지	지목	토지 전체 면적 (㎡)	소유권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성명
80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유양근 래	종로구 신영동 119-1 신영아파트 404호				
81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김한근	종로구 신영동 119-1 신영아파트 405호	근저 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구 회현동1가 203 의정부지점	
82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	최순자	강동구 천호동 144-9	근저 당권	주식회사 한빛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111-1 합정동 지점	
83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전인숙	강남구 논현동 8				
84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송기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58 달빛마을 119-102				
85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24	배수운	종로구 신영동 119-1 신영아파트 411호				
86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2	유경자	종로구 신영동 119-1 신영아파트 412호				
87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8	김성훈	마포구 망원동 384-54 비01호				
88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5	임경화	관악구 봉천동 876-21 청송하이츠빌라 103				
89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6	최현순	종로구 신영동 156-6 중앙빌라 3-304				
90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4	김지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35 옥빛마을 1710-1404	전세권	현복순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고모리 629	
91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4	김사익	구로구 오류동 338 동부골든아파트 206-605				
92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5	송관희	노원구 상계동 720 주공아파트 621-1101	근저 당권	북부농업 협동조합	도봉구 쌍문동 619	
93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8	장춘자	종로구 신영동 119-1 신영아파트 419호	근저 당권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중구 충정로1가 75 블광지점	
94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2	정옥례	양천구 목동 406-120				
95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24	기진숙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589-3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소재 지	지목	수용 면적 (㎡)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소 재 지	지목	토지 전체 면적 (㎡)	소유권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96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박광휘	종로구 신영동 119-1 신영아파트 424호	근저 당권	주식회사 우리은행	종구 회현동1가 203 자하문지점				
97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이미지	종로구 창신동 23-525							
98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	유운영	종로구 신영동 119-1 신영아파트 426호	근저 당권	주식회사 조흥은행	종구 남대문1가 14 종로지점				
99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조성용	종로구 신영동 119-1 신영아파트 427호	근저 당권	주식회사 조흥은행	종구 남대문1가 14 케이비에스지점				
100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장옥순	서대문구 천연동 108							
101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05	조금신	성동구 옥수동 376-1							
102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4	정종호	종로구 신영동 132-1	근저 당권	(주)한국 신탁은행	종로구 견지동 68-4				
												근저 당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종구 태평로2가 120				
103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05	안영자	종로구 신영동 162-26							
104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13	김옥순	종로구 신영동 32-1							
105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김세덕	종로구 신영동 32-1	근저 당권	(주)서울 신탁은행	종구 남대문로2가 10-1				
106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7	전영기	관악구 신림동 620-19							
107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07	김선자	종로구 신영동 32-1(후면1호)							
108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07	김선자	종로구 신영동 32-1(후면1호)							
109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0.08	김선자	종로구 신영동 32-1(후면1호)							
110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07	백화순	종로구 효자동 70-1							
111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24	편정애	서대문구 홍제동 270-49							
112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45	조옥순	종로구 구기동 50-4	근저 당권	송병찬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483-11				
113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57	김평자	종로구 신영동 119-1 신영아파트 529호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소재 지	지목	수용 면적 (㎡)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소 재 지	지목	토지 전체 면적 (㎡)	소유권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성명
114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22		조광호	노원구 상계동 1300 양우아파트 102-1106			
115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윤원녕	서대문구 홍은동 454 홍은 극동아파트 104-903			
116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윤수연	종로구 송월동 137			
117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12		이보영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698-2 한성아파트 106-903			
118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5		홍윤경	강남구 일원동 638-18 2층			
119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22		남경도	마포구 연남동 239-4			
120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7		이상진	마포구 합정동 372-8 302호			
121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0. 79		김경희	종로구 평창동 64-3 금강하이츠빌라 4동 308호	근저 당권	세검정새 마을근교	종로구 신영동 241-1
122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282분의 2.67		김인호	서대문구 북가좌동 449 삼호아파트 102-301	근저 당권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416
123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282분의 2.67		김성례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204			
124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8		임치완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한양아파트 에프동 701호			
125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12		이종성	중랑구 면목동 177-168			
126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24		김정훈	종로구 신영동 119-1 신영아파트 410호			
127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24		김영국	종로구 홍지동 102-4			
128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89		안경희	성북구 정릉4동 266-4 한림아트빌라 201호	근저 당권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세검정지점
													근저 당권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416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소재 지	지목	수용 면적 (㎡)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소 재 지	지목	토지 전체 면적 (㎡)	소유권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129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66	김병일	은평구 역촌동 31-16 삼환주택 101호						
130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07	이강금	도봉구 도봉동 558-25						
131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282분의 2.67	정성창	종로구 신영동 105-13 삼호빌라 비-102						
132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권명숙	중구 신당동 32-1						
133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2	정창현	종로구 신영동 119-1 신영아파트 201호						
134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4	안귀남	종로구 신영동 32-1						
135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2	박봉배	종로구 신영동 32-1						
136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8	한진수	송파구 잠실동 22 아파트 273동 402호						
137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33	진용성	종로구 신영동 119-1 신영아파트 504호						
138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79	박정진	평창동 596 삼성아파트 102-101	근저 당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중구 을지로1가 101-1			
139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22	임태순	은평구 신사동 19-101						
140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8	김은숙	뉴욕주 뉴욕시 10017 5가 581(6층)	근저 당권	(주)서울 신탁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10-1			
141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48	김효순	종로구 신영동 119-2 신영아파트 509호	근저 당권	서울약사 신용협동 조합	서초구 서초동 1489-3			
142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24	김효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01 무지개마을 309-201						
143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79	강동수	서울 성북구 정릉동665-15						
144				누 락		종로구 신영동 119-1	대	155	47분의 0.24	손정희	종로구 신영동 119-1 신영아파트417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76호
도시관리계획(종로·세종로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변경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종로·세종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종로·세종로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종로·세종로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종로구 종로, 세종로 주변	381,459	감)191,950	189,950	●종로·세종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 일부(191,950㎡)를 종로4·5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기 위해 분리.
		종로4·5가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종로구 종로4·5가 주변	-	증)288,545	288,545	●종로·세종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분리된(191,950㎡) 지역과 청계천변 예지동 지역(96,596㎡)을 종로4·5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신설하여 청계천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종로·세종로 및 종로4·5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 시민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3707-8292) 및 종로구청 도시계획과(☎731-038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구분 : 신설
 - 구역명 : 주교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 위치 : 중구 주교동 일대
 - 면적
 - 기정 : -
 - 변경 : 증)100,210㎡
 - 변경후 : 100,210㎡
 - 결정사유 :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청계천변의 계획적관리를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77호
도시관리계획(주교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일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시민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3707-8292) 및 중구 도시관리과(☎2260-184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26호

우면산터널통행료변경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3-1486호(2003.12.29)로 공고한 우면산터널 통행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1. 도로의 종류 : 특별시도
2. 노선명 : 우면~중화선 26호선
3. 통행료 수납구간 : 우면산터널(서초구 서초동 1459번지 ~ 우면동 418번지)
4. 통행료 수납자 : 우면산개발주식회사
5. 통행료

구 분	통행료	차종구분
소 형	2,000원	· 승용차
중 형		· 승합차
경 차	1,000원	· 10톤이하 화물차
		· 배기량 800CC이하 자동차

6. 통행료 수납기간 :
 - 당초 : 2004. 1. 6 ~ 2023. 1. 15
 - 변경 : 2004. 1. 6 ~ 2034. 1. 6
7. 통행료 납부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
9. 통행료의 수납방법 : 요금소 유인징수 방식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 계획과(☎ 3707-8131~6) 또는 우면산개발주식회사(☎ 574-91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35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자행정처분청문실시

건설업 등록기준 미신고 및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다음의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말소를 위한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설업자 등록말소					
2. 당사자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장호건설(주)	김계수	건축0111015	서울시 금천구 독산1동 299-31(독산빌딩 301호)		
	은성종합건설(주)	박용찬	건축0111044	서울시 강서구 등촌1동 656-45 (3층)		
	(주)삼부이엔씨	이자영	건축0111129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254-17		
	(주)이레테마	백종열	건축0111054	서울시 강서구 화곡3동 1066-20		
	미지트건설(주)	유여경	건축040144	서울시 강서구 화곡3동 1051		
	(주)토경종합건설	한정래	건축0111093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910 (6층)		
	원길종합건설(주)	이원길	건축0111113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65-3 (휘문빌딩 302호)		
3. 처분의 원인 된 사실	건설업 등록기준 미신고 및 시정명령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설업자 등록말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6호(시정명령 불이행)					
6. 청 문 실 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건설행정과	담당자	이규호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31번지			전화번호	3707-9646/7
	일 시	2005년 4월 11일 10시 ~				
	장 소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사무실(서소문별관 1동 6층)				
	주제자	소속 및 직위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성 명		최순임, 박연웅		

○참석자 지침서류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위임장(법인등기부상 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 반드시 지침), 기타 이견 처리에 도움이 될 서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3707-
9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37호
종교관계비영리법인설립허가**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
한규정 제28조제2항제3호 및 문화관광부및
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교관계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1. 허가번호 : 제 2005 -4호
2. 법인명칭 : 사단법인 금강경독송회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2동
22-62번지 원림주택 101호
4. 대표자 : 김동규
5. 허가년월일 : 2005. 3. 9.
6. 설립목적 :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을 독송하고, 올라오는 마
음을 부처님께 바치며, 생활속에서 진
실된 불교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행 방법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
로 함.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40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자행정처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직
권등록취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 대상업체
 - 상호(등록번호) : 유기농명가(565)
 - 대표자 : 이정식
 - 소재지 : 서초구 방배동 901-3호 세
명빌딩 1층

- 위반내용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거
래) 계약해지 후 재계약 미이행 등 실
질적으로 영업불가
- 적용법규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5
조 및 제34조
- 처분내용(처분일) : 등록취소('05. 3. 9)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
비자보호과(☎ 3707-9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43호
신정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정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 사업개요

- 위치 :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 일원
- 면적 : 700,700㎡(212천평)
- 개발방식 :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혼용
- 계획정비구역 : 5개 구역, 375,654㎡
 - 주택재개발사업 : 2개 구역, 340,441㎡
 - 도시환경정비사업 : 3개 구역, 35,213㎡
- 계획관리구역 : 3개 구역, 88,063㎡
 - 주택재개발사업 : 3개 구역, 88,063㎡
- 자율정비구역 : 6개 구역, 236,973㎡
 - 지구단위계획구역 :
6개 구역, 129,255㎡
 - 존치지역 : 107,728㎡
-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1반(☎ 6321-4358) 및 양천
구 균형발전추진반(☎ 2650-3660)에
관계서류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45호
다단계판매업자등록사항변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업등록사항변경 신고를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같은법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가. 등록변경사항

○ 신고인

- 등록번호 : 제508호
- 상호 : (주)씨엔커뮤니케이션
- 대표자 : 안치쌍, 안치용

○ 변경내용

- 변경전
 -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98-3 소방공제회관
 - 전화번호: 6285-1000
- 변경후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4-4 삼성빌딩
 - 전화번호: 561-1199

나. 수리일자 : 2005년 3월 7일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비
자보호과(☎ 02-3707-9336)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56호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업자행정처분청문실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2. 당사자
 - 등록번호 : 110015
 - 성명(명칭) : (주)보광정보시스템
 - 대표자 : 곽완선
 -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62-1 유일빌딩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정지 처분 종료시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정보통신기술자 부족) 미보완
 - 최근 5년간 영업정지 3회이상 처분받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5. 법적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등록의 기준), 제66조(영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제68조의3(청문)
6. 청문
 - 기관명 : 서울특별시(부서명:정보통신 담당관, 담당자:유홍근)
 -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02-3707-9028)
 - 일시 : 2005. 4. 8(금) 15:00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2동 정보통신담당관
 - 주재자 : 초고속망운영팀장 김형욱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58호
서빙고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위한재공람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4-1366호(2004.12.20)로 공고된 서빙고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결과, 일부 변경된 내용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 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1. 명칭, 위치 및 면적
 - 가. 명칭 : 서울특별시 서빙고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 나. 위치 : 용산구 이촌동 및 서빙고동 일대
 - 다. 면적 : 852,473㎡
2. 주요 변경내용
 - 가. 도로, 공원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 토지이용계획
 - 나. 중심시설의 위치 및 규모 조정
 - 다.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등 도시관리계획
3. 세부변경내용
 - 가. 토지이용계획
 - 1) 지구 면적표

(단위 : ㎡)

구 분	계	1지구	2지구	3지구
변경전	814,000㎡	352,867㎡	298,112㎡	163,021㎡
변경후	852,473㎡	382,597㎡	282,248㎡	187,628㎡
비 고	지구면적 정정	(증)29,730㎡	(감)15,864㎡	(증)24,607㎡

2)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증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814,000.0	100.00	852,473.0	100.00	(증) 38,473.0	
주거용지	소 계	644,437.9	79.17	551,466.1	64.69	(감) 92,971.8
	주택용지	644,437.9	79.17	551,466.1	64.69	(감) 92,971.8
중심시설 용지	소 계	36,559.4	4.49	61,085.5	7.17	(증) 24,526.1
	지구중심	8,486.3	1.04	9,502.2	1.11	(증) 1,015.9
	지구중심	26,449.0	3.25	48,547.6	5.69	(증) 22,098.6
	분구중심	1,624.1	0.20	3,035.7	0.36	(증) 1,411.6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증감(m ²))
		면적(m ²)	비율(%)	면적(m ²)	비율(%)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 계	133,002.7	16.34	239,921.4	28.14	(증) 106,918.7
	도로용지	60,707.7	7.46	129,730.0	15.22	(증) 69,022.3
	공원용지	29,931.7	3.68	63,335.0	7.43	(증) 33,403.3
	학교용지	42,363.3	5.20	45,008.2	5.28	(증) 2,644.9
	하수도용지	-	-	1,848.2	0.22	(증) 1,848.2

나. 용도지역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52,473.0	-	852,473.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86,618.0	-	86,618.0	10.2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36,338.0	-	36,338.0	4.3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167,437.0	(감) 167,437.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562,080.0	(증) 167,437.0	729,517.0	85.5	

다. 도시계획시설

1) 도로(변경부분에 한함)

도면표시 번호	구분	규모				비고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①	신설	소로	2	8	250	
②	신설	소로	2	8	133	
③	신설	소로	2	8	93	
④	기정	소로	3	6	260	
	변경	중로	1	15	260	
⑤	기정	소로	3	6	135	
	변경	소로	2	8	135	
⑥	신설	소로	3	6	220	
⑦	신설	소로	3	6	185	
⑧	신설	소로	3	6	125	
⑨	신설	소로	3	6	110	
⑩	신설	소로	3	6	70	
⑪	신설	소로	3	6	240	
⑫	기정	소로	3	6	144	
	변경	소로	2	8	144	

2) 공원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근린공원	50,800.0	증) 4,940.7	55,74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적오차 정정 (증) 949.0m² •공원신설 (증) 3,991.7m² •도로 중복 지정 - 24,900.0m²
②	어린이공원	-	증) 7,913.2	7,913.2	신설
③	어린이공원	1,766.6	-	1,766.6	
④	어린이공원	1,736.9	-	1,736.9	
⑤	어린이공원	1,500.0	-	1,500.0	
⑥	어린이공원	1,412.0	-	1,412.6	
⑦	어린이공원	889.0	-	889.0	
⑧	어린이공원	-	증) 559.8	559.8	신설
⑨	어린이공원	546.8	-	546.8	
⑩	어린이공원	377.5	-	377.5	
⑪	어린이공원	231.5	-	231.5	
⑫	어린이공원		증) 840.9	840.9	신설
⑬	어린이공원		증) 3,499.9	3,499.9	신설
⑭	어린이공원		증) 5,684.2	5,684.2	신설
3) 학교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초등학교	18,063.1	-	18,063.1	
②	중학교	12,362.3	-	12,362.3	
③	고등학교	11,937.9	증) 2,644.9	14,582.8	
4) 하수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하수도	-	증) 1,848.2	1,848.2	

라. 건축물 규제사항

1) 용도규제

구 분	건 축 범 위
주택용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건축물을 수반하는 운동시설은 제외함), 유치원, 탁아소, 경로당, 공동주택관리용시설, 사회복지관, 공급처리시설,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함)
지구중심	제1, 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2천제곱미터만),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함),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의 규모·계획내용 및 주변도시계획 현황과 주거 및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주구중심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2천제곱미터만),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함),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함)
분구중심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회복지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함)
학교용지	학교시설
공원용지	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도로용지	도로에 부수되는 시설

※ 지구중심, 주구중심 및 분구중심은 현재의 용도지역의 건축허용범위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상의 건축범위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 건폐율 규제

구 분	아파트	기타건축물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30% 이하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30% 이하	50% 이하	

3) 용적률 규제

○ 계획용적률(주택용지)

구 분	계 획 용 적 률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2종(12층)→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p>○ 용적률인센티브(상한용적률) : 사업 시행단위별 공공시설부담률에 따라 용적률완화 차등적용</p> <p>※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10항 규정을 적용, 산출. $\text{상한용적률(\%)} = (1+1.3a) \times \text{기준용적률(\%)} \text{이내}$</p>	<p>(a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p> <p>○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공공용지 : 도로, 공원(공공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민간이 기부채납하는 용지)</p> <p>4) 건축물의 높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33%;">구 분</th> <th style="width: 33%;">건축물의 높이</th> <th style="width: 33%;">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연 립 주 택</td> <td>4층 이하</td> <td></td> </tr> <tr> <td>저 층 아 파 트</td> <td>5층 이하</td> <td></td> </tr> <tr> <td>고 층 아 파 트</td> <td>6층 이상</td> <td></td> </tr> <tr> <td>기 타 건 축 물</td> <td>5층 이하</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건축물의 높이	비 고	연 립 주 택	4층 이하		저 층 아 파 트	5층 이하		고 층 아 파 트	6층 이상		기 타 건 축 물	5층 이하	
구 분	건축물의 높이	비 고														
연 립 주 택	4층 이하															
저 층 아 파 트	5층 이하															
고 층 아 파 트	6층 이상															
기 타 건 축 물	5층 이하															
<p>주1) 사업시행단위별 건축물의 높이는 사업시행인가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p> <p>주2) 공동주택의 재건축 높이규제는 관련 토지소유자의 합의를 통해 건축법 제53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북방향과 정남방향의 높이규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p>																
<p>5)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p> <p>○ 지구중심 안의 건축물과 공동주택과의 인동 거리는 30m 이상 이격 설치(다만, 마주보는 각 외벽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p> <p>6) 건축물 배치</p> <p>○ 거점 녹지통경축 주변에 저층 건축물의 입지를 유도하여 남산으로의 시각통로 확보</p> <p>○ 한강변 탐상형 배치를 통해 한강과 간선도로변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p> <p>○ 이촌동길 저층부에 연도형상가를 토지이용에 맞게 재편성하여 가로분위기 유지</p> <p>7) 주택용지안의 녹지확보</p> <p>○ 주택용지면적의 30% 이상의 녹지면적 확보</p> <p>8) 주택공급별 규모비율</p> <p>○ 관계법령에 따름</p> <p>9)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p>	<p>○ 개발잔여지 및 기존건축물은 관련 법규정 및 개발기본계획지침에 따라 처리</p> <p>○ 개발기본계획에서 주택용지로 계획된 경우 부지정형화 및 적정규모개발을 위해 다음의 권장사항에 부합되도록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재건축대상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시 연결된 개발잔여지가 있을 경우, 공동개발을 권장함 - 중소규모 개발잔여지 단독개발시 연결필지와 공동건축을 통해 연립주택, 아파트규모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함 <p>4. 관련도서 비치관서 및 열람방법</p> <p>가. 공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p> <p>나. 공람장소</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3707-8293~4)</p>															

- 2) 용산구청 : 도시관리국 건축과
(☎ 710-3391)
- 3) 동사무소 : 이촌1동, 서빙고동
- ※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 다.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 서빙고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공람기간 이후 반영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59호
청담·도곡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재공람**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367호(2004.12.20)로 공고된 청담·도곡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결과, 일부 변경된 내용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 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1. 명칭, 위치 및 면적
 - 가. 명칭 : 서울특별시 청담·도곡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 나. 위치 :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역삼동, 도곡동, 대치동 일대
 - 다. 면적 : 1,111,765.4㎡
2. 주요 변경내용
 - 가. 도로, 공원, 공공청사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 토지이용계획
 - 나. 지구, 분구의 중심시설 규모 및 위치 조정
 - 다.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관리계획
3. 세부변경내용
 - 가. 토지이용계획
 - 1) 지구 면적표

(단위 : ㎡)

구 분	계	청담지구	삼성지구	역삼지구	도곡지구
변경전	1,119,291.1	105,547.0	294,422.0	479,351.3	239,970.8
변경후	1,111,765.4	104,200.8	290,643.3	472,298.1	244,623.2
비 고	지구면적 오류정정				

2) 토지이용계획표
ㄱ. 전체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증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1,119,291.1	100.0	1,111,765.4	100.0	감) 7,525.7	
주거용지	소 계	835,295.2	74.6	837,620.6	75.3	증) 2,325.4
	주택용지	835,295.2	74.6	837,620.6	75.3	증) 2,325.4
중심시설 용지	소 계	39,765.7	3.6	42,190.8	3.8	증) 2,425.1
	지구중심	33,611.7	3.0	32,648.9	2.9	감) 962.8
	분구중심	6,154.0	0.6	9,541.9	0.9	증) 3,387.9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증감(m ²))
		면적(m ²)	비율(%)	면적(m ²)	비율(%)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 계	244,230.2	21.8	231,970.0	20.9	감) 12,276.2
	도로용지	129,863.2	11.6	109,524.8	9.9	감) 20,311.4
	공원용지	37,362.6	3.3	44,460.0	4.0	증) 7,081.4
	학교용지	60,168.0	5.4	59,065.4	5.3	감) 1,102.6
	공공청사용지	16,863.4	1.5	17,514.4	1.6	증) 651.0
	공공공지	-	-	1,405.4	0.1	증) 1,405.4
<p>나. 저밀도 지역(존치지역 포함) - 금회변경없음</p>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증감(m ²))
		면적(m ²)	비율(%)	면적(m ²)	비율(%)	
계		618,787.5	100.0	618,787.5	100.0	-
주거용지	소 계	511,284.3	82.6	511,284.3	82.6	-
	주택용지	511,284.3	82.6	511,284.3	82.6	-
중심시설 용지	소 계	23,786.7	3.9	23,786.7	3.9	-
	주구중심	23,786.7	3.9	23,786.7	3.9	-
	분구중심	-	-	-	-	-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 계	83,716.5	13.5	83,716.5	13.5	-
	도로용지	59,409.4	9.6	59,409.4	9.6	-
	공원용지	23,557.1	3.8	23,557.1	3.8	-
	학교용지	-	-	-	-	-
	공공청사용지	750.0	0.1	750.0	0.1	-
	공공공지	-	-	-	-	-
<p>다. 고밀도 지역 - 금회변경</p>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증감(m ²))
		면적(m ²)	비율(%)	면적(m ²)	비율(%)	
계		500,503.6	100.0	492,977.9	100.0	감) 7,525.7
주거용지	소 계	324,010.9	64.7	326,320.3	66.2	증) 2,325.4
	주택용지	324,010.9	64.7	326,320.3	66.2	증) 2,325.4
중심시설 용지	소 계	15,979.0	3.2	18,404.1	3.7	증) 2,425.1
	주구중심	9,825.0	2.0	8,862.2	1.8	감) 962.8
	분구중심	6,154.0	1.2	9,541.9	1.9	증) 3,387.9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 계	160,513.7	32.1	148,253.5	30.1	감) 12,276.2
	도로용지	70,426.8	14.1	50,115.4	10.2	감) 20,311.4
	공원용지	13,805.5	2.8	20,902.9	4.2	증) 7,081.4
	학교용지	60,168.0	12.0	59,065.4	12.0	감) 1,102.6
	공공청사용지	16,113.4	3.2	16,764.4	3.4	증) 651.0
	공공공지	-	-	1,405.4	0.3	증) 1,405.4

나.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11,765.4	-	1,111,765.4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7,754.2	증) 15,031.1	22,801.3	2.1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90,094.6	증) 1,213.5	91,308.1	8.2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99,241.5	감) 97,836.1	1,405.4	0.1		
제3종일반주거지역	914,675.1	증) 81,591.5	996,250.6	89.6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①	청담동 134-9대 일원	제2종(12층)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89,886.1	200이하	효율적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②	청담동 134-15대 일원	제2종(12층)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7,950.0	150이하	기존 공원용지의 용도지역 변경
③	삼성동 19-4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320.0	150이하	공원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④	삼성동 20-2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913.5	200이하	공공청사의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⑤	역삼동 711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300.0	200이하	공공청사의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⑥	역삼동 711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576.0	150이하	공원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⑦	역삼동 712공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071.0	150이하	공원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⑧	역삼동 716-1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50.0	150이하	공원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⑨	역삼동 763-1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4.1	150이하	공원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⑩	도곡동 538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876.0	150이하	공원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변경부분에 한함)

1) 도로

○도로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①	기정	소로	3		6	집산도로	611	청담동	청담동	일반도로			삼한길
	변경	소로	1		6~10	집산도로	611	133-3	130-22	일반도로			
②	기정	중로	3		12	국지도로	378	청담동 134-26	청담동 134-18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12	국지도로	132		청담동 134-13	일반도로			
③	기정	소로	3		6	집산도로	461	삼성동	삼성동	일반도로			진솔길
	변경	중로	3		12	집산도로	461	1-4	4-4	일반도로			
④	기정	소로	3		6	집산도로	846	삼성동	삼성동	일반도로			샤프터길
	변경	중로	3		6~12	집산도로	846	9-23	21-4	일반도로			
⑤	기정	소로	3		6	국지도로	153	삼성동	삼성동	일반도로			늘기쁜길
	변경	소로	1		10	국지도로	153	24-3	24-25	일반도로			
⑥	기정	소로	1		6~10	집산도로	863	삼성동 34-25	삼성동 22-3	일반도로			교육구청길
	변경	중로	3		6~12	집산도로	863		일반도로				
⑦	기정	소로	2		8	집산도로	438	역삼동	역삼동	일반도로			성보길
	변경	중로	3		12	집산도로	438	706-27	707-42	일반도로			
⑧	기정	소로	3		6	국지도로	134	역삼동 760-3	역삼동 760-9	일반도로			영동복지 2로
	변경	소로	3		3~6	국지도로	172	역삼동 760-3	역삼동 760-11	일반도로			
⑨	기정	소로	3		6	국지도로	147	역삼동	역삼동	일반도로			영동복지 1로
	변경	소로	2		8	국지도로	147	761-2	761-26	일반도로			
⑩	기정	중로	3		12	집산도로	278	역삼동	역삼동	일반도로			진달래길
	변경	중로	2		15	집산도로	278	761-19	767-17	일반도로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소로3-	소로1-	도로부분확폭 (6m →10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 개선방안으로 도로폭원확대					
②	중로3-	중로3-	중점변경	·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도로중점변경					
③	소로3-	중로3-	도로부분확폭 (6m →12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 개선방안으로 도로폭원확대					
④	소로3-	중로3-	도로부분확폭 (6m →12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 개선방안으로 도로폭원확대					
⑤	소로3-	소로1-	도로확폭 (6m →10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 개선방안으로 도로폭원확대					
⑥	소로1-	중로3-	도로부분확폭 (10m →12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 개선방안으로 도로폭원확대					
⑦	소로2-	중로3-	도로부분확폭 (8m →12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 개선방안으로 도로폭원확대					
⑧	소로3-	소로3-	중점변경	· 기존 막다른길로 인한 교통흐름 개선방안으로 도로중점변경					
⑨	소로3-	소로2-	도로부분확폭 (6m →8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 개선방안으로 도로폭원확대					
⑩	중로3-	중로2-	도로확폭 (12m →15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 개선방안으로 도로폭원확대					
2)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	어린이공원	삼성동 19-4대	-	증) 1,320.0	1,320.0		
신설	②	-	어린이공원	역삼동 711대	-	증) 576.0	576.0		
신설	③	-	어린이공원	역삼동 712공 일원	-	증) 3,071.0	3,071.0		
신설	④	-	어린이공원	역삼동 716-1	-	증) 682.0	682.0		
신설	⑤	-	어린이공원	역삼동 763-1	-	증) 604.1	604.1		
변경	⑥	-	어린이공원	도곡동 539대 일원	896.5	-	896.5		
신설	⑦	-	어린이공원	도곡동 538대	-	증) 876.0	876.0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①	어린이공원	신설(면적: 1,320.0㎡)		·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신규 공원조성					
②	어린이공원	신설(면적: 576.0㎡)		·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신규 공원조성					
③	어린이공원	신설(면적: 3,071.0㎡)		·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신규 공원조성					
④	어린이공원	신설(면적: 682.0㎡)		·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신규 공원조성					
⑤	어린이공원	신설(면적: 604.1㎡)		·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신규 공원조성					
⑥	어린이공원	변경(면적: 896.5 → 896.5㎡)		·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공원형태변경					
⑦	어린이공원	신설(면적: 876.0㎡)		·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신규 공원조성					
3)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⑧		공공공지	청담동 134-18대 일원	-	증)299.0	299.0		
신설	⑨		공공공지	청담동 134-25대 일원	-	증)735.8	735.8		
신설	⑩		공공공지	청담동 134-22대 일원	-	증)370.6	370.6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⑧	공공공지	신설(면적: 299.0㎡)		·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장래 도로확폭 등을 고려한 공공공지확보					
⑨	공공공지	신설(면적: 735.8㎡)		·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장래 도로확폭 등을 고려한 공공공지확보					
⑩	공공공지	신설(면적: 370.6㎡)		·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장래 도로확폭 등을 고려한 공공공지확보					
4) 학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⑪	학교	중 학 교	역삼동 713학	13,884.0	감)508.0	13,376.0		
변경	⑫	학교	고등학교	역삼동 713학	17,284.0	감)506.7	16,777.3		
변경	⑬	학교	초등학교	역삼동 714학	15,000.0	감)87.9	14,912.1		
변경	⑭	학교	중 학 교	역삼동 767-20학 일원	14,000.0	-	14,000.0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⑪	진선여자중학교	변경(면적: 13,884.0→13,376.0㎡)			·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감소				
⑫	진선여자고등학교	변경(면적: 17,284.0→16,777.3㎡)			·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감소				
⑬	도성초등학교	변경(면적: 15,000.0→14,912.1㎡)			·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감소				
⑭	역삼중학교	변경(면적: 14,000.0→14,000.0㎡)			· 구역경계 변경				
5) 공공시설									
○ 공공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⑮	공공시설	공공청사	삼성동 20-2대	-	증)913.5	913.5		
기정	⑯	공공시설	공공청사	역삼동 711-2대	562.5				
변경	⑯	공공시설	공공청사	역삼동 711대		감)262.5	300.0		
○ 공공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⑮	공공시설	신설(면적: 913.5㎡)			· 동청사로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함				
⑯	공공시설	변경(면적: 562.5 → 300.0㎡)			·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위치변경 및 면적감소				
나. 건축물 규제사항									
1) 용도규제									
구 분	건 축 범 위								
주택용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건축물을 수반하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 유치원, 탁아소, 경로당, 공동주택관리용시설, 공급처리시설, 사회복지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함)								
지구중심	-								
주구중심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복지시설, (이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2천제곱미터미만),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함),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함)								
분구중심	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함)								
학교용지	학교								
공원용지	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도로용지	도로에 부수되는 시설								
공공청사용지	공공청사								
※ 건축물의 용도는 관련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2) 건폐율 규제(주택용지)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건폐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범위를 적용		
3) 용적률 규제		
○ 계획(기준)용적률(주택용지)		
구 분	계 획 용 적 률	비 고
제2종(12층)→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청담주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 용적률인센티브(상한용적률) : 사업 시행단위별 공공시설부담률에 따라 용적률완화 차등적용 ※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0항 규정을 적용, 산출. $상한용적률(\%) = (1+1.3a) \times 기준용적률(\%)$ 이내 (a: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공공용지 : 도로, 공원, 공공청사 (공공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민간이 기부채납 하는 용지이며, 공공청사의 경우 서울시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 적용)
4) 건축물의 높이		
구 분	건축물의 높이	비 고
연 립 주 택	4층 이하	
아 파 트	5층 이상	
기타용도건축물	5층 이하	
※ 사업시행단위별 건축물의 높이는 사업시행인가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5)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 공동주택간 인동거리는 관계법령에 따름 6) 건축물 배치 ○ 한강 인접부 탐상형 배치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 ○ 간선도로변 탐상형 또는 직각배치 유도로 시각회랑 확보 7) 주택용지안의 녹지확보 ○ 주택용지면적의 30% 이상의 녹지면적 확보		8) 주택공급별 규모비율 ○ 주택공급별 규모비율은 관계법령에 따름 9)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개발잔여지 및 기존건축물은 관련법 규정 및 개발기본계획지침에 따라 처리 ○ 개발기본계획에서 주택용지로 계획된 경우 부지정형화 및 적정규모개발을 위해 다음의 권장사항에 부합되도록 처리

- 주택재건축대상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시 연결된 개발잔여지가 있을 경우, 가급적 공동개발을 원칙으로 함
- 중소규모 개발잔여지 단독개발시 연결필지와 공동건축을 통해 연립주택, 아파트규모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함

4. 관련도서 비치관서 및 열람방법

가. 공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3707-8293~4)

2) 강남구청: 도시관리국 주택과
(☎ 2104-1816)

3) 동사무소: 청담동, 삼성동, 역삼동, 도곡동, 대치동

※ 관련도서: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다.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청담·도곡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공람기간 이후 반영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63호
여의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위한재공람**

서울특별시 공고 제1352호(2004.12.20)로 공고된 여의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안)에 대한 공람결과 일부 변경된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 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1.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칭: 서울특별시 여의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나. 위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다. 면적: 550,734.4㎡

2. 주요 변경내용

가. 현재의 개발진행상황을 반영한 지구계 변경

나. 도로, 공원, 공공시설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등 토지이용계획

다. 중심시설의 입지현황을 고려한 지구 중심의 규모 및 위치조정

라.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등 도시관리계획

3. 세부변경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1) 지구 면적표

(단위: ㎡)

구분	계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변경전	590,000.0	98,784.5	153,896.2	162,444.4	174,874.9
변경후	550,734.4	98,784.5	153,896.2	162,444.4	135,609.3
비고	개발용도에 부합되도록 지구계 변경				지구계 변경에 따른 지구면적 감소

2)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증감(m ²))
		면적(m ²)	비율(%)	면적(m ²)	비율(%)	
계		590,000.0	100.0	550,734.4	100.0	감) 39,265.6
주거용지	소 계	421,510.9	71.4	362,807.8	65.9	감) 58,703.1
	주택용지	421,510.9	71.4	362,807.8	65.9	감) 58,703.1
중심시설 용지	소 계	-	-	17,927.4	3.3	증) 17,927.4
	주구중심	-	-	17,641.1	3.2	증) 17,641.1
	분구중심	-	-	286.3	0.1	증) 286.3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 계	164,965.1	28.0	166,999.2	30.3	증) 2,034.1
	도 로	61,621.1	10.4	59,333.0	10.8	감) 2,288.1
	공 원	9,980.0	1.7	17,005.0	3.1	증) 7,025.0
	공공공지	-	-	5,304.0	1.0	증) 5,304.0
	시 장	6,242.0	1.1	-	-	감) 6,242.0
	학 교	84,870.0	14.4	84,325.2	15.3	감) 544.8
	공공청사	2,252.0	0.4	1,032.0	0.2	감) 1,220.0
기타	소 계	3,524.0	0.6	3,000.0	0.5	감) 524.0
	종교시설	2,314.0	0.4	-	-	감) 2,314.0
	주 유 소	1,210.0	0.2	-	-	감) 1,210.0
	공공이용시설	-	-	3,000.0	0.5	증) 3,000.0

※ 05년 현재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작성

나. 용도지역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90,000.0	-	550,734.4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9,980.0	-	9,980.0	1.8	-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118,416.5	감) 7,422.8	110,993.7	20.2	지구계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경계조정에 따른 면적감소
제3종일반주거지역	403,959.9	증) 3,707.6	407,667.5	74.0	도시계획시설 경계조정에 따른 면적증가
일반상업지역	57,643.6	감) 35,550.4	22,093.2	4.0	지구계변경에 따른 면적감소

다. 도시계획시설

1) 도로(변경부분에 한함)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12	집산도로	300	여의나루길	여의길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6	국지도로	280	여의길	용호로	일반도로			
기정		1	30	35	주간선도로	3000	대방동	원효대교북단	일반도로		건고198 (71.4.7)	용호로
변경	광로	3		45	주간선도로	530	한양아파트 사거리	원효대교남단	일반도로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3-	신 설	
-	소로 3-	신 설	
대로 1-30	광로 3-	도로폭원(부분)확대 (35m →45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개선방안으로 도로 폭원확대

2) 공 원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평화공원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50-2	4,595.0	증)755.0	5,350.0	건고147 (71.3.20)	
변경	②	자유공원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50-3	5,385.0	감)755.0	4,630.0	건고147 (71.3.20)	
신설	③	-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30-2,3 삼부아파트내	-	증)3,030.0	3,030.0		
신설	④	-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37 미성아파트내	-	증)1,840.0	1,840.0		
신설	⑤	-	어린이공원	여의도동 28 광장아파트내	-	증)2,155.0	2,155.0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①	어린이공원	변경(면적: 4,595.0→ 5,350.0㎡)			· 위치 및 면적조정				
②	어린이공원	변경(면적: 5,385.0→ 4,630.0㎡)			· 위치 및 면적조정				
③	어린이공원	신설(면적: - → 3,030.0㎡)							
④	어린이공원	신설(면적: - → 1,840.0㎡)							
⑤	어린이공원	신설(면적: - → 2,155.0㎡)							
3)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여의도동30 목화아파트내	-	증) 580.0	580.0		신설	
신설	②	공공공지	여의도동40 장미아파트내	-	증) 680.0	680.0		신설	
신설	③	공공공지	여의도동41 대교아파트내	-	증)1,284.0	1,284.0		신설	
신설	④	공공공지	여의도동42 한양아파트내	-	증)1,070.0	1,070.0		신설	
신설	⑤	공공공지	여의도동51 삼익아파트내	-	증) 250.0	250.0		신설	
신설	⑥	공공공지	여의도동52 은하아파트내	-	증) 930.0	930.0		신설	
신설	⑦	공공공지	여의도동38-1광장아파트내	-	증) 510.0	510.0		신설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①	공 공 공 지	신설(면적: - → 580.0㎡)							
②	공 공 공 지	신설(면적: - → 680.0㎡)							
③	공 공 공 지	신설(면적: - → 1,284.0㎡)							
④	공 공 공 지	신설(면적: - → 1,070.0㎡)							
⑤	공 공 공 지	신설(면적: - → 250.0㎡)							
⑥	공 공 공 지	신설(면적: - → 930.0㎡)							
⑦	공 공 공 지	신설(면적: - → 510.0㎡)							
4) 공공시설									
○ 공공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시설	파출소	여의도동 38-3	1,031.4	-	1,031.4	서고152 (78.4.11)	
변경	①	공공시설	파출소	여의도동 38-3	1,031.4	증) 0.6	1,032.0		면적조정

○ 공공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①		공공시설		변경(면적: 1,031.4 → 1,032.0㎡)			· 지적면적으로 정정		
5) 학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학교	고등학교	여의도동 30-1	19,835.0	-	19,835.0	서고88(76.4.22)	
	②	학교	중학교	여의도동 40-1	17,478.0	-	17,478.0	서고88(76.4.22)	
변경	③	학교	초등학교	여의도동 40-3	11,570.0	감)544.8	11,025.2	서고88(76.4.22)	
	④	학교	고등학교	여의도동 40-2	10,413.0	-	10,413.0	서고16(76.1.28)	
변경	⑤	학교	초등학교	여의도동 38	11,978.0	-	11,978.0	서고88(76.4.22)	
	⑥	학교	중학교	여의도동 38-2	13,596.0	-	13,596.0	서고152(78.4.17)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③		여의도 초교		변경(면적: 11,570.0 → 11,025.2㎡)			· 면적조정(용호로10M 확폭에 따른 면적감소)		
⑤		윤중 초교					· 경계정정 (오류에 따른 경계선정정)		
6) 시장									
○ 시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시장	정기시장	여의도동 30-3	1,445.0	감) 1,445.0	-	서고114(75.7.21)	
변경	②	시장	정기시장	여의도동 41-1	1,653.0	감) 1,653.0	-	서고17(75.1.28)	
변경	③	시장	정기시장	여의도동 41-2	1,653.0	감) 1,653.0	-	서고17(75.1.28)	
변경	④	시장	정기시장	여의도동 42-1	1,126.0	감) 1,126.0	-	서고107(76.5.12)	
○ 시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①		시장		변경(면적: 1,445.0 → - ㎡)			· 기존 시장을 중심시설용지로 구획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②		시장		변경(면적: 1,653.0 → - ㎡)			· 기존 시장을 중심시설용지로 구획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③		시장		변경(면적: 1,653.0 → - ㎡)			· 기존 시장을 중심시설용지로 구획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④		시장		변경(면적: 1,126.0 → - ㎡)			· 기존 시장을 중심시설용지로 구획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라. 건축물 규제사항

1) 용도규제

구 분	건 축 범 위
주택용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건축물을 수반하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 유치원, 탁아소, 경로당, 공동주택관리용시설, 공급처리시설, 사회복지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함)
주구중심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함),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에 한함)
분구중심	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에 한함)
학교용지	학교시설
공원용지	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도로용지	도로에 부수되는 시설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시설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조성방식은 관련지침을 따름
공공청사	공공청사시설
공공이용시설	주민문화·복지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별도의 지침을 따름

※ 단, 학교보건법상 제6조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2의 상대 및 절대정화구역내 불허용도 불허

2) 건폐율 규제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3) 용적률 규제

○ 계획(기준)용적률(주택용지)

구 분	계 획 용 적 률	비 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 용적률인센티브(상한용적률) : 사업 시행단위별 공공시설부담률에 따라 용적률완화 차등적용
- ※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0항 규정을 적용, 산출.

$$\text{상한용적률(\%)} = (1+1.3a) \times \text{기준용적률(\%)} \text{이내}$$

(a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공공용지 : 도로, 공원 및 기타공공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민간이 기부채납하는 용지
- 4) 건축물의 높이

구 분	건축물의 높이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없음	

※ 사업시행단위별 건축물의 높이는 사업시행인가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5)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 공동주택간 인동거리는 관계법령에 따름
- 6) 건축물 배치
 - 한강 인접부 탑상형 배치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
 - 간선도로변 탑상형 또는 직각배치 유도로 시각회랑 확보
- 7) 주택용지안의 녹지확보
 - 주택용지면적의 30% 이상의 녹지면적 확보
 - 단지내 녹도(기부채납 대상이 아님)는 지정된 위치에서 30m 범위내에서 공원등과 연결되도록 직선형 또는 곡선형으로 녹도형태(보행+녹지)로 조성
- 8)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 관계법령에 따름
- 9)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개발잔여지 및 기존건축물은 관련법 규정 및 개발기본계획지침에 따라 처리
- 4. 관련도서 비치관서 및 열람방법
 -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나. 공람장소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3707-8293~4)
- 2) 영등포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 2670-3674~81)
- 3) 동사무소 : 여의도동
- ※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 다.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 여의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공람기간 이후 반영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64호
 잠실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위한공람**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 8.21)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205호(1980. 7. 4)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 결정된 잠실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주택법(법률제6916호)부칙 제9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제6852호) 부칙 제5조 제3항과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잠실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의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1. 명칭, 위치 및 면적

- 가. 명칭 : 서울특별시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 나. 위치 : 송파구 잠실동, 신천동, 풍납동 일대
- 다. 면적 : 963,487.8㎡

2. 주요 변경내용

- 가. 고층·고밀화에 따른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확충

나. 주변 가로망 개선 및 중심시설 체계 개편

다. 건축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향후 재건축시점이 도래할 것에 대비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의 수립

라. 현 개발상황을 반영한 지구경계의 변경

3. 세부변경내용

- 가. 지구경계변경 계획
 - 1) 지구경계변경사유
 - 1976년 아파트지구지정 이후 도시적 상황변화에 따라 지구경계와 현 상황이 불합치하는 상황이 발생
 - 현재의 개발상황을 반영하여 지구경계를 변경하여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
 - 2) 지구경계변경에 따른 면적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고
면적(㎡)	983,218.5	963,487.8	감) 19,730.7	현 개발상황에 맞추어 현대아산병원, 현 도로개설지 등 기존 개발 시설을 아파트지구에서 해제

나. 토지이용계획

1) 지구면적표

(단위 : ㎡)

구분	계	1주구	2주구		3주구	4주구	5주구
			2-1주구	2-2주구			
변경전	983,218.5	353,987.8	202,572.2	140,694.5	75,684.5	112,558.5	97,721.0
변경후	963,487.8	353,987.8	202,572.2	140,694.5	75,684.5	112,558.5	77,990.3
비고							지구계변경

2) 토지이용계획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변경-기정)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983,218.5	100.0	963,487.8	100.0	-19,730.7	
주거용지	주택용지	747,291.8	76.0	662,901.7	68.8	-84,390.1
	종교	2,027.9	0.2	2,997.4	0.3	969.5
	지구중심	0.0	0.0	0.0	0.0	0.0
	주구중심	15,469.6	1.6	50,690.5	5.3	35,220.9
	분구중심	0.0	0.0	998.4	0.1	998.4
	소계	764,789.3	77.8	717,588.0	74.5	-47,201.3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변경-기정)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도시계획 시설용지	도 로	83,023.3	8.4	85,726.3	8.9	2,703.0
	공 원	7,621.1	0.8	36,049.6	3.7	28,428.5
	학 교	73,104.5	7.4	83,494.9	8.7	10,390.4
	공공청사	8,593.7	0.9	9,372.9	1.0	779.2
	소 계	172,342.6	17.5	214,643.7	22.3	42,301.1
기타	하수처리시설	30,264.0	3.1	30,264.0	3.1	0.0
	기 타	15,822.6	1.6	992.1	0.1	-14,830.5
	소 계	46,086.6	4.7	31,256.1	3.2	-14,830.5

※ 기타시설면적의 변경은 지구계 변경에 따라 변경된 면적임.

다. 용도지역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83,218.5	감) 19,730.7	963,487.8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50,979.5	증) 15,334.1	66,313.6	6.9	
제2종일반주거지역	86,528.5	증) 6,339.3	92,867.8	9.6	
제3종일반주거지역	845,710.5	감) 41,404.1	804,306.4	83.5	

다. 도시계획시설(변경부분에 한함)

1) 도로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1	변경	변경전	광로	2	50	간선도로	1,900	잠실동 32번지	잠실동 19번지	일반 도로			올림픽로
		변경후	광로	2	50~54	간선도로							
2	변경	변경전	대로	2	30	간선도로	600	잠실동 26번지	잠실동 26번지	일반 도로			주공5단지 서측도로
		변경후	대로	1	35	간선도로							
3	변경	변경전	중로	2	15	간선도로	435	잠실동 28번지	잠실동 28번지	일반 도로			주공5단지 북측도로
		변경후	중로	1	20	간선도로							
4	변경	변경전	중로	1	20	간선도로	635	신천동 7-10번지	신천동 11-3번지	일반 도로			장미아파트 남측도로
		변경후	대로	3	25	간선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5	삭제	중로	1	20	단지내 도로	430	신천동 10-1번지	신천동 10-1번지	일반 도로			장마아파트 단지내도로	
6	신설	대로	3	25	간선도로	300	신천동 11번지일대	신천동 11번지일대	일반 도로			성내역 지구중심도로	
7	변경	변경전	중로	2	15	간선도로	310	신천동 18번지	신천동 18번지	일반 도로			진주아파트 서측도로
		변경후	중로	1	20	간선도로							
8	변경	변경전	광로	3	47	간선도로	1,000	신천동 26번지	풍납동 46번지	일반 도로			올림픽로
		변경후	광로	2	50	간선도로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2-	광로 2-	도로폭원확대(50m → 54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개선방안으로 도로 폭원확대
대로 2-	대로 1-	도로폭원확대(30m → 35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개선방안으로 도로 폭원확대
중로 2-	중로 1-	도로폭원확대(15m → 20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개선방안으로 도로 폭원확대
중로 1-	대로 3-	도로폭원확대(20m → 25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개선방안으로 도로 폭원확대
중로 1-	-	도로폐지	· 단지내 도로로 활용되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계획도로 폐지
-	대로 3-	도로신설	· 성내역 주변 가로체계 정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개선 방안으로 도로 신설
중로 2-	중로 1-	도로폭원확대(15m → 20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개선방안으로 도로 폭원확대
광로 3-	광로 2-	도로폭원확대(47m → 50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개선방안으로 도로 폭원확대

2)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	근린공원	잠실동 27대 일원	-	증) 11,042.0	11,042.0		
신설	②	-	어린이공원	잠실동 27대 일원	-	증) 1,500.0	1,500.0		
신설	③	-	어린이공원	신천동 7대 일원	-	증) 5,680.0	5,680.0		
변경	④	-	어린이공원	신천동 11대 일원	1,009.5	증) 2,278.5	3,288.0		
신설	⑤	-	어린이공원	신천동 17-6대 일원	-	증) 3,644.0	3,644.0		
신설	⑥	-	어린이공원	신천동 20-4대 일원	-	증) 4,284.0	4,284.0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①	근린공원	신설(면적: - → 11,042.0㎡)			· 개발에 따른 신규공원 신설				
②	어린이공원	신설(면적: - → 1,500.0㎡)			· 개발에 따른 신규공원 신설				
③	어린이공원	신설(면적: - → 5,680.0㎡)			· 개발에 따른 신규공원 신설				
④	어린이공원	변경(면적: 1,009.5 → 3,288.0㎡)			· 개발에 따른 공원위치변경 및 면적 변경				
⑤	어린이공원	신설(면적: - → 3,644.0㎡)			· 개발에 따른 신규공원 신설				
⑥	어린이공원	신설(면적: - → 4,284.0㎡)			· 개발에 따른 신규공원 신설				
3) 학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학교	중학교	잠실동 27대 일원	-	증) 6,000	6,000		
변경	②	학교	중학교	신천동 7대 일원	14,434.7	감) 457.1	13,977.6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①	중학교	신설(면적: - → 6,000.0㎡)			· 개발에 따른 중학교 신설				
②	중학교	변경(면적:14,434.7 → 13,977.6㎡)			· 도로 확폭에 따른 면적 변경				
4) 공공시설									
○ 공공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시설	공공청사	잠실동 27대 일원	-	증) 393.0	393.0		
변경	②	공공시설	공공청사	잠실동 27대 일원	786.0	-	786.0		
변경	③	공공시설	공공청사	잠실동 27대 일원	330.0	-	330.0		
변경	④	공공시설	공공청사	신천동 7대 일원	313.8	증) 386.2	700.0		
○ 공공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①	공공시설	신설(면적: - → 393.0㎡)			· 개발에 따른 파출소부지 별도 확보				
②	공공시설	변경(면적:786.0 → 786.0㎡)			· 개발에 따른 동사무소부지 위치변경				
③	공공시설	변경(면적:330.0 → 330.0㎡)			· 개발에 따른 우체국부지 위치변경				
④	공공시설	변경(면적:313.8 → 700.0㎡)			· 개발에 따른 동사무소부지 위치변경 및 면적증가				

마. 건축물 규제사항 1) 용도규제		
구 분	건 축 범 위	
지 구 중 심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노유자시설,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의 규모·계획내용 및 주변 도시계획현황과 주거 및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주 구 중 심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노유자시설,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한다)	
분 구 중 심	· 일용품(식품, 일용잡화)의 소매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주 택 용 지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건축물을 수반하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 유치원, 탁아소, 경로당, 공동주택관리용시설, 공급처리시설,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학 교 용 지	· 학교시설	
공 원 용 지	· 공원시설	
도 로 용 지	· 도로시설	
녹 지	· 녹지관련시설	
광 장	· 광장관련시설	
공 공 청 사	· 공공청사	
종 교 시 설	· 종교시설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	
※ 단, 학교보건법상 제6조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2의 상대 및 절대정화구역내 불허용도 불허		
3) 건폐율규제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4) 용적률규제 ○ 기준(계획)용적률 : 230%이하(주택 용지) ○ 용적률 인센티브 : 사업시행단위별 공공시설부담률에 따라 용적률완화 차등적용 ※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0항 규정을 적용, 산출		상한용적률(%)=(1+1.3a)×기준용적률(%)이내 (a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공공용지 : 도로, 공원, 공공청사, 학교 등 공공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용지

5) 건축물의 높이		
구 분	건축물의 높이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없음	

※ 사업시행단위별 건축물의 높이는 사업시행인가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심의결과에 따름

<p>6)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 규정에 따름 <p>7) 주택규모규제(국민주택규모 건설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 규정에 따름 <p>8)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건축물은 관련법규정 및 개발기본계획지침에 따라 처리 ○ 2주구의 빗물펌프장은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상관없이 존치하는 것으로 함 ○ 5주구의 풍납 우성 아파트 및 삼용아파트를 제외한 기존 건축물(풍성중학교, 풍납중학교, 풍성초등학교, 강동세무서, 풍납동빌딩)은 존치하는 것으로 함 ○ 가능한 개발 잔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p>4. 지구개발계획도서의 비치관서 및 열람방법</p> <p>가. 공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p> <p>나. 공람장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3707-8293~4) 2) 송파구청 : 재건축 추진반(☎ 410-3150) 3) 동사무소 : 잠실4, 5, 6동사무소, 풍납2동사무소 <p>다.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 잠실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의견은 공람기간 후 반영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p>	<p>라.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p> <p>◎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65호 암사·명일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공람</p> <p>건설부고시 제398호(1979.11. 7)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37호(2002. 4.20)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 결정된 암사·명일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주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부칙 제5조 제3항과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사·명일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의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위치 및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명칭 : 서울특별시 암사·명일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나. 위치: 강동구 명일동 산15번지 일대 다. 면적 : 236,160㎡ 2. 주요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로, 공원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 토지이용계획 나. 아파트지구에서 단독주택지해제 및 중심시설의 규모, 위계조정 다.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등 도시관리계획
--	--

3. 세부변경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1) 지구 면적표

(단위 : m²)

구 분	계	주 구
변경전	247,737	247,737
변경후	236,160	236,160
비 고	기존 아파트지구에서 단독주택지 해제 및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변경	

2)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증감(m ²))	
	면적(m ²)	비율(%)	면적(m ²)	비율(%)		
계	247,737	100	236,160	100	감)11,577	
주거용지	소 계	187,685	75.8	173,807	73.6	감)13,878
	주택용지	187,685	75.8	173,807	73.6	감)13,878
중심시설 용지	소 계	11,251	4.5	11,908	5.0	증)657
	주구중심	11,251	4.5	11,152	4.7	감)99
	분구중심			756	0.3	증)756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 계	43,715	17.6	50,445	21.4	증)6,730
	도로용지	5,675	2.3	8,479	3.6	증)2,804
	학교용지	10,910	4.4	11,023	4.7	증)113
	공원용지	25,000	10.0	30,043	12.7	증)5,043
	공공시설	880	0.4	900	0.4	증)20
	유아원	750	0.3			감)750
	의료시설	500	0.2			감)500
기타용지	소 계	5,086	2.1			감)5,086
	단독주택용지	5,086	2.1			감)5,086

※ 기정 미집행된 유아원, 의료시설은 분구중심시설로(기존상가) 변경 결정, 아파트 지구내에서 단독주택용지 제척

나.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47,737	감)11,577	236,160	1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5,770	감)120	25,650	10.9%	
제2종일반주거지역	16,669	감)4,973	11,696	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05,298	감)6,484	198,814	84.1%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①	명일동 313-3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5,650	150이하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변경			
②	명일동 296-1학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696	200이하	단독주택용지 체적 및 구적 오차에 따른 면적변경			
③	명일동 15대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198,814	250이하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변경			
<p>다. 도시계획시설</p> <p>1) 도로</p> <p>○도로 결정(변경)조서</p>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2	집산도로	456	대로3-63	구천면길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15	집산도로	456	대로3-63	구천면길	일반도로			
<p>○도로 결정(변경)사유서</p>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	중로 2-	도로폭원확대(12m →15m)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개선방안으로 도로 폭원확대					
<p>2) 공원</p> <p>○공원 결정(변경)조서</p>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셋마을	근린공원	명일동 288공 일원	12,086	감) 47	12,039					
신설	②	-	근린공원	명일동 79답 일원	-	증) 5,163	5,163					
변경	①	-	체육공원	명일동 296-17공 일원	5,060	감) 184	4,876					
변경	①	-	어린이공원	명일동294-13공 일원	5,060	증) 111	5,171					
신설	②	-	어린이공원	명일동309-1대 일원	-	증) 1,534	1,534					
신설	③	-	어린이공원	명일동313-2대 일원	-	증) 1,260	1,260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①	셋마을근린공원	변경(면적: 12,086 → 12,039㎡)			·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감소				
②	근린공원	신설(면적: - → 5,163㎡)			· 현재 양호한 수림대 형성에 따른 신규 공원조성				
①	체육공원	변경(면적: 5,060 → 4,876㎡)			·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감소				
①	어린이공원	변경(면적: 5,060 → 5,171㎡)			·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증가				
②	어린이공원	신설(면적: - → 1,534㎡)			· 미집행시설 개설				
③	어린이공원	신설(면적: - → 1,260㎡)			· 미집행시설 개설				
3) 학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학교	초등학교	명일동 296-1학 일원	10,910	증) 113	11,023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①	고명초등학교	변경(면적: 10,910 → 11,023㎡)			·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증가				
4) 공공시설									
○ 공공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시설	공공청사	명일동 29대 일원	880	-	880		
변경	①	공공시설	공공청사	명일동 79답 일원	880	증) 20	900		
○ 공공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①	공공시설	변경(면적: 880 → 900㎡)			· 미집행시설로서 위치변경 및 개설에 따른 면적증가				
5) 기타시설									
○ 기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사회복지시설	유아원	명일동 28대 일원	750	-	-		
변경	①	종합의료시설	의료시설	명일동 28대 일원	600	-	-		

○기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사회복지시설	변경(면적: 750㎡ → -)	· 미집행시설로서 현재 분구 중심시설내 입지에 따른 기정시설 폐지
①	종합의료시설	변경(면적: 600㎡ → -)	
라. 건축물 규제사항			
1) 용도규제			
구분	건축범위		
주택용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건축물을 수반하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 유치원, 탁아소, 경로당, 공동주택관리용시설, 공급처리시설, 사회복지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함)		
지구중심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 위락시설(지구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상업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함),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의 규모·계획내용 및 주변도시계획 현황과 주거 및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주구중심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함),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함)		
분구중심	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회복지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함)		
학교용지	학교		
공원용지	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도로용지	도로에 부수되는 시설		
※ 단, 학교보건법상 제6조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2의 상대 및 절대정화구역내 불허용도 불허			
2) 건폐율 규제(주택용지)			
구분	건폐율	비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3) 용적률 규제			
○ 계획(기준)용적률(주택용지)			
구분	계획(기준) 용적률	비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p>○ 용적률인센티브(상한용적률) : 공공 용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함한 상한용적률 제공</p> <p>※ 상한용적률(%) = (1+1.3a)×기준용적률(%)이내 (a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p>	<p>○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공공용지 : 도로, 공원(공공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민간이 기부 채납하는 용지)</p> <p>4) 건축물의 높이</p>
--	---

구 분	건축물의 높이	비 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없음	

※ 사업시행단위별 건축물의 높이는 사업시행인가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p>5)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p> <p>○ 공동주택간 인동거리는 관계법령에 따름</p> <p>6) 건축물 배치</p> <p>○ 탐상형 배치 또는 직각배치 유도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p> <p>7) 주택용지안의 녹지확보</p> <p>○ 주택용지면적의 30% 이상의 녹지면적 확보</p> <p>○ 단지내 녹도(기부채납 대상이 아님)는 지정된 위치에서 30m 범위내에서 공원등과 연결되도록 직선형 또는 곡선형으로 녹도형태(보행+녹지)로 조성</p> <p>8) 주택공급별 규모비율</p> <p>○ 관계법령에 따름</p> <p>9)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p> <p>○ 개발잔여지 및 기존건축물은 관련법 규정 및 개발기본계획지침에 따라 처리</p> <p>○ 개발기본계획에서 주택용지로 계획된 경우 부지정형화 및 적정규모개발을 위해 다음의 권장사항에 부합되도록 처리</p> <p>- 주택재건축대상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시 연결된 개발잔여지가 있을 경우, 가급적 공동개발을 원칙으로 함</p>	<p>- 중소규모 개발잔여지 단독개발시 연결필지와 공동건축을 통해 연립주택, 아파트규모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함</p> <p>4. 관련도서 비치관서 및 열람방법</p> <p>가. 공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p> <p>나. 공람장소</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3707-8293~4)</p> <p>2) 강동구청 : 주택과 (☎ 480-1380)</p> <p>3) 동사무소 : 명일1동 동사무소</p> <p>※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p> <p>다.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 암사·명일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의견은 공람기간 이후 반영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p> <p>◎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66호 가락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위한재열람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1369호(2004.12.20)로 공고된 가락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p>
---	--

비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안)에 대한 열람결과, 일부 변경된 내용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1. 명칭, 위치 및 면적

- 가. 명칭 : 서울특별시 가락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 나. 위치 : 송파구 송파동 151번지 일대
- 다. 면적 : 117,715.5㎡

2. 주요 변경내용

- 가. 기 가락아파트지구 지구계 및 면적 변경
- 나. 기존 주구단위 정비계획에 따른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이용계획
- 다.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관리계획

3. 세부변경내용

- 가. 토지이용계획
 - 1) 지구 면적표

(단위 : ㎡)

구 분	계	1 주 구
변 경 전	113,500.0	113,500.0
변 경 후	117,715.5	117,715.5
비 고	구적오차정정	증) 4,215.5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증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113,500.0	100.0	117,715.5	100.0	증) 4,215.5	
주거 용지	소 계	76,169.0	67.1	86,013.0	73.1	증) 9,844.0
	주택용지	76,169.0	67.1	86,013.0	73.1	증) 9,844.0
중심시설 용지	소 계	4,500.0	4.0	4,779.3	4.1	증) 279.3
	주구중심	4,500.0	4.0	4,779.3	4.1	증) 279.3
도시계획 시설용지 및 기타	소 계	32,831.0	28.9	26,923.2	22.8	감) 5,907.8
	도로용지	19,974.0	17.6	9,314.6	7.9	감) 10,659.4
	공원용지	11,485.0	10.1	10,854.5	9.2	감) 630.5
	공공공지	-	-	6,754.1	5.7	증) 6,754.1
유치원	1,372.0	1.2	-	-	감) 1,372.0	

나. 용도지역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기 정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 지역	소 계	117,715.5	-	117,715.5	100.0	
	① 제1종일반주거지역	10,503.2	증) 351.3	10,854.5	9.2	
	②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90,215.7	감) 90,215.7	-	-	
	③ 제3종일반주거지역	16,996.6	증) 89,864.4	106,861.0	90.8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기준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송파동 120공	1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5,635.0	200	- 공원위치이전에 따른 변경
	송파동 151대, 119대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89,864.4	200	- 개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변경
	송파동 119대 일대	2종일반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6,242.0	150	- 공원위치이전에 따른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분에 한함)

1) 도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중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	15	국지도로	330	송파동 6-1	송파동 4-8	일반도로	가락로		
신설	중로	3	-	12	국지도로	273	송파동 6-1	송파동 6-3	일반도로	한양2차아파트		
신설	소로	2	-	8	국지도로	472	송파동 4-8	송파동 3-13	일반도로	한양1차아파트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중로 2 -	신설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개선방안으로 도로 폭원 확장
-	중로 3 -	신설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개선방안으로 도로 폭원 확장
-	소로 2 -	신설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개선방안으로 도로 폭원 확장

2) 공원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6	잠실12 공원	근린공원	송파동 120	5,635.0	증) 607.0	6,242.0	서고275호 76.10.23	
변경	7	잠실13 공원	근린공원	송파동 152	5,850.0	감) 1,237.5	4,612.5	서고233호 85.4.6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6	잠실12공원	변경(면적 : 5,635 → 6,242㎡)	- 위치변경 및 면적증가
7	잠실13공원	변경(면적 : 5,850 → 4,612.5㎡)	- 도로(151-1도)로 시설 분리 및 도로확장에 따른 면적 감소

3)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5	공공공지	송파동 151	-	증) 6,754.1	6,754.1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	공공공지	변경(면적 : - → 6,754.1㎡)		- 지역주민의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 신설				
라. 건축물 규제사항								
1) 용도규제								
구 분	건 축 범 위							
주 택 용 지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건축물을 수반하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 유치원, 탁아소, 경로당, 공동주택관리용시설, 공급처리시설,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주 구 중 심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함),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에 한함)							
공 원 용 지	· 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도 로 용 지	· 도로에 부수되는 시설							
공 공 공 지	· 공공공지에 부수되는 시설							
2) 건폐율규제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 이하			공 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 % 이하			주택용지				
3) 용적률규제								
○ 계획(기준)용적률(주택용지)								
구 분	계 획 (기 준) 용 적 률			비 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공 원				
제2종(12층)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주택용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주택용지				
○ 용적률인센티브(상한용적률) : 사업 시행단위별 공공시설부담률에 따라 용적률완화 차등 적용				※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0항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3조 1항의 규정을 적용, 산출.				

상한용적률(%) = (1+1.3a)×기준
용적률(%)이내
(a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
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공공용지 :
도로, 공원, 공공공지 (공공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민간이 기부채납하
는 용지)
4) 건축물의 높이

구 분	건축물의 높이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공 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없음	주택용지

※ 사업시행단위별 건축물의 높이는 사업시행인가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5)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 공동주택간 인동거리는 관계법령에 따름
- 6) 건축물 배치
 - 간선도로변 탑상형 또는 직각배치 유도로 시각회랑 확보
- 7) 주택용지안의 녹지확보
 - 주택용지면적의 30% 이상의 녹지면적 확보
 - 단지내 녹도(기부채납 대상이 아님)는 공원등과 연결되도록 직선형 또는 곡선형으로 녹도형태(보행+녹지)로 조성
- 8) 주택공급별 규모비율
 - 관계법령에 따름
- 9)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기존건축물은 관련법규정 및 개발기본계획지침에 따라 처리
 - 리모델링으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시에는 중진계획(현행)을 적용
- 4. 관련도서 비치관서 및 열람방법
 - 가. 공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나. 공람장소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3707-8293~4)
 - 2) 송파구청 : 도시관리국 재건축추진반(☎ 410-3150~4)
 - 3) 동사무소 : 송파동

※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다.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 가락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
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하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의견에 대
하여는 공람기간 이후 반영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67호
이수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위한재열람**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1371호(2004.12.20)
로 공고된 이수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
비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안)에 대한
열람결과, 일부 변경된 내용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 1. 명칭, 위치 및 면적
 - 가. 명칭 : 서울특별시 이수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 나. 위치 : 서초구 방배동 758번지 일대
 - 다. 면적 : 81,633.6㎡
- 2. 주요 변경내용

가. 도로의 폐지 및 공원 설치 등 도시 기반시설의 조정으로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 수립
 나. 주구중심계획 수립 및 시설 규모 및 위계 조정
 다.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관리계획

라. 아파트지구의 개발사업 완료 후 장기간 경과되어 재건축등에 의한 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

3. 세부변경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1) 지구면적표

구 분	계 (㎡)	1지구 (㎡)	비 고
변 경 전	83,000.0	83,000.0	
변 경 후	81,633.6	81,633.6	구적오차 면적정정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83,000.0	100.0	81,633.6	100.0	감) 1,366.4	
주거용지	소 계	73,280.1	88.3	62,489.6	76.5	감) 10,790.5
	주택용지	73,280.1	88.3	62,489.6	76.5	감) 10,790.5
중심시설 용지	소 계	-	-	6,508.0	8.0	증) 6,508.0
	주구중심	-	-	6,508.0	8.0	증) 6,508.0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 계	9,719.9	11.7	12,636.0	15.5	증) 2,916.1
	도로용지	9080.4	10.9	6,957.9	8.5	감) 2,122.5
	공원용지	-	-	5,038.6	6.2	증) 5,038.6
	공공시설용지	639.5	0.8	639.5	0.8	-

나. 용도지역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3,000	감) 1,366.4	81,633.6	100.0	구적오차 면적 정정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증) 5,038.6	5,038.6	6.2	어린이공원 신설
제3종 일반주거지역	83,000	감) 6,405.0	76,595.0	93.8	

○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변경내용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770-1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5,038.6	150%	어린이공원 신설
	770-1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76,595.0	230%	어린이공원 신설에 따른 면적 감소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폐에 관한 계획 (변경부분에 한함) ○공원 결정(변경)조서 (신규 설치)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770-1	-	증)5,038.6	5,038.6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어린이공원		신설(면적: - → 5,038.6㎡)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					
○도로 결정(변경)조서 (일부 폐지)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류		6	국지도로	154.7	758-3	775-2	일반도로	단지내부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일반도로		일반도로		폐지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라. 건축물 규제사항												
1) 용도규제												
구분	건축범위											
주택용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건축물을 수반하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 유치원, 탁아소, 경로당, 공동주택관리용시설, 공급처리시설, 사회복지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함)											
지구중심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문화 및 집회관련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에 한함), 판매시설, 위락시설(지구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에 상업지역이 있는 경우는 제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함),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의 규모, 계획내용 및 주변 도시계획 현황과 주거 및 교통상황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주구중심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문화 및 집회관련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함),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함), 종교집회장											

구 분	건 축 범 위	
분구중심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회복지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함)	
학교용지	학교시설	
공원용지	공원시설	
도로용지	도로시설	
녹 지	녹지시설	
<p>※ 단, 학교보건법상 제6조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2의 상대 및 절대정화구역내 불허용도 불허</p> <p>※ 주거중심내 건축물의 용도는 현재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허용범위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상의 건축범위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p>		
2) 건폐율 규제		
구 분	건 폐 율	비 고
고층아파트	25% 이하	
기타	50% 이하	주거중심시설
3) 용적률 규제		
구 분	계 획 (기준) 용 적 률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어린이공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p>○ 용적률인센티브(상한용적률) : 사업시행단위별 공공시설부담률에 따라 용적률 완화 차등적용</p> <p>※ 상한용적률은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10항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 $\text{상한용적률(\%)} = (1 + 1.3 \times \alpha) \times \text{기준용적률(\%)} \text{ 이 내}$</p> <p>($\alpha$: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비율)</p> <p>○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공공용지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p>		
4) 건축물의 높이		
구 분	건축물의 높이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어린이공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없음	
주거중심	5층 이하	
<p>※ 사업시행단위별 건축물의 높이는 사업시행인가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p>		
5)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 공동주택간 인동거리는 관계법령에 따름		
6) 주택용지안의 녹지확보		
○ 주택용지면적의 30% 이상의 녹지면적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공원 확보 ○ 방배로 및 방배중앙로변과 인접한 단지내 상가,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 등에 대해 폭7m의 녹지 설치를 원칙으로 함 7) 공동주택내 보행녹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지구내 어린이공원과 아파트 지구 외부의 어린이공원을 연결하는 보행녹도 연결체계 수립을 원칙으로 함 8)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지구 내부 및 주변 이면도로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과 차량의 운행을 분리하는 보도 설치를 원칙으로 함 9) 주택공급별 규모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령에 따름 10)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모델링으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시에는 종전계획(현황)을 적용하여 관계 법령에 따름 5. 지구개발계획도서의 비치관서 및 열람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3707-8293~4) 2) 서초구청: 도시관리국 건축과 (☎ 570 - 6493) 3) 동사무소: 방배본동 사무소 ※ 관련도서: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다.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이수아파트 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공람기간 이후 반영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p>◎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68호 원효·이촌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을위한재열람</p> <p>서울특별시공고 제2004-1374호(2004. 12. 20)로 공고된 원효·이촌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안)에 대한 열람결과, 일부 변경된 내용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p> <p>1. 명칭, 위치 및 면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명칭: 서울특별시 원효·이촌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나. 위치: 원효지구 - 원효로 제2동 일대, 이촌지구 - 이촌 제2동 일대 다. 면적: 원효지구 - 27,117.3㎡, 이촌지구 - 98,270.6㎡ <p>2. 주요 변경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 아파트지구 지구계 및 면적 변경 나. 기존 주구단위 정비계획에 따른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다.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	---

3. 세부변경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1) 지구면적표

구 분	원 호 지 구		이 촌 지 구			
	계(m ²)	1주구	계(m ²)	1주구	2주구	3주구
변 경 전	26,965.0	26,965.0	116,999.0	73,735.0	-	43,264.0
변 경 후	27,117.3	27,117.3	98,270.6	26,778.6	25,256.7	46,235.3
증 감	증)152.3	증)152.3	감)18,728.4	감)46,956.4	증)25,256.7	증)2,971.3
비 고	구적오차 정정		구적오차 정정	주구분할 변경		주구명 변경 (2주구→3주구)

2) 토지이용계획(원호지구)

구 분	원 호 지 구				비 고 (증감:m ²)	
	기 정		변 경			
	면 적(m ²)	비 율(%)	면 적(m ²)	비 율(%)		
계	26,965.0	100.0	27,117.3	100.0	증)152.3	
주거용지	소 계	26,030.0	96.5	23,470.3	86.6	감)2,559.7
	주택용지	26,030.0	96.5	23,470.3	86.6	감)2,559.7
중심시설 용지	소 계	935.0	3.5	935.0	3.4	변경없음
	주구중심	935.0	3.5	935.0	3.4	변경없음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 계	-	-	2,712.0	10.0	증)2,712.0
	공원용지	-	-	2,712.0	10.0	증)2,712.0

3) 토지이용계획(이촌지구)

구 분	이 촌 지 구				비 고 (증감:m ²)	
	기 정		변 경			
	면 적(m ²)	비 율(%)	면 적(m ²)	비 율(%)		
계	116,999.0	100.0	98,270.6	100.0	감)18,728.4	
주거용지	소 계	100,588.3	86.0	74,295.8	75.6	감)26,292.5
	주택용지	100,588.3	86.0	74,295.8	75.6	감)26,292.5
중심시설 용지	소 계	3,269.5	2.8	4,288	4.4	증)1,018.5
	주구중심	2,443.1	2.1	3,461.6 (1,088.9)	3.5 (1.1)	증)1,018.5
	분구중심	826.4	0.7	826.4	0.9	-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 계	13,141.2	11.2	19,686.8	20.0	증)6,545.6
	도로용지	13,141.2	11.2	17,975	18.3	증)4,833.8
	공공공지	-	-	1,711.8	1.7	증)1,711.8

주) ()는 도시계획시설용지 중 공공시설용지(공공청사)이나 주구중심 면적에 포함함

나. 용도지역계획(변경부분에 한함)

1) 원호지구 : 변경없음

2) 이촌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 지역	소 계	98,270.6	-	98,270.6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1,219.7	-	11,219.7	11.4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19,834.9	감)9,680.3	10,154.6	10.3	
	제2종(12층) 일반주거지역	14,146.4	감)4,466.1	9,680.3	9.9	
	제3종일반주거지역	53,069.6	증)14,146.4	67,216.0	68.4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m ²)	기준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이촌동211-1대 일원 (중산아파트)	제2종(12층)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7,814.0	200% 이하	·향후 공동주택 재건축산업의 대상지역으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안정된 개발을 위하여 적정규모의 공동주택 건립과 도시기반시설여건 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이촌동193-3대 일원 (강변·강서맨션)	제2종(12층)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6,332.4	200% 이하	·향후 공동주택 재건축산업의 대상지역으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안정된 개발을 위하여 적정규모의 공동주택 건립과 도시기반시설여건 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이촌동209-23대 일원 (미도연립·시범아파트)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제2종(12층) 일반주거지역	9,680.3	190% 이하	·향후 공동주택 재건축산업의 대상지역으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안정된 개발을 위하여 적정규모의 공동주택 건립과 도시기반시설여건 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계획(변경부분에 한함)

1) 도로(이촌지구)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3	425	12	국지도로	148	이촌동171-1	소로1-3 이촌동171-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	10~12	국지도로	513	소로2-1 이촌동171-1	소로2-5 이촌동171-1	일반도로			

구분	구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1	2	10	국지도로	63	이촌동171-1	소로1-1 이촌동171-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2	10	국지도로	63	이촌동171-1	소로1-1 이촌동171-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3	10	국지도로	129	이촌동171-1	이촌동171-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	8	국지도로	226	이촌동171-1	소로1-1 이촌동171-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89	이촌동171-1	이촌동171-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3	8	국지도로	46	이촌동171-1	소로1-1 이촌동171-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4	8	국지도로	16	이촌동171-1	소로1-1 이촌동171-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5	8	국지도로	158	이촌동171-1	이촌동171-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6	8	국지도로	12	소로1-3 이촌동171-1	이촌동 171-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7	8~10	국지도로	141	이촌동171-1	소로1-3 이촌동171-1	일반도로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3-425	·노선신설 ·B=12m, L=148m	·기 개설되어 현재 사용중인 현황도로를 도시관리가 용이하도록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소로1-1	·노선신설 ·B=10 ~ 12m, L=513m	·기 개설되어 현재 사용중인 현황도로를 도시관리가 용이하도록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소로1-2	·노선신설 ·B=10m, L=63m	·기 개설되어 현재 사용중인 현황도로를 도시관리가 용이하도록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소로1-3	·노선신설 ·B=10m, L=129m	·기 개설되어 현재 사용중인 현황도로를 도시관리가 용이하도록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소로2-1	·노선신설 ·B=8m, L=226m	·기 개설되어 현재 사용중인 현황도로를 도시관리가 용이하도록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소로2-2	·노선신설 ·B=8m, L=89m	·기 개설되어 현재 사용중인 현황도로를 도시관리가 용이하도록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소로2-3	·노선신설 ·B=8m, L=46m	·기 개설되어 현재 사용중인 현황도로를 도시관리가 용이하도록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소로2-4	·노선신설 ·B=8m, L=16m	·기 개설되어 현재 사용중인 현황도로를 도시관리가 용이하도록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소로2-5	·노선신설 ·B=8m, L=158m	·기 개설되어 현재 사용중인 현황도로를 도시관리가 용이하도록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소로2-6	·노선신설 ·B=8m, L=12m	·기 개설되어 현재 사용중인 현황도로를 도시관리가 용이하도록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소로2-7	·노선신설 ·B=8~10m, L=141m	·기 개설되어 현재 사용중인 현황도로를 도시관리가 용이하도록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2) 공원(원효지구)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원효1공원	어린이 공원	원효로4가 118-16	-	증)2,712.0	2,712.0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원효1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신설 · 위치 : 원효로4가 118-16 · 면적 : 2,712.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원신설 				
3) 공공공지(이촌지구)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①	공공공지	이촌동 211-1 일원	-	증)636.6	636.6			
신 설	②	공공공지	이촌동 210-13 일원	-	증)147.0	147.0			
신 설	③	공공공지	이촌동 209-1 일원	-	증)196.0	196.0			
신 설	④	공공공지	이촌동 209-27 일원	-	증)356.4	356.4			
신 설	⑤	공공공지	이촌동 193-5 일원	-	증)375.8	375.8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지신설 · 위치 : 이촌동 211-1일원 · 면적 : 636.6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 경관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공지 신설 				
②	공공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지신설 · 위치 : 이촌동 210-13일원 · 면적 : 147.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 경관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공지 신설 				
③	공공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지신설 · 위치 : 이촌동 209-1일원 · 면적 : 196.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 경관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공지 신설 				
④	공공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지신설 · 위치 : 이촌동 209-27일원 · 면적 : 356.4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 경관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공지 신설 				
⑤	공공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지신설 · 위치 : 이촌동 193-5일원 · 면적 : 375.8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 경관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공지 신설 				

4)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청사	공공청사	이촌동 206-2	-	증)1,088.9	1,088.9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 공공청사신설 · 위치 : 이촌동 206-2 · 면적 : 1,088.9㎡		· 복지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 신설					
라. 건축물 규제사항 1) 용도규제									
구 분	건 축 범 위								
주 택 용 지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건축물을 수반하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 유치원, 탁아소, 경로당, 공동주택관리용시설, 공급처리시설,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주 구 중 심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함),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에 한함)								
분 구 중 심	·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회복지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함)								
공 원 용 지	· 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공 공 공 지	· 공공공지에 부수되는 시설								
도 로 용 지	· 도로에 부수되는 시설								
※ 단, 학교보건법상 제6조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2의 상대 및 절대정화구역내 불허용도 불허									
※ 주거중심내 건축물의 용도는 현재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허용범위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상의 건축범위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 건 폐 율 규제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 % 이하								

3) 용적률규제 ○ 계획(기준)용적률(주택용지)		
구 분	계획(기준)용적률	비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제2종(7층)→제2종(12층)	190% 이하	
제2종(12층)→제3종	20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 용적률인센티브(상한용적률) : 사업시행단위별 공공시설부담률에 따라 용적률완화 차등적용 ※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0항 규정을 적용, 산출. 상한용적률(%) = (1+1.3×a) × 계획(기준)용적률(%)이내 (a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공공용지 : 도로, 공원, 공공공지(공공시설의 설치 목적을 목적으로 민간이 기부채납하는 용지) 4) 건축물의 높이		
구 분	건축물의 높이	비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12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없음	
※ 사업시행단위별 건축물의 높이는 사업시행인가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5)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 공동주택간 인동거리는 관계법령에 따름 6) 건축물 배치 ○ 한강 인접부 탐상형 배치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 ○ 간선도로변 탐상형 또는 직각배치 유도로 시각회랑 확보 7) 주택용지안의 녹지확보 ○ 주택용지면적의 30% 이상의 녹지면적 확보 ○ 단지내 녹도(기부채납 대상이 아님)는 공원등과 연결되도록 직선형 또는 곡선형으로 녹도형태(보행+녹지)로 조성		
8) 주택공급별 규모비율 ○ 관계법령에 따름 9)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기존건축물은 관련법규정 및 개발기본계획지침에 따라 처리 ○ 리모델링으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시에는 종전계획(현황)을 적용하여 관계법령에 따름 4. 관련도서 비치관서 및 열람방법 가. 공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3707-8293~4) 2) 용산구청 : 도시관리국 건축과 (☎ 710-3391)		

3) 동사무소 : 이촌2동, 원효로2동
 ※ 관련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다.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 원효·이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열람기간 이후 반영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69호
서울특별시의회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부의안건명	주관부서
의견 청취안	뉴타운지구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뉴타운사업본부 (뉴타운총괄반)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70호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위탁운영체모집

노인복지법 제53조2항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립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위탁대상 시설
 - 시설명 :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실비전문요양시설)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369-2 외 13필지(추후 지번확정예정)
 - 규모
 - 대지 : 4,462㎡
 - 건물 : 8,924㎡
 - 위탁운영개시일 : 2006년 12월
 - 비고 : 입소정원 250명 (주·단기보호 70명 별도)
2. 위탁기간 : 위탁운영 협약일부터 3년
3. 신청자격
 - 주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노인전문

- 요양원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4. 수탁자 선정방법
 - 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심사 병행)
 - 나. 다수 법인이 신청하였다도 선정심사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5. 수탁법인 지원사항
 - 가. 국·시비보조금 지원기준에 의한 운영비 및 개원시 장비구입비 지원
 6. 사업설명회 개최
 - 가. 일시 : 2005. 3. 21(월) 10:00 ~ 12:00
 - 나. 장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 제1별관 10층회의실
 - ※ 주차장 협소 및 무료주차 불가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가. 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05. 4. 16 까지 (근무시간내)
 - 나. 장소 :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국 노인복지과(서소문 제1별관 5층)
 - 다. 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 노인복지과에 제출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불가)

8. 신청 서류 (각 15부)

- 가. 신청서(소정양식) : 서울시청 노인복지과(서소문별관5층)에 비치 및 사업설명회시 배부
- 나.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 첨부),법인임원 및 자산현황(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첨부)
- 다.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시설 사업계획서(분량 제한없음) 및 사업계획서 요약분(A4용지 4매이내)
- 라. 시설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 마. 2004 법인사업실적 및 2005 법인사업계획서

9.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국 노인복지과 (☎ 3707-922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고 시

◎종로구고시 제2005-12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71-1외 12필지상의 무악연립제2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종 로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의한 정비사업중 주택재건축사업
2. 사업의 명칭 : 무악연립제2주택재건축사업
3. 사업구역 : 종로구 무악동 71-1외 12필지
4. 시행면적 : 7,823.20㎡(대지면적)
5. 시행기간 : 2005. 3. ~ 2008. 6.
6. 사업시행인가일 : 2005. 3.14
(조건부 인가)
7. 사용할 토지의 명세 및 용도폐지되는 도로 : 별첨
8. 건축계획
 - 가. 규모 : 지하2층, 지상6~15층(높이 41.15m), 아파트 3개동 15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나. 건축면적 : 1,496.46㎡
 - 다. 연면적 : 25,319.36㎡
(건폐율 19.13%, 용적율 211.91%)
 - 라.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9.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71-4 무악연립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유영달

10. 의제사항

- 가.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나.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및 동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11. 기타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주택과(☎ 731-1402~5)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할 토지의 명세

○사업명 : 무악연립제2주택재건축

연번	소재지	지목	1필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무악동 57-9	공원	1,174.80	1,174.80	종로구	
2	" 57-11	임야	928.60	928.60	서울특별시	
3	" 71-1	대지	753.60	753.60	재건축조합	
4	" 71-2	대지	643.20	643.20	재건축조합	
5	" 71-3	대지	219.20	219.20	재건축조합	
6	" 71-4	대지	843.80	843.80	재건축조합	
7	" 72	대지	208.90	208.90	서울특별시	
8	" 73-1	대지	1,057.70	1,036.31	재건축조합	
9	" 73-2	임야	557.20	549.79	서울특별시	
10	" 80	임야	109.70	109.70	서울특별시	
11	" 81-2	도로	287.30	287.30	종로구	
12	" 81-6	도로	4,798.50	461.73	종로구	
13	" 81-8	도로	1,056.00	606.27	종로구	
계	13필지		12,638.50	7,823.20		

용도폐지되는 도로

○사업명 : 무악연립제2주택재건축

연번	소재지	지목	1필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무악동 81-2	도로	287.30	287.30	종로구	
2	" 81-6	도로	4,798.50	461.73	종로구	
3	" 81-8	도로	1,056.00	606.27	종로구	
계	3필지		6,141.80	1,355.30		

◎광진구고시 제2005-14호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20-22번지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32조, 같은법률시행령제25조·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17일
광진구청장

1. 변경결정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조서
 - 구분 : 변경
 - 시설명 : 학교
 - 시설의 세분 : 초등학교(중광)
 - 위치 : 광진구 중곡동 220-22번지

- 면적
 - 기정 : 5,616.6㎡
 - 변경 : 감)19.5㎡
 - 변경후 : 5,597.1㎡
- 최초결정일 : '82. 2. 3
- 3. 관계도서 : 생략(광진구청 도시개발과 비치도서와 같음)
- 4.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개발과(☎450-1385) 및 지적과(☎ 450-149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고시 제2005-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결정(변경)및지형도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146-71 ~ 휘경동197-2호간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2005년 3월 17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결정(변경)취지
 - 중앙선복선 전철화사업으로 기존 현황 도로 폭이 일부 축소되어 통행이 불편하므로 일부 철도용지를 포함하여 선형이 유지되는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함으로써 통행불편해소는 물론 도로의 효용을 높이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 결정 및 변경 결정 조서
 - 도로
 - 구분 : 신설
 - 규모
 - 등급 : 소로
 - 류별 : 3

- 폭원 : 8m
- 기능 : 국지도로
- 연장 : 388m
- 기점 : 휘경동 146-71
- 종점 : 휘경동 197-2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철도
 - 구분 : 기정
 - 시설명 : 철도
 - 시설의 세분 : 일반철도
 - 기점 : 동대문구 전농동588-1
 - 종점 : 중랑구망우동 도시구역계
 - 연장 : 7,230m
 - 면적 : 249,349.3㎡
 - 최초결정일 : '97. 6.12
 - 구분 : 변경
 - 시설명 : 철도
 - 시설의 세분 : 일반철도
 - 기점 : 동대문구 전농동588-1
 - 종점 : 중랑구 망우동 도시구역계
 - 연장 : 7,230m
 - 면적 : 248,958.3㎡
 - 최초결정일 : -
 - 비고 : 감) 391㎡
- ※ 연장변경 없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구간의 철도 폭원변경(면적 감 391㎡)
-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4.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2127-4584) 및 기획재정국 지적과(☎2127-4496), 건설교통국 토목과(☎2127-4811)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중랑구고시 제2005-28호

도시관리계획결정의실효고시및재결정

1. 서울특별시 중랑구고시 제2002-53호 (2002.12.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 된 건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 절차 미 이행으로 동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실효고시 하고,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고시(지형도면승인·고시포함)합니다.
2. 관련도면은 중랑구청 주택과(☎490-3380~3)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3월 17일
중 랑 구 청 장

- 가. 실효일자 : 2004.12.24
- 나. 실효사유 : 서울특별시 중랑구고시 제2002-53호(2002.12.23)로 결정고시 되었으나 지형도면(승인)고시 절차 미이행
- 다. 실효고시 내용 및 재결정 고시조서
- 구분 : 신설

- 규모
 - 등급 : 소로
 - 규별 : 2
 - 번호 :
 - 폭원 : 8m
- 연장 : 147m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기능 : 국지도로
- 위치 :
 - 기점 : 상봉동 산14-4
 - 종점 : 상봉동19-26

라. 토지조서 : 따로붙임

마. 의제 처리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고시 : 별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8항에 의거 지형도면(승인)고시 생략

바.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주택과(☎490-338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구분		지목	면적		소유자	
행정구역	지번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계		-	2,796	1,244		
상봉동	18-10	대	31	31	송파구 방이동 65-3 삼공빌딩 4층	건영상봉1,2,3지역 주택조합
상봉동	18-17	대	408	408	"	"
상봉동	19-19	대	81	81	"	"
상봉동	19-20	대	72	72	"	"
상봉동	19-21	대	85	85	"	"
상봉동	19-26	대	1,624	72	중랑구 신내동 662	중랑구청
상봉동	19-45	대	41	41	송파구 방이동165-3 삼공빌딩 4층	건영상봉1,2,3지역 주택조합
상봉동	19-65	대	1	1	"	"
상봉동	19-68	도	4	4	"	"
상봉동	19-80	대	102	102	"	"
상봉동	19-81	대	128	128	"	"
상봉동	산14-4	대	219	219	"	"

◎중랑구고시 제2005-29호

도시계획시설(나들이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61호(2005. 2.28)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나들이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중랑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나들이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 별첨
2. 도시계획시설(나들이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도면 : 계획생략
(서울특별시 공원과, 중랑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 공원녹지과(☎ 02-490-339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나들이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최초결정)

가. 총괄표 (위치 : 중랑구 망우동 산30-7번지 일대)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32,000	10,944	1동	120.63	91.26	6	시설율 38.81%
기반시설	소계	5,704					
	도로	3,796					
	광장	1,908					
조경시설	952	952					
휴양시설	285	285				5	
유희시설	285	285				1	
운동시설	2,530	2,530					
교양시설	112	112					
편익시설	620	620					
관리시설	456	456	1동	120.63	91.26		
녹지 및 기타	21,056	-					녹지율 61.19%

나. 시설조서 (최초결정)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32,000	10,944						시설율 38.81%
기반시설	계			5,704	5,704						
	도로			3,796	3,796						
	광장	가		1,908	1,908						
조경시설	계			952	952						
	관찰데크	나		337	337	목재					
		나1		(200)	(200)						
		나2		(137)	(137)						
	연못	다		615	615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휴양 시설	계			285	285						
	휴게소	라		285	285						
		라-1		(185)	(185)						
		라-2		(100)	(100)						
	파고라	①	전지역			목재				5	
유희 시설	계			285	285						
	놀이터	마		285	285						
	뽕동산	②				막구조				1	
운동 시설	계			2,530	2,530						
	맨발건강원	바		1,720	1,720						
	배드민턴장	사		810	810						
교양 시설	계			112	112						
	야외무대	아		112	112						
편익 시설	계			620	620						
	주차장	자		620	620						
관리 시설	계			456	456						
	관리사무소	1		456	456		1동	120.63	91.26		
녹지 기타	계			21,056	-						
	녹지			21,056	-						

도 로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1,079	3,796				
신설	소로	2	1	8	275	2,200	진입도로	49-27도, 북측경계	75전, 남측경계	
	산책로		1	2.5	60	150	산책로	소로 2-1	산30-6입, 동측경계	
	산책로		2	1.5	240	360	산책로	소로 2-1, 북측경계	75전, 남측경계	
	산책로		3	2	223	446	연결로	생태습지원 상부	생태습지원 하부	
	산책로		4	2	20	40	산책로	입구광장	휴게소-1	
	산책로		5	4	9	36	산책로	73-3답, 북측경계	휴게소-2	
	산책로		6	2	5	10	산책로	휴게소-1	휴게소-2	
	산책로		7	2	148	347	산책로	휴게소-2	72전, 남측경계	
	산책로		8	4.6	25	115	산책로	산30-7, 서측경계	산책로-7	
	산책로		9	1.6	30	48	산책로	산책로-7	산책로-3	
	산책로		10	1	34	34	산책로	산책로-3	75전, 남측경계	
	산책로		11	1	10	10	산책로	산책로-3	입구광장	

◎강북구고시 제2005-15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인가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하고 강북구공고 제2005-69호(2005. 2. 5)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수유4동 560~561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외 1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을 시행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토목치수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3월 17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연번 : 1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수유4동 560~561번지간 도로개설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수유4동 560-14 ~ 561-20
- 규모 : B=6m, L=186m
- 결정고시 :
서울시고시 제354호('90.10.24)
- 지형도면고시 :
도봉구고시 제26호('92. 7.23)

- 연번 : 2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수유6동 535번지 주변 도로개설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수유6동 535-49 ~ 535-58
- 규모 : B=6m, L=70m

- 결정고시 :
서울시고시 제354호('90.10.24)
- 지형도면고시 :
도봉구고시 제26호('92. 7.23)
- 나.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다.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2년
-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 : 별첨
-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 토목치수과(☎ 901-6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의 명칭 : 수유6동 535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
- 사업 시행자 : 강북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	수유동 535-301	도로	357	357			강북구				
2	수유동 535-272	대	38	38		강북구 수유동 535-271	김순연				
3	수유동 535-273	대	189	189	6/17	강동구 방이동 109-4	이근옥				
					10/17	강남구 개포동 653 현대1차아파트 105-201	이승면				
					1/17	강동구 방이동 109-4	이승희				
4	수유동 535-281	대	104	104		강북구 수유동 535-307	김상언		서울특별시 금천구	압류	
									서초구 양재동 372	영동농업 협동조합	근저 당권
5	수유동 535-309	도로	24	24		강북구 수유동 535-58	최영래				
6	수유동 535-68	도로	420				국 (건설부)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 사업의 명칭 : 수유6동 535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
- 사업 시행자 : 강북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공유 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 용	
1	수유동 535-51	건물		14	6/17	강동구 방이동 109-4	이근옥				
					10/17	강남구 개포동 653 현대1차아파트105-201	이승면				
		가건물		12	1/17	강동구 방이동 109-4	이승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수유4동 560~561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

○사업 시행자 : 강북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	수유동 558-58	대	1	1		강북구 수유동 558-48	오택근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주) 제일은행	근저 당권	
2	수유동 560-118	대	105	105		도봉구 도봉동 도봉한신@ 101-103	권성임				
3	수유동 560-108	대	90	90		강북구 수유동 560-2	안덕현				
4	수유동542-7	대	1	1		강북구 수유동 542-2	한윤만				
5	수유동 542-8	대	5	5		강북구 수유동 252-179	윤정임				
6	수유동 559-8	대	16	16		강북구 수유동 559-3	김선용				
7	수유동 560-33	대	13	13		경남 경주시 황오동 81-3	김귀자				
8	수유동 560-121	대	47	47		강북구 수유동560-16	나정웅				
9	수유동 561-16	대	7	7	1/5	강북구 미아동 542-12	이명진				
					1/5	성동구 상왕십리동 711-310	박현호				
					1/5	강북구 수유동 252-127	변봉섭				
					1/5	강북구 수유동 252-115	최정자				
					1/5	강북구 수유동 327-14	홍승례				
10	수유동 560-120	대	60	60	3/10	강북구 수유동 560-14	조정자				
					2/10	강북구 수유동 560-14	박현천				
					2/10	강북구 수유동 560-14	박상천				
					3/10	강북구 수유동 560-14	박성곤				
11	수유동 636-4	도로	45	45			국(건설부)				
12	수유동 636-9	대	5	5			국(건설부)				
13	수유동 636-11	대	16	16			국(건설부)				
14	수유동 560-122	대	14	14			국				
15	수유동 636-14	대	542	206			국(건설부)				
16	수유동 605-487	대	59	59			국(건설부)				
17	수유동 605-183	대	429	378			국(건설부)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 사업의 명칭 : 수유4동 560~561번지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
- 사업 시행자 : 강북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1	수유동 560-16	건물	연와조	46		수유동 560-16	나정웅				
3	수유동 542-1 외 1필지	건물	세멘조	40		서대문구 북가좌동 314-42 101호	최영신				
4	수유동 560-33	건물	세멘조	15		경북 경주시 황오동 81-3	김귀자				무허가
		화장실		3							
5	수유동 560-14	창고		4		수유동 560-14	박인수				무허가
10	수유동 558-16	건물(지하)	연와조	4		수유동 558-16	성성악				
		건물(1층)		4							
		건물(2층)		7							
		창고		6							

◎도봉구고시 제2005-1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05-5호(2005. 1.31)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공고 제2005-78호(2005. 2. 17)로 열람 공고한 도봉구 방학2동 600-13호 공동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교통행정과에 비치하여 토지,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3월 17일
도봉구청장

가. 사업개요

- 사업 시행지의 위치 : 도봉구 방학2동 600-13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규모 : 717.9㎡
- 시설결정 고시 : 도봉구고시 제2005-5호(2005. 1.31)
- 지형도면 승인 : 도봉구고시 제2005-5호(2005. 1.31)

나.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사업인가일부터 ~ 2005. 9.30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마. 위치도: 도봉구청 교통행정과에 비치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2289-19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명 :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면적 (㎡)	소 유 권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계		717.9					
1	도봉구 방학동 600-13	대지	717.9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600-13	문동환			

물 건 조 서

○사업명 :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건물면적 (㎡)	소 유 권		이해관계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계			114.65					
1	도봉구 방학동 600-13	주택	연와조	114.65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600-13	문동환			

◎도봉구고시 제2005-16호

도봉제1구역주택재개발사업공사완료

- 서울특별시 고시제1998-21호('98. 2. 3)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적승인되고, 도봉구 제1998-1호('98. 7. 6)로 조합설립인가 되고, 도봉구고시 제2002-10호('02. 2.18)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서울시고시 제2002-170(2002. 5.10)호로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되고, 2002. 8. 6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리되고, 도봉구 고시 제2002-77호('02.12.3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된 도봉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대로 공사완료 되었기에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17일
도 봉 구 청 장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봉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89번지 외122필지
○면적 : 18,321.30㎡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도봉 제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남상민
○주소 : 도봉구 도봉2동 92-68호(신우빌딩 2층)
- 준공인가의 내역 : 아파트 7개동 4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가. 건축면적 : 3,416.60㎡
나. 건축연면적 : 59,097.60㎡
다. 공공시설(도로) : 299.10㎡

◎도봉구고시 제2005-17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05호('77. 4.14)로 결정된 도봉구 쌍문동 441-3일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17일

도 봉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결정조서

- 구분 : 변경
- 시설명 : 체육시설
- 시설의 세분 : 종합체육관
- 위치 : 쌍문동 441-3 일대
- 면적
 - 기정 : 9,102㎡
 - 변경 : (증)218㎡
 - 변경후 : 9,320㎡
- 최초결정일 : '77. 4.14(서고105)
- 비고 : 추가 376㎡
단순면적정정(-158㎡)

다.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시는 본 결정고시로 같음합니다.

마. 열람장소 : 도봉구청 도시정비과(☎ 2289-1803), 지적과(☎2289-145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은평구고시 제2005-23호

도시계획사업(응암4동어린이놀이터)실시 계획작성

1.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04-131 (2004.12.27)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및지형도면 승인된 우리구 응암4동 751-22일대 응암4동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 실시계획작성을 위한 서류의 열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완료하고,국토의계획 및이용에 관한법률제8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응암4동어린이놀이터)실시계획 작성하고, 같은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공원 녹지과(☎350-1395~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3월 17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4동 751-22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공공공지)
- (2) 사업의 명칭 : 응암4동어린이놀이터

다. 사업의 내용

- (1) 놀이터 면적 : 584.9㎡
- (2) 시설규모 : 459.32㎡(공작물 : 34기), 녹지조성 125.58㎡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1) 성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2)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84번지

마.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2005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별첨

사.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99조에 의함.

아. 작성조서 : 별항.

도시계획시설(응암4동 어린이놀이터)조성계획결정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응암4동 751-22일대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584.90	459.32				34	
기반 시설	소계	265.21	265.21				
	도로	22.96	22.96				
	광장	242.25	242.25				
조경시설	(20.25)	(20.25)				1	
휴양시설	(12.34)	(12.34)				7	
유희시설	186.15	186.15				2	
운동시설	7.96	7.96				2	
관리시설						22	
녹지및기타	125.58						
시설율	$(459.32\text{㎡} \div 584.90\text{㎡}) \times 100\% = 78.53\%$						
건폐율							

나. 시설조서(최초결정)

구분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응암4동일대	584.90	459.32					34	
기반 시설	소계		265.21	265.21						
	도로 (계)		22.96	22.96						
	광 장 (계)	가.	242.25	242.25						
	광장	가-1	(109.85)	(109.85)						
	광장	가-2	(132.40)	(132.40)						
조경 시설	소계		(20.25)	(20.25)					1	
	그늘시렁	①	(20.25)	(20.25)					1	

구분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휴양 시설	소계		(12.34)	(12.34)					7	
	원형등의자	②	(5.02)	(5.02)					2	
	반원형의자	③	(2.52)	(2.52)					2	
	앉음벽	④	(4.80)	(4.80)					3	
유희 시설	소계		186.15	186.15					2	
	어린이놀이터	나.	186.15	186.15						
	조합놀이대	⑤	(22.90)	(22.90)					1	
	유아용조합놀이대	⑥	(6.88)	(6.88)					1	
운동 시설	소계		7.96	7.96					2	
	체력단련장	다.	7.96	7.96						
	TM크로스컨트리	⑦							1	
	TM체어플	⑧							1	
관리 시설	소계								22	
	블라드	⑨							12	
	블라드	⑩							3	
	음수전	⑪							1	
	수목보호덮개	⑫							2	
	공원등	⑬							4	
녹지및 기타	소계		125.58							
	녹지및기타		125.58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11.99	22.96				
신설	산책로	산책로	1	3.03~4.73	1.74	5.65	산책로	외부도로	광장	
			2	4.85~5.38	2.02	9.87	산책로	외부도로	광장	
			3	0.9	8.23	7.44	산책로	광장	광장	

토 지 조 서

○사업명 : 응암4동어린이놀이터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 류	
1	은평구 응암4동 751-22	대	165.3	165.3	근린생활 시설	정태석	은평구 역촌동 19-12				
2	은평구 응암4동 751-23	대	155.9	63.5		국					
				92.4	주택	최경희	은평구 응암동 751-23	축산업협동조합 (회곡역지점)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31-6	근저당권 설정	
3	은평구 응암4동 751-28	대	143	71.5	주택	김영식	은평구 응암동 295-10				
				71.5	주택	황해욱	은평구 응암동 296-30				
4	은평구 응암4동 751-29	대	120.7	20.9		안봉용	은평구 응암동 751-29				
				39.6		이순필	은평구 응암동 751-29				
				39.6		정복순	은평구 응암동 751-29				
				20.6		장만식	은평구 응암동 751-29	남대문 세무서 (주)우리은행	중구 회현동 1가 203 (한경센터지점)	압류 가압류	

물 건 조 서

○사업명 : 응암4동어린이놀이터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구역	수량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 류
1	은평구 응암동 751-22	근린생활 시설	세멘블록조/ 세멘외층지붕 23.14㎡	1동	정세희	은평구 역촌동 13-39			
2	은평구 응암동 751-23	주택 및 점포	세멘블록조외층/ 평옥개 122.91㎡	1동	최경희	은평구 응암동 751-23	축산업 협동조합	강서구 등촌동 631-6	근저당권 설 정
3	은평구 응암동 751-28	주택	세멘블록조/ 23.14㎡	1동	김영식	은평구 응암동 295-10			
			세멘조/33㎡	1동	이창환	은평구 증산동 188-9 수진빌라 지하 103호			
4	은평구 응암동 751-29	다세대 주 택	벽돌조 슬래브 2층	1동					
			1층(56.56㎡)		이순필	은평구 응암동 751-29			
			2층(56.56㎡)		정복순	은평구 응암동 751-29			
			지층가호(29.40㎡)		장만식	은평구 응암동 751-29	남대문세무서 (주)우리은행	중구 회현동 1가 203 (한경센터지점)	압 류 가 압 류
			지층나호(29.84㎡)		안봉용	은평구 응암동 751-29			

◎양천구고시 제2005-2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실시계획
인가및시행자지정

-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437(2003. 4. 2)호로 택지개발사업 완료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3동 1294번지 3호 전기공급설비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건축과(☎2650-3390~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3월 17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3동 1294번지 3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 명칭: 신정변전소 건설공사

다. 사업시행 규모

- 사업 부지면적 : 2,203.60㎡
- 건축규모 : 지하3층 지상1층, 연면적 5,195.64㎡
- 건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전기공급설비-변전소)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 성명 : 한국전력공사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05년 4월 일 ~ 2007년 4월 30일

바. 사용 및 수용할 토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3동 1294번지 3호

◎양천구고시 제2005-2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실시계획변경인가

- 1. 건설부고시제138호('77. 7. 9)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55호('79. 2. 5)로 지형도면승인되어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2002-6호(2002. 2. 5)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실시계획인가고시되고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제2003-116(2003.12.3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공원녹지과(☎2650-339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3월 17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사항없음) : 양천구 신정동 산73-4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사항없음)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칼산근린공원조성

다. 사업규모(변경사항없음) : 토지보상 19,47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사항없음)

- 성명 : 서울특별시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변경사항없음) : 인가일로부터 2005.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

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공원녹지과(☎2650-3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변경)

○사업명 : 칼산근린공원조성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지분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11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03-116호(2003.12.30)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사항과 동일내용으로 변경사항 없음									

토지조서(변경)추가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지분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2	신정동 산77-2호	임야	11,411	11,411		이희수	미합중국94114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유리카스트리트 152	-	-	
13	신정동 산91-1호	임야	8,067	8,067		정영현	서울시 중구 쌍림동 22-1호	-	-	

◎동작구고시 제2005-1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시고시 제 54호(1973. 4.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된 동작구 동작동 80-6 ~ 67-2 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을 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토목과(☎820-9904)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3월 17일
 동작구청장

가. 사업명 : 동작동 80-6 ~ 67-2간 도로개설공사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동작동 80-6 ~ 67-2간
- 라.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B= 8m , L= 250m
- 마.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1) 성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2)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47-2
-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 아.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관한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65조 및 99조 규정에의함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동작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47-2
- 사업의 종류 : 동작동 80-6~67-2간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사항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내 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79-46	잡	26	26	도로	이경순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05-7			
2	708-425	천	1,420	717	도로	(국)건설부				
3	72-29	대	2	2	대	오재성	동작구 사당동 72-12			
						김선녀	동작구 사당동 72-12			
4	72-28	대	8	8	대	안종목	동작구 사당동 72-13			
5	72-27	대	2	2	대	조병우	동작구 사당동 72-14	남부농협	서초구 양재동 11-1 (사당지소)	근저당
6	71-60	대	12	12	대	오현아	성동구 금호동1가633 벽산 ④102-2002			
7	71-59	대	7	7	대	권수	동작구 사당동 71-1			
						조연행	동작구 사당동 71-1			
8	71-58	도	4	4	도로	김정인	동작구 사당동 52			
						강민석	동작구 사당동 52			
						강관식	동작구 사당동 52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2가9-1 청담동지점	압류
						강신원	동작구 사당동 52			
9	71-57	대	36	36	대	강문석	성북구 동소문동 6가140			
						한장옥	동작구 사당동 40-5			
						강병석	동작구 사당동 40-5	하나은행	중구 을지로1가101-1 사당동지점	근저당
10	71-56	도	9	9	도로	강정식	동작구 사당동 52			
11	71-55	도	1	1	도로	임만혁	도봉구 방학동 690-60			
12	71-54	대	7	7	대	조남윤	동작구 동작동 100	(국)동작 세무서	영등포구 신길동 476	압류
13	42-37	대	11	11	대	김상전	동작구 사당동 42-3	서울은행	중구남대문 2가10-1 (사당동지점)	근저당
14	70-33	대	66	66	대	구금룡	동작구 사당동 53			
15	70-32	대	1	1	대	권순렬	동작구 사당동 70-4			
16	70-31	대	23	23	대	설명숙	동작구 사당동 70-1			
17	70-35	도	9	9	도로	강덕건	동작구 사당동 48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실재 이용 사항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내 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8	69-18	대	92	'92	도로	주신영 와코루	구로구 가리봉동 345-54	신탁은행	중구 남대문 2가10-1	근저당
								신탁은행	중구 남대문 2가10-1 (신촌지점)	근저당
								신탁은행	중구 남대문 2가10-1 (소공동지점)	근저당
19	708-1117	천	374	374	도로	(국)건설부				
20	42-34	전	4	4	도로	오남탁	성동구 신당동 387-41			
21	42-35	전	4	4	도로	오남탁	성동구 신당동 387-41			
22	42-32	대	2	2	대지	김종찬	강남구 일원동 611-1 공무원 ☎806-812			
23	42-33	대	24	24	대지	김종찬	강남구 일원동 611-1 공무원 ☎806-812			
24	42-36	도	18	18	도로	윤수원	서초구 방배동 329-4			
25	741-4	도	761	355	도로	(국)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동작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47-2
- 사업의 종류 : 노량진동 315-7~314-80간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재이용 사항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내 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80-6	가게	컨테이너	4	컨테이너	함연옥	동작구 사당동 80-6			
2	71-33	주차샷다	철재	1식	주차샷다	오현아	성동구 금호동1가633 벽산 ☎102-2002			
3	69-14	경비실	벽돌	3	경비실	주신영 와코루	구로구 가리봉동 345-54			
		담장	벽돌	1식	담장					

영 업 권 조 서

- 사업시행자 : 동작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47-2
- 사업의 종류 : 노량진동 315-7~314-80간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상호	수량	영업권의 종 류	소유자	
					성명	주소
1	'80-6	동작화원	1	꽃가게	함연옥	동작구 사당동 80-6

◎관악구고시 제2005-13호

2005년 3월 17일

**공용건축물건축협의및도시계획시설(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관 악 구 청 장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82(2004. 9.10) 호로 서울대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고시 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협의 및 도시계획시설(학교)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건축과(☎880-388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사업시행지 : 관악구 신림동 산 56-1 번지 일대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3. 사업의명칭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시설 확충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사업시행 면적 : 3,895,659㎡
 - 나. 사업변경 내역
 - 1) 건물
 - 당초 : 1,017,008.12㎡(191동)
 - 변경 : 1,032,074.40㎡(195동)
 - 2) 변경내용
 - 가) 건물(증축)

구 분	건 축 면 적(㎡)			연 면 적(㎡)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교수아파트(123-1동)	-	1,329.37	1,329.37	-	7,645.08	7,645.08	증축
교수아파트(123-2동)	-	407.10	407.10	-	1,527.95	1,527.95	"
교수아파트(123-3동)	-	792.32	792.32	-	2,992.85	2,992.85	"
교수아파트(123-4동)	-	781.37	781.37	-	2,900.40	2,900.40	"
계	-	3,310.16	3,310.16	-	15,066.28	15,066.28	"

5.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총장 정운찬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2006.12.31

7.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지번·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소재지	지 번	지 목	소유권이외의권리
관악구 신림동 산56-1일대 관악구 봉천동 산4-2일대	좌 동	학교용지	소유자 : 국(교육인적자원부) 재산관리관 : 서울대학교총장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관악구고시 제2005-14호

**도시계획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실시
계획(변경)인가**

1. 건설부고시 제34호('68. 1.15)로 도시
계획시설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69호(1999. 3.17) 및 관악구고시 제17
호(1999. 5. 4)로 공원조성계획(변경)결
정 및 지형도면승인하고, 관악구 공고
제2000-377호(2000.11. 6)로 공람공고,
관악구고시 제2002-54호(2002.10.25)로
실시계획인가 및 제2004-33호(2004. 5.
31)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도시계획
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규정
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이
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5년 3월 17일

관 악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
별시 관악구 봉천11동 산27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도시
계획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낙
성대지구”)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사 업 명	사업종류 및 규모	도시계획시설 결정 근거	지형도면승인 고시 근거
도시계획시설사업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 “낙성대지구”)	계 41,642㎡ - 골프연습장 8,336㎡ (지하1층,지상3층,51타석) - 배드민턴장 617㎡ - 도로 1,956㎡ - 주차장 2,175㎡ - 녹지및기타 28,558㎡	건설교통부고시 제34호('68.1.15)	- 서울특별시고시 제69호('99. 3. 17) - 관악구고시 제17호('99. 5. 4) - 관악구고시 제2000 -377호(2000.11. 6) - 관악구고시 제2002 -54호(2002.10. 25) - 관악구고시 제2003 -78호(2003. 8. 18) - 관악구고시 제2004 -33호(2004. 5. 31)

4. 사업착수 및 준공
 - 변경전 : 인가일로부터 900일
(2002.10.25 ~ 2005. 4.11)
 - 변경후 : 인가일로부터 1,200일
(2002.10.25 ~ 2006. 2. 4)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김홍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28, 미림하이츠 빌라 401호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조서와 소유자등 권리명세서 : 별첨
(변경없음)
7. 관련도면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에 비
치(변경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공원녹
지과(☎880-3906)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서

○토지 조서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합계		46,967	41,642	공동소유자		
1	봉천동 산25	임	6,890	6,890	김홍준	강남구 삼성동 10-28 미림하이츠빌라 401호	
2	" 산26-1	임	1,713	1,713	김계숙	강남구 삼성동 16-2 차관(아)11동 306호	
3	" 산26-10	임	30	30	김희진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15동 601호	
4	" 산27	임	18,257	18,257	김지현	서초구 잠원동 63-2 신반포청구(아)102동307호	
5	" 산28-1	임	7,213	7,213	김형준	종로구 평창동 689-6	
6	" 산29-1	임	652	652	김연준	종로구 평창동 689-6	
7	" 산29-4	임	12,068	6,743	원혜자	뉴욕041831 미합중국 뉴욕주 잭슨하이츠시 37-31-73스트리트11372	
8	" 181-3	전	73	73	김지용	강남구 압구정동 456 현대(아)80동 903호	
9	" 181-9	전	71	71			

○서초구고시 제2005-22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 초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사업의 명칭 : 방배동 대성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915-1번지의외 3필지
 - 정비구역의 면적 : 3,373.4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 : 방배동 대성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 박인평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922-15 힐러리 102호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5. 3. 8.
- 5.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지
 -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 대지면적(3,178.00㎡) 및 지상11/지하1층 아파트 2개동 66세대, 부대·복리시설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64.974㎡(1세대), 76.527㎡(3세대), 84.535㎡(40세대), 97.73㎡(2세대), 129.123㎡(20세대)
 - 다.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 등 : 북측 6m→8m(약 195.40㎡) 확폭
- 6. 관리처분계획인가서 : 생략(별도비치)
 - ※ 관리처분계획인가 관계서류 : 서초구청 건축과(☎ 570-6390~3)에 비치하고 보입니다.

◎송파구고시 제2005-10호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지형도면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58호(2005. 3. 3)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변경 결정된 송파구 잠실동 40번지일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동법률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도시정비과(☎410-338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3월 17일

송 파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지형도면 승인조서

- 구분 : 기정
- 지구명 : 올림픽로 (송파지구)
- 지구의 세분 : 중심지 미관지구
- 위치 : 잠실지구내
- 면적 : 260,500㎡
- 연장(m) : -
- 폭원(m) : 집단
- 최초결정일 : 서울특별시고시 제164호(1982. 4.22)

- 구분 : 변경
- 지구명 : 올림픽로 (송파지구)
- 지구의 세분 : 중심지 미관지구
- 위치 : 잠실지구내
- 면적 : 260,148.3㎡
- 연장(m) : -
- 폭원(m) : 집단
- 최초결정일 : -

- 비고
 - 서울특별시송파구고시 제2004-62호(2004.10. 5)로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변경결정
 - 도로확폭에 따른 미관 지구면적 축소(감351.7㎡)

나.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강동구고시 제2005-1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 2001-178호(2001. 6. 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공고제2005-70호(2005. 2.17)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한 천호동 462-39~480-36간 도로개설공사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

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법률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17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천호동
 462-39 ~ 480-36호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다. 사업의 명칭 : 강동구 천호동 462-39
 ~ 480-36간 도로개설공사

라. 사업의 규모 : 폭 6m, 연장 120m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바.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
 재지·지번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
 소 : 따로붙임

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따로붙임

자. 관계도서 및 서류비치 : 강동구 도시
 계획도로과(☎ 480-1405 ~ 6)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사

○사업명 : 천호동 462-39 ~ 480-36간 도로개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 적(㎡)		지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	천호동 467-60	645	645	도로		재무부	-	-	-	-	
2	천호동 480-42	170	170	도로		서울특별시	-	-	-	-	
3	천호동 467-41	104	104	도로		재무부	-	-	-	-	
4	천호동 472-34	9	9	대지		김용우	서울 송파구 풍납동 57-7				
5	천호동 472-84	5	5	도로	3/4	정경하	서울 노원구 상계동 624 주공(아)1602-407				
					1/4	김성호	서울 성동구 행당동 128-802				
6	천호동 472-37	10	10	대지		정상갑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5-16				
7	천호동 462-40	15	15	대지		한상신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202-702				
8	천호동 467-63	10	10	대지		성우순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9	(주)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당	
9	천호동 472-38	3	3	대지		최금분	서울 금천구 시흥동833-18				

구 공 고

◎성동구공고 제2005-164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을위한열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203호(1999. 7. 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제1999-64호(1999. 9.16)로 지형도면승인된 금호유수지~교통안전회관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을 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2. 건물·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같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건설교통국 토목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3월 17일
성 동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165~금호동1가621간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사업의 명칭 : 금호유수지 ~ 교통안전회관간 도로확장공사
- 다. 사업시행 규모
 - 전체 : 폭25m, 연장1,960m (성동구1,520m, 중구440m)
 - 전회까지 : 폭25m, 연장520m (성동구1, 2차)
 - 금회 : 폭25m, 연장380m(성동구3차)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07.12.31까지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명세 : 별첨
- 사.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생략
- 아. 열람장소 : 성동구청 건설교통국 토목과(☎2286-5768)
- 자. 열람기간 : 공고일다음날부터 20일간

토 지 조 서

○사업명 : 금호유수지~교통안전회관간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명세	성명	주소	
1	금호동1가165-136	대	1	1	신방우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405				
2	금호동1가165-137	대	148	148	최차영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65-56				
3	금호동1가165-138	대	105	105	이중남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65-59				
4	금호동1가165-120	대	16	16	이중남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65-59				
5	금호동1가165-130	대	3	3	성동구					
6	금호동1가165-131	잡종지	1	1	황중서	서울 은평구 구산동 16-62	소유권이전 청구권기등기	주택개량허왕 제2구역1지구 재개발조합	서울 성동구 행당동 317-40	
7	금호동1가165-113	대	14	14	황중서	서울 은평구 구산동 16-62	압류 (세무13410-0526)	고양시 덕양구		
							압류 (세이13410-2632)	서울시 성동구		
8	금호동1가133-10	대	90	90	성동구					
9	금호동1가165-60	대	114	114㎡ × 1.65/114	이중남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65-59				
				114㎡ × 112.35/228	구자은	서울 성동구 응봉동100 대림APT10-1303	근저당권	금호 새마을금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447	
				114㎡ × 112.35/228	이은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65-60	근저당권	금호 새마을금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447	
10	금호동1가165-61	대	117	117	민경옥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65-52				
11	금호동1가165-139	대	2	2	최봉신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65-91				
12	금호동1가164-9	대	19	19㎡ × 34.666/104	전석록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361 지층102호				
				19㎡ × 34.667/104	전순연	서울 성동구 금호1가164-1 101호				
				19㎡ × 34.667/104	이동원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420-5				
13	금호동1가165-45	대	199	199㎡ × 1/4	강덕홍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80-55				
				199㎡ × 1/4	오정자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80-55				
				199㎡ × 2/4	한대식	서울 성동구 행당동 317-719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명세	성명	주소	
14	금호동1가165-140	대	1	1㎡ × 34.666/104	전석록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361 지층102호				
				1㎡ × 34.667/104	전순연	서울 성동구 금호1가164-1 101호				
				1㎡ × 34.667/104	이동원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420-5				
15	금호동1가165-73	대	14	14	황중서	서울 은평구 구산동 16-62				
16	금호동1가164-8	대	8	8	성동구					
17	금호동1가164-10	대	7	7㎡ × 40.81/321	이한우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64-3 지01호				
				7㎡ × 40.81/321	구연자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64-3 지02호				
				7㎡ × 40.81/321	오태순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28-10 성호연립 사-202				
				7㎡ × 40.81/321	이상귀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396-1				
				7㎡ × 40.81/321	곽정민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64-3 2층201호				
				7㎡ × 40.81/321	이정호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32-12				
				7㎡ × 38.07/321	정차엽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32-12				
				7㎡ × 38.07/321	정차엽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32-12				
18	금호동1가167-85	대	1	1	성동구					
19	금호동1가 166-10	대	227	227	최종윤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2가 530				
20	금호동1가 165-141	대	42	42	최종윤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2가 530				
					강대길	서울시 중랑구 묵동161-13	근저당권	행당신용 협동조합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286-30	
21	금호동1가 166-11	대	151	151	강대길	서울시 중랑구 묵동161-13	근저당권	행당신용 협동조합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318-28	
							지상권	행당신용 협동조합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318-28	
22	금호동1가 166-12	대	100	100	박허룡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66-4				
23	금호동1가 166-6	대	1	1	홍주섭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230-5 현대아파트81-706				
24	금호동1가 166-8	대	1	1	강대길	서울시 중랑구 묵동161-13	근저당권	행당신용 협동조합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318-28	
							저당권	행당신용 협동조합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318-28	
25	금호동1가 165-119	대	12	12	강대길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40-246				
26	금호동1가 165-46	대	16	16	장만석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78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명세	성명	
27	금호동1가 168-180	수도 용지	17	17	장만석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78			
28	금호동1가 168-318	수도 용지	37	37	서울 특별시				
29	행당동 347-8		67	67	성동구				
30	금호동1가 168-319	수도 용지	1	1	서울 특별시				
31	금호동1가 168-320	수도 용지	19	19	성동구				
32	금호동1가 168-321	대	266	266	김중구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65 청량리 신현대APT8-506	근저당권 근저당권	(주)국민 은행 남부농업 협동조합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9-1 (마장동지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1-1 (방배역지점)
33	금호동1가168-322	대	238	238㎡ × 26.76/402	송석우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28-4			
				238㎡ × 26.76/402	조영호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479가락시영APT133-406			
				238㎡ × 26.88/402	정근옥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9 주공APT446-201			
				238㎡ × 26.76/402	이승환	경기도 용인시 이등면 어버리 1304-2			
				238㎡ × 26.76/402	이분선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68-40 연희빌라102호			
				238㎡ × 26.88/402	이연배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513 한양APT52-203			
				238㎡ × 26.76/402	이복주	서울시 상봉동 50-40			
				238㎡ × 26.76/402	양준모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68-40 연희빌라 202호			
				238㎡ × 26.88/402	이천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537-14			
				238㎡ × 26.76/402	전응락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68-40			
				238㎡ × 26.76/402	김청남	서울시 성동구금호동1가 168-41연립주택 402			
				238㎡ × 26.88/402	이화용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68-41			
				238㎡ × 26.76/402	오희영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609-1			
				238㎡ × 26.76/402	윤종원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450 시영APT 17-1208			
238㎡ × 26.88/402	김영기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260 고층주공APT808-706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명세	성명	주소	
34	금호동1가168-244	수도용지	5	5	성동구					
35	금호동1가168-277	수도용지	7	7	성동구					
36	금호동1가168-323	수도용지	12	12	성동구					
37	금호동1가168-190	수도용지	5	5	서울특별시					
38	금호동1가168-189	수도용지	3	3	성동구					
39	금호동1가168-203	수도용지	2	2	성동구					
40	금호동1가168-209	수도용지	1	2	성동구					
41	금호동1가 168-303	수도용지	6	6	홍주섭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800 대우아파트 112-1301				
42	금호동1가168-324	수도용지	12	12	성동구					
43	금호동1가168-57	도로	11	11	성동구					
44	금호동1가168-255	대	246	246	홍주섭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800 대우아파트 112-1301				
45	금호동1가168-200	수도용지	7	7	서울특별시					
46	금호동1가168-62	수도용지	40	40	서울특별시					
47	금호동1가710-1	도로	3	3	서울특별시					
48	금호동1가710-2	대	212	212	최요섭	서울시 반포구 반포동 551-44				
49	금호동1가172-3	대	1	1	성동구					
50	금호동1가175-4	대	63	63	성동구					
51	금호동1가175-5	도로	832	832	서울시교육감					
52	금호동1가1350-13	도로	172	172	서울시교육감					
53	금호동1가1350-14	도로	89	89	서울시교육감					
54	금호동1가709	도로	13	13	서울시교육감					
55	금호동1가709-1	대	3	3	서울시교육감					
56	금호동1가707	대	119	119	조병희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707	근저당권	서울측산업 협동조합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31-6 (신일지점)	
57	금호동1가706-1	대	147	147	김용배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2가 868	지상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명세	성명	주소	
58	금호동1가705-1	대	17	17	서병욱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705	지상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	
59	금호동1가705	도로	231	231	성동구					
60	금호동1가617-11	구거	296	296	서울특별시					
61	금호동1가700	도로	40	40	성동구					
62	금호동1가703-2	대	85	85	백지숙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89-73				
63	금호동1가701-1	대	63	63	윤문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동 구미동 212 무지개마을 1209-803				
64	금호동1가702-1	대	79	79	문영식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702	가압류	강간란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294	
							근저당권	행당동신용 협동조합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318-28	
65	금호동1가179-61	도로	375	375	성동구					
66	금호동1가700-1	대	96	96	김정자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74				
67	금호동1가698-2	대	57	57	문홍식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4가 893				
68	금호동1가699-1	대	28	28	홍만식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99				
69	금호동1가694-5	대	110	110	최옥자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94-1				
70	금호동1가694-4	대	69	69	이종삼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94-4				
71	금호동1가696-1	대	14	14	노대성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96				
72	금호동1가694-2	도로	39	39	성동구					
73	금호동1가695-1	대	100	100	김기석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754				
74	금호동1가679-1	도로	910	910	서울시 교육감					
75	금호동1가692-1	대	155	155㎡ × 73/155	최영창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92-1				
				155㎡ × 82/155	문정길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92-1				
76	금호동1가693	대	20	20	서울시 교육감					
77	금호동1가692-3	도로	20	20	성동구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명세	성명	주소	
78	금호동1가691-1	대	4	4	정인선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91				
79	금호동1가692-4	대	77	77	김민경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90				
80	금호동1가690-1	대	2	2	구계철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90				
81	금호동1가687-3	대	48	48	이철훈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88	근저당권	중소기업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논현동지점)	
82	금호동1가685-1	대	36	36	원영희	서울시 중구 신당동 402-12				
83	금호동1가684-1	대	40	40	정덕모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84	가압류	(주)국민 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9-1 (중계본동지점)	
							압류 (정수13410-1459)	성동구		
84	금호동1가683-1	대	79	79	박미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34 쌍용APT101-606	압류 (세일13410-522)	성동구		
85	금호동1가682	도로	3	3	성동구					
86	금호동1가682-1	대	50	50	문종선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82				
87	금호동1가685	도로	40	40	성동구					
88	금호동1가617-14	구거	856	856	서울 특별시					
89	금호동1가179-62	도로	6	6	성동구					
90	금호동1가681-1	대	62	62	황근성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81				
91	금호동1가680-2	대	1	1	김진석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220-88				
92	금호동1가679	대	129	129	김성애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36 신동아아파트702-802				
93	금호동1가680-3	대	15	15	이종호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68				
94	금호동1가669-1	대	8	8㎡ × 3/7	곽외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62-11 두성빌라 비-101	근저당권	(주) 조흥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가14 (성동지점)	
				8㎡ × 1/7	곽윤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62-11 두성빌라 비-101				
				8㎡ × 3/7	곽형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62-11 두성빌라 비-101				

SS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명세	성명	주소	
95	금호동1가676-1	대	44	44	한경수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634				
96	금호동1가675-1	대	35	35	서울시 교육감					
97	금호동1가674	대	43	43	김민경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92-2				
98	금호동1가671	대	17	17㎡ × 3/12	정재금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22-3	근저당권	영등농업 협동조합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72 (강남지소)	
				17㎡ × 2/12	한복경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375-12				
				17㎡ × 3/12	한철이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78-3				
				17㎡ × 2/12	한미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36-54				
				17㎡ × 2/12	한철호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22-3				
99	금호동1가673	대	50	50	최한철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73	근저당권	(주)한빛 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111-1 (금호동지점)	
							지상권	(주)한빛 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111-1 (금호동지점)	
100	금호동1가672	대	13	13	김민경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92-2				
101	금호동1가622-4	대	49	49	최정규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22-1				
102	금호동1가622-5	대	74	74㎡ × 3/12	정재금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22-3	근저당권	영등농업 협동조합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72 (강남지소)	
				74㎡ × 2/12	한복경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375-12				
				74㎡ × 3/12	한철이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78-3				
				74㎡ × 2/12	한미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36-54				
				74㎡ × 2/12	한철호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22-3				
103	금호동1가621-30	대	118	118	김현철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66-4				
104	금호동1가621-31	대	58	58	고정식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21-12				

물 건 조 서

○사업명 : 금호유수지~교통안전회관간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지붕/벽체)	건물 층수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명세	성명	주소	
1	금호동1가 165-56	지하실	슬라브 철근콘크리트	지하	95	권근행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65-56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슬라브 철근콘크리트	1층	95						
		주택	평슬라브/연와조	2층	95						
		주택	평슬라브/연와조	3층	103						
		가건물	삿시/브럭		8						
		가건물	삿시/브럭		3						
		부속건물	평슬라브/연와조	옥탑	21						
		대문		식	1						
		삿시문		식	1						
2	금호동1가 165-59	주택,점포	스라브/브럭	지하	103	이종남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65-59				
		주택,점포	스라브/브럭	1층	76						
		주택	스라브/브럭	2층	80						
		주택	스라브/브럭	3층	85						
		부속건물	삿시/삿시	옥탑	21						
		가건물	스래트/벽돌		17						
		화장실	판넬/판넬		1						
		대문		식	1						
		담장		식	1						
3	금호동1가 165-60	지하실	평슬라브/연와조	지하	80	이은경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65-60	근저당권	금호 새마을금고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2가 447	
		근린생활시설	평슬라브/연와조	1층	73						
		주택	평슬라브/연와조	2층	73						
		부속건물	삿시/삿시	옥탑	20						
		화장실	스라브/브럭		1						
		가건물	스라브/브럭		2						
		대문		식	1						
		담장		식	1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지붕/벽체)	건물 층수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명세	성명	주소	
4	금호동1가 165-61	지하실	평슬라브/연와조	지하	75	민경옥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65-61				
		지하실	평슬라브/연와조	1층	65						
		주택	평슬라브/연와조	2층	73						
		주택	평슬라브/연와조	3층	70						
		부속건물	삿시/삿시	옥탑	15						
		가건물	스라브/브럭		4						
		대문		식	1						
		수목		식	1						
5	금호동1가 165-45	근린생활시설 부품창고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지하	153	강덕홍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80-55				
		수리점 주차장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1층	173						
		근린생활시설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2층	140						
		주택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3층	140						
		부속건물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옥탑	20						
6	금호동1가 164-1 외 1필지	주택	평슬라브/연와조	지하	2	전석록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361 지층102호	근저당권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장항지점)	
		주택	평슬라브/연와조	지하	2	전순연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64-1 / 101호				
		주택	평슬라브/연와조	1층	2	이동원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420-5				
		주택	평슬라브/연와조	1층	2						
		주택	평슬라브/연와조	2층	10						
		대문		식	1						
		정화조		식	1						
		담장		식	1						
7	금호동1가 165-100 외 1필지	점포	평슬라브 세멘벽돌조	지하	156	김환상	서울시 도봉구 창동 350 주공APT 325-302	근저당권	최중윤	충남 서천군 한산면 원산리 178	
		점포	평슬라브 세멘벽돌조	1층	185						
		주택	평슬라브 세멘벽돌조	2층	179						
		주택	평슬라브 세멘벽돌조	3층	167						
		부속건물	평슬라브 세멘벽돌조	옥탑	17						
		가건물	스레트/브럭		10						
		가건물	스레트/브럭		10						
		담장		식	1						
		대문		식	1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지붕/벽체)	건물 층수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명세	성명	주소	
8	금호동1가 166	주택	스레트/브릭	1층	55	강대길	서울시 중랑구 묵2동 235-29				
		주택	기와/브릭	1층	42						
		담장		식	1						
		수목		식	1						
9	금호동1가 166-4 외 1필지	주차장 주택	평슬라브/연와조	지하	67	박허용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66-4				
		주택	평슬라브/연와조	1층	78						
		주택	평슬라브/연와조	2층	78						
		부속건물	평슬라브/연와조	옥탑	13						
		담장		식	1						
		수목		식	1						
10	금호동1가 165-46	주택 점포	목재/벽돌	1층	38	이부선	서울시 노원구 월계929 현대APT102-1805				
11	금호동1가 168-38 외 3필지	주차장 제2중근생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지하2	213	김중구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5 청량리신현대APT 8동506호	근저당권	남부농업 협동조합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1-1 (방배역지점)	
		제2중근생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지하1	213						
		금융업소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1층	140						
		소매점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2층	143						
		교육연구 시설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3층	143						
		교육연구 시설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4층	142						
		교육연구 시설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5층	138						
		계단실 엘리베이터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옥탑	39						
		식	1								
12	금호동1가 168-40	주택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지하	165	송석우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28-4	근저당권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금호동지점)	
						조영호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479가락 시영APT133-406				
						정근욱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9 주공APT446-201				
							근저당권	(주)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9-1 (서울대출실행 센터)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지붕/벽체)	건물 층수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명세	성명	주소		
12	금호동1가 168-40	주택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1층	169	이승환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어비리 1304-2					
						이분선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68-40 연희빌라102호	근저당권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75 (금호동지점)		
						이연배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513 한양APT52-203	근저당권	체이스퀵트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0-2		
		주택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2층	169	이목주	서울시 상봉동 50-40					
						양준모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68-40 연희빌라 202호	근저당권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75 (금호동지점)		
						이천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537-14	전세권 (건물)	강분순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68-40		
		주택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3층	169	전응락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68-40					
						김청남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68-41 연립주택 402					
						이화용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68-41					
		주택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4층	169	오희영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609-1	가등기	김옥희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609-1 한진APT 206-1606		
						윤종원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450 시영APT 17-1208					
						김영기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260고층주공APT808-706					
부속건물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옥탑	5	송석우	상 동							
부속건물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옥탑	14	외14인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지붕/벽체)	건물 층수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의명세	성명	
13	금호동1가 168-55 외 1필지	일반음식점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지하	154	홍주섭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4가 800 대우아파트112-1301			
		소매점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1층	164					
		사무실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2층	163					
		사무실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3층	163					
		주택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4층	163					
		주택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5층	163					
		부속건물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옥탑	27					
14	금호동1가 710	차고, 점포 병원	슬라브 철근콘크리트	지하	187	최요섭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51-44			
		병원	슬라브 철근콘크리트	1층	156					
		병원	슬라브 철근콘크리트	2층	156					
		병원	슬라브 철근콘크리트	옥탑	36					
		차고	슬라브 철근콘크리트		30					
		담장		식	1					
		수목		식	1					
		에어컨		식	1					
		정화조		식	1					
		수도계량기		식	1					
		전기계량기		식	1					
15	금호동1가 707	소매점	평슬라브/연와조	1층	99	조병희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707	근저당권	서울축산업 협동조합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31-6 (신월지점)
		소매점	평슬라브/연와조	2층	80					
		학원	평슬라브/연와조	3층	80					
		주택	평슬라브/연와조	4층	80					
		주택	평슬라브/연와조	5층	80					
		담장		식	1					
		샤시문		식	1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지붕/벽체)	건물 층수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명세	성명	
16	금호동1가 705-1	공장	스레트/브릭	1	23	서병욱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77			
		수목		식	1					
17	금호동1가 706	주택	기와/흙브릭	1	77	김중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886-35			
		주택	기와/흙브릭	1	15					
		화장실	스레트/브릭	1	3					
		담장		식	1					
		대문		식	1					
18	금호동1가 703	주택	기와/세멘벽돌조	1	39	엄준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21 주공APT360-202			
		화장실	스레트/브릭	1	3					
		창고	스라브/브릭	1	6					
		창고	스라브/브릭	1	6					
19	금호동1가 701-1	주택	슬라브/연외조	지하	43	윤문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12 무지개마을 1209-803			
		미장원	슬라브/연외조	1	46					
		주택	슬라브/연외조	2	50					
		대문		식	1					
		수목		식	1					
20	금호동1가 702	주택	평슬라브/연외조	1	49	문영식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702	가압류	강간란	서울시 금호동 1가 294
		주택	평슬라브/연외조	2	49					
		주택	평슬라브/연외조	3	49					
		부속건물	평슬라브/연외조	옥탑	8					
		보일러실	평슬라브/연외조	지하	66					
		창고	샷시/브릭		6					
		담장		식	1					
21	금호동1가 700-1	주택	슬라브/연외조	1	76	김지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248 미성APT7-1103			
		주택	슬라브/연외조	2	80					
		창고	스라브/브릭		5					
		담장		식	1					
		대문		식	1					
		수목		식	1					
22	금호동1가 694-1	주택	평스라브/연외조	1	76	최옥자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94-1			
		주택	평스라브/연외조	2	71					
		주택	평스라브/연외조	3	68					
		대문		식	1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지붕/벽체)	건물 층수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명세	성명	
23	금호동1가 696	주택	평스타브/조적조	지하	26	노대성	서울시 성동구금호동1가 696			
		주택	평스타브/조적조	1	28					
		주택	평스타브/조적조	2	26					
24	금호동1가 694-4	주택	슬라브/연와조	1	52	이중삼	서울시 성동구금호동1가 694-4			
		주택	슬라브/연와조	2	52					
		창고	스레트/브릭		4					
25	금호동1가 695	주택	슬라브/연와조	지하	63	나운호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60치현마을 서광 APT 105-1201	근저당권	이오례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3가 74
		주택	슬라브/연와조	1	71					
		주택	슬라브/연와조	2	71					
		부속건물	삿시/삿시	옥탑	5					
		부속건물	스라브/브릭	옥탑	5					
		창고	스레트/브릭		5					
		담장		식	1					
		대문		식	1					
샤시문		식	1							
26	금호동1가 692-1	점포,주택	슬라브 세멘블럭조	1	61	최영창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92-1			
		주택	세멘기와 세멘블럭조	2	45					
		화장실	스레트/브릭		3					
		화장실	스레트/브릭		3					
27	금호동1가 692-1	주택	와즙/흙브릭	1	69	문정길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92-1			
		창고	스레트/합판		4					
		창고	기와/브릭		4					
		대문		식	1					
28	금호동1가 692-2	주택	기와/브릭	1	55	김민경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92-2			
		대문		식	1					
		담장		식	1					
29	금호동1가 687-2	주택	세멘기와 연와조	1	42	이철훈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88			
		담장		식	1					
		대문		식	1					
		수목		식	1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지붕/벽체)	건물 층수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명세	성명	
30	금호동1가 684 외 1필지	주택	슬라브 세멘트벽돌조	1	66	원연희	서울시 중구 신당동 402-12			
		주택	슬라브 세멘트벽돌조	2	44					
		창고	슬라브/브릭		2					
		창고, 화장실	슬라브/브릭		2					
		창고			2					
		담장		식	1					
31	금호동1가 683	주택	세멘기와 목조	1	21	박건순	금호동1가 683			
32	금호동1가 684-1	주택	슬라브 세멘트벽돌조	1	77	정덕모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513-6	가압류	국민은행 성동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중계본동지점)
		대문		식	1			압류(정수 13410-1459)		
33	금호동1가 682	주택	세멘트외죽 연와조	1	47	문종선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82			
		화장실	스라브/브릭		5					
		창고	스레트/브릭		15					
		대문		식	1					
34	금호동1가 683	주택	기와/브릭	1	37	이상준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3-9 다성그랜드빌202			
		창고, 화장실	스레트/브릭		15					
		화장실	스레트/브릭		2					
35	금호동1가 681	주택	스라브/브릭	1	43	황근성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81			
		주택	스레트/브릭	2	24					
		화장실	스라브/브릭		2					
		대문		식	1					
		담장		식	1					
36	금호동1가 679	주택	세멘기와 세멘트벽돌조	1	103	김성애	서울 강남구 수서동 736 신동아APT 702-802			
		창고	스라브/브릭		22					
		창고	스레트/스레트		3					
		담장		식	1					
		대문		식	1					
		수목		식	1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지붕/벽체)	건물 층수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명세	성명	
37	금호동1가 676	주택	기와/브릭	1	30	한경수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76			
		화장실	스라브/브릭		4					
		담장		식	1					
		정화조		식	1					
		수도		식	1					
		보일러		식	1					
		전기계량기		식	1					
38	금호동1가 674	주택	아스팔트상급/브릭	1	83	입동표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74			
		화장실	판넬/브릭		3					
39	금호동1가 622-1	주택	스레트즙 세멘벽돌조	1	20	최정규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22-1			
		창고	스레트/브릭		6					
		담장		식	1					
		굴뚝		식	1					
		수도계량기		식	1					
		수목		식	1					
40	금호동1가 673	주택	기와/목조	1	47	최한철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73			
		화장실	스레트/브릭		2					
		대문		식	1					
		담장		식	1					
41	금호동1가 672	주택	스라브/브릭	지하	16	정이순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72			
		주택	기와/브릭	1	47					
		화장실	스라브/브릭		1					
		화장실	스라브/브릭		4					
		대문		식	1					
42	금호동1가 622-3 외 1필지	주택	세멘기와 세멘블럭조	1	53	정재금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622-3	근저당권	영동농업 협동조합	서초구 양재동 372 (강남지소)
		창고	기와/브릭		13	한복경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375-12			
		창고	스라브/브릭		8	한철이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78-3			
		수도		식	1	한미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36-54			
		보일러		식	1	한철호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22-3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지붕/벽체)	건물 층수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명세	성명	
43	금호동1가 621-18	소매점	콘크리트슬라브 철근콘크리트	1	74	이종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510 한양APT81-202			
		사무실	콘크리트슬라브 철근콘크리트	2	74					
		주택	콘크리트슬라브 철근콘크리트	3	74					
		주택	콘크리트슬라브 철근콘크리트	4	72					
		부속건물	콘크리트슬라브 철근콘크리트	옥탑	12					
		창고	삿시/삿시		9					
44	금호동1가 621-12	주택	세멘기와/연와조	1	36	고정식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21-12			
		주택	세멘기와/연와조	2	30					
		보일러실	스라브/브릭		13					
		담장		식	1					
		수목		식	1					
		수도계량기		식	1					
		수도		식	1					
		보일러		식	1					
		에어콘		식	1					
정화조		식	1							
45	금호동1가 698 의 1필지	주택	슬라브/연와조	지하	59	문홍식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698			
		보일러실								
		주택	슬라브/연와조	1	66					
		주택	슬라브/연와조	2	63					
		부속건물	슬라브/연와조	옥탑	39					

◎강북구공고 제2005-14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
한공람

1. 건설부고시 제1142호(1964.10.1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5-13호(2005. 2. 25)로 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미아3동 한빛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을 시행코자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공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공원 녹지과(☎901-6395~8)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주민에게 공람공고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3월 17일
 강 북 구 청 장

- 가. 사업대상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3동 222-20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한빛어린이공원)사업

2) 사업명칭 : 한빛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다. 사업면적 및 내용
 1) 면적 : 1,192.1㎡

2) 사업내용 : 별첨
 라. 사업시행자 : 강북구청장
 마.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2005.12.31

도시계획시설(한빛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총괄표(위치:강북구 미아3동 220-20)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192.10	1,192.10	2.00	20.24	20.24	14	1,192.10	1,192.10				15	
기 반 시 설	소 계	781.92	781.92				413.30	413.30					감 356.36㎡
	도 로	-	-				103.00	103.00					
	광 장	781.92	781.92				310.30	310.30					
조 경 시 설	39.49	39.49				558.80	558.80					증 519.31㎡	
휴 양 시 설	125.45	125.45				11					7	감 125.45㎡	
유 회 시 설	225.00	225.00				1	220.00	220.00			2	감 5㎡	
운 동 시 설											3		
교 양 시 설													
편 익 시 설	13.50	13.50	1	13.50	13.50		-	-					감 13.50㎡
관 리 시 설	6.74	6.74	1	6.74	6.74	2					3	감 6.74㎡	
녹 지 및 기타	-	-					-	-					

나. 시설조서(변경결정)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공작물 (기)	변 경 후								공작물 (기)	비 고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 면적	시설 면적					바닥 면적	시설 면적											
합	계			1,192.10	1,192.10							1,192.10	1,192.10							
기 반 시 설	소 계			781.92	781.92							413.30	413.30							
	도 로											103.00	103.00							
	광 장	가	2개소	781.92	781.92					가	310.30	310.30								
		가1		571.88	571.88															
		가2		210.04	210.04															
조 경 시 설	소 계			39.49	39.49							558.80	558.80							
	화 단			39.49	39.49							558.80	558.80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공작물 (기)	변 경 후							공작물 (기)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다 면적								시설면 적			바다 면적	시설 면적
휴양 시설	소 계			125.45	125.45				11								7			
	휴게소	나		125.45	125.45															
	파고라	㉔							1	㉔							1			
	등위자	㉕							4											
	평위자	㉖							6	㉖							4			
	원형 의자									㉗								1		
	앉음벽									㉘								1		
유희 시설	소 계			225.00	225.00				1		220.00	220.00					2			
	어린이 놀이터	다		225.00	225.00					나	220.00	220.00								
	조합늘 이대	㉙							1	㉙							1			
	그네									㉚							1			
운동 시설	소 계																3			
	허리 틀리기									㉛							1			
	윗몸일 으키기									㉜							1			
	등받기									㉝							1			
교양 시설	소 계																			
편익 시설	소 계			13.50	13.50			13.50	13.50											
	화장실	1		13.50	13.50	세멘 벽돌조		13.50	13.50											
관리 시설	소 계			6.74	6.74			6.74	6.74	2							3			
	관리실	2		6.74	6.74	연와조		6.74	6.74											
	안내관	㉞							1	㉞							1			
	블라드	㉟							1	㉟							2			
녹지 및 기타	소 계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34	103				
신설	산책로		1	4	7	28	산책로	주진입구	화단	
			2	3	15	45	산책로	부진입구	화단	
			3	2.5	12	30	산책로	주진입구	화단	

물 건 조 서

연번	위치	층별	구조	용도	면적(m ²)	소유권		비고
						주소	성명	
1	미아동 222-20	1층	연와조	관리실	6.74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2-59	강북구청장	거주자 세대주 (최영두)
2	"	"	세멘벽돌조	화장실	13.5	"	"	공람기간중 화장실 존재 의견수렴

⊙은평구공고 제2005-17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인가열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236호(1976. 9.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지적승인된 “불광동296의7~329의15간”,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1990.10.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4호(1992. 3.14)로 지적승인된 “불광동329의18~331의113간”도로개설공사와 서울특별시고시 제385호(1977.10.31)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지적승인된 “불광동291의75~295의15간”도로개설공사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시보 및 구보에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공고일로 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이며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 열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용된 토지 및 물건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미수령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2) 사업의 명칭 : 불광동296의7~329의15간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
- 3) 사업의 위치 : 불광동 296의7~329의15간, 불광동329의18~331의113간 불광동291의75~295의15간
- 4) 사업규모 : 폭 6m, 연장 490m

나.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주소 : 은평구 녹번동 84번지
- 2) 성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다.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4개월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지번·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 조서 참조
 마.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4조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 조서 참조

바.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에 의함
 사.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토목과
 아.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자. 기타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토목과(☎ 02-350-35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명 : 불광동296의7~329의15간의 2개소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자번	지목	지적 (㎡)	실제 이용 상황	편입 면적 (㎡)	소유자 지 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1	불광동	330-61	대	34	도로	34	1/2	은평구 구산동10-16	강수열				
							1/2	은평구 응암동277-18	임동택				
2	불광동	329-48	도로	7	도로	7	1	은평구 불광동329-6	백향선				
3	불광동	329-24	대	321	도로	49	1	은평구 불광동329-24 3층	권용경	은평구 불광동281-7	서울은평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4	불광동	329-25	대	317	도로	37	1	은평구 불광동329-25	김동일				
5	불광동	329-26	대	271	도로	55	1/2	은평구 신사동30-4 대진월드빌 에이-301	권용만				
							1/2	은평구 신사동30-4 대진월드빌 에이-301	이정순				
6	불광동	329-56	대	33	도로	3	1	은평구 역촌동11-54 백합연립101호	유문녀				
7	불광동	329-47	도로	17	도로	17	1	은평구 갈현동485-10	홍차식				
8	불광동	329-57	대	69	도로	69	1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726 신원당마을801동704호	김영우				
9	불광동	329-10	대	377	도로	79	1	은평구 불광동329-10 102호	이영자				
10	불광동	329-7	대	327	도로	83	1	은평구 불광동329-7	장채구	중구 충정로1가75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근저당권	
11	불광동	329-51	대	5	도로	5	1		은평구				
12	불광동	329-52	도로	150	도로	150	1		은평구				
13	불광동	330-58	도로	59	도로	59	1		은평구				
14	불광동	330-18	도로	1,685	도로	101	1	중로구 창성동23-13	이우영		서울특별시	압류	
											중로구 관철동43-8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실제 이용 상황	편입 면적 (㎡)	소유자 지 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15	불광동	330-55	대	55	도로	47	1/4	은평구 녹번동29-131	박운배				
							1/4	은평구 대조동48-80	김경문				
							1/4	은평구 대조동48-80	김경의				
							1/4	은평구 갈현동502-4	강경환				
16	불광동	329-14	도로	1,392	도로	743	1	마포구 아현동570-44	이성용	종로구 관철동43-8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	
17	불광동	330-25	대	281	대	8	1	은평구 불광동330-25	홍순곤	중구 태평로2가 120(연신내지점)	신한은행	근저당권	
18	불광동	329-13	대	344	대	13	1	은평구 불광동329-13	신진철	중구 을지로2가 181(연신내지점)	한국외환은행	근저당권	
19	불광동	329-38	도로	33	도로	32	1	은평구 불광동329-18	장한모				
20	불광동	330-33	도로	43	도로	30	1		은평구				
21	불광동	329-15	대	307	대	152	1	은평구 불광동329-15	김재현				
22	불광동	329-16	대	317	대	37	29.54 /317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신리281 해송마을3자아파트303-	오인자				
							28.17 /317	은평구 불광동329-16 대통령빌라102호	양학수	은평구 응암동397-95	서부농업협동조합 (연서지소)	근저당권	
							33.02 /317	은평구 불광동329-16 대통령빌라103호	김형기 김명희				
							28.05 /317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량동742삼정(아)203-102	구경자				
							28.17 /317	강서구 가양동106-4	대룡산업 개발(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압류	
							33.02 /317	영등포구 도림동90-4	구춘서				
							43.33 /317	은평구 불광동353-77	장쌍심	은평구 응암동397-95	서부농업협동조합 (연서지소)		
							35.99 /317	은평구 불광동329-16 대통령빌라302호	정구광				
							29.54 /317	은평구 불광동329-16 대통령빌라비01호	오봉근	강서구 방화동 829-3	강서농업협동조합 (양천지점)		
28.17 /317	은평구 불광동329-16 지하2층	양영조	영등포구 양평동1가216-2	양평동 새마을금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실제 이용 상황	편입 면적 (㎡)	소유자 지 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23	불광동	329-21	대	888	도로	89	46.805 /888	은평구 불광동329-21 청우브이아이피맨션101	권홍범	종로구 공평동100	제일은행 (개인여신티)	근저당권	
							48.135 /888	은평구 불광동329-21 청우브이아이피맨션102	김정수	강남구 역삼동 647-9	평화은행 (은평서지점)	근저당권	
							47.948 /888	은평구 불광동329-21 청우브이아이피맨션103	박종부	영등포구 여의도동36-3	한국주택은행 (역촌동지원센터)	근저당권	
							48.203 /888	은평구 불광동329-21 청우브이아이피맨션104	복창순	중구 회현동1가 203	한빛은행 (봉일천지점)	근저당권	
							46.805 /888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38-9로얄빌라2-202	김영수		은평구	압류	
										중구 을지로2가181	한국외환은행 (미아동지점)	근저당권	
										광진구 광장동396-13 현대아피스302	임영택	근저당권	
							48.135 /888	은평구 불광동329-21 청우브이아이피맨션202	김길웅	중구 남대문로2가9-1	국민은행 (연서지점)	근저당권	
							47.948 /888	은평구 불광동329-21 청우브이아이피맨션203	권연식		동대구세무서	압류	
											은평구	압류	
										대구 중구동인동 3가271-145 성원상사내	김병성	가압류	
								중구 남대문로2가9-1	국민은행 (마포지점)	근저당권			
48.203 /888	경기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66	김영례											
46.805 /888	은평구 불광동329-21 청우브이아이피맨션301	이상용	영등포구 여의도동36-3	한국주택은행 (역촌동센터)	근저당권								
48.135 /888	은평구 불광동329-21 청우브이아이피맨션302	정금숙	영등포구 여의도동36-3	한국주택은행 (연신내지점)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실제 이용 상황	편입 면적 (㎡)	소유자 지 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23	불광동	329-21	대	888	도로	89	47.948 /888	은평구 불광동329-21 청우브이아이피맨션303	박종현 최현자				
							48.203 /888	은평구 불광동329-21 청우브이아이피맨션304	임순자				
							43.246 /888	은평구 불광동329-21 청우브이아이피맨션401	박만임	마포구 공덕동254-5	신용보증기금 (증부지점)	근저당권	
							43.075 /888	은평구 불광동329-21 청우브이아이피맨션402	김정희				
							41.5 /888	은평구 대조동28-24 다가구302	변순옥				
							44.275 /888	은평구 불광동329-21 청우브이아이피맨션404	이영주				
							46.548 /888	은평구 불광동329-21 청우브이아이피맨션비101	장평웅 유방숙				
							48.135 /888	은평구 불광동329-21 청우브이아이피맨션비102	석상갑	중구 남대문로2가 9-1	국민은행 (연신내지점)	근저당권	
47.948 /888	은평구 불광동291-93	강수길	중구 태평로2가120	신한은행 (연신내지점)	근저당권								
24	불광동	329-17	대	353	대	20	1	은평구 불광동329-17	박태화	은평구 응암동397-95	서부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25	불광동	291-256	도로	231	도로	231	1		서울특별시				
26	불광동	290-82	도로	472	도로	472	1		은평구청				
27	불광동	295-62	도로	254	도로	254	1		은평구청				
28	불광동	296-18	대	56	도로	56	1		은평구청				
29	불광동	330-59	도로	73	도로	73	1		재정경제원				
30	불광동	295-71	대	26	도로	26	1		서울특별시				
31	불광동	295-65	도로	159	도로	159	1		서울특별시				

물 건 조 서

○사업명 : 불광동296의7~329의 15간의 2개소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1	불광동 330-25	건물 주차장 계단 대문 담장 나무 축대	스테인레스 소나무외	7㎡ 19㎡ 1식 1식 1식 10주 1식		홍순곤	불광동330-25	
2	불광동 329-6	주차장 대문 담장 나무 축대	황동철문 소나무외	6㎡ 1식 1식 20주 1식		조정숙 황혜림 황혜인 황운상	불광동329-6	
3	불광동 329-10	건물(1,2,3층) 담장		6㎡ 1식		이영자	불광동329-10 102호	
4	불광동 331-27	학교수위실		7㎡		학교법인 은덕학원	은평구 불광동331-27	
5	불광동 329-2	건물 (지.1.2.3.4) 옥탑 대문 담장		각3㎡ 1㎡ 1식 1식		이은주 김향미 박혁성 박민수	양천구 신월동543-1 한미맨션402 마포구 상암동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2-3블럭 상암월드컵아파트3단지301-104 양천구 신정동1283 푸른마을아파트305-501 양천구 신정동1295-4 목동2차래미안아파트102-202	
6	불광동 330-37	대문 담장		1식 1식		김영채	도봉구 방학동672-5	
7	불광동 330-4	건물(지.1,2층) 베란다(지.1,2층) 건물(지.1,2층) 베란다(지.1,2층) 대문 담장		5㎡ 6㎡ 7㎡ 4㎡ 1식 1식		김현순 이수행 이혜신 서순자 이상현 송진화	녹번동4-227 불광동330-4 지층 나호 불광동330-4 광진구 구의동221-2 불광동330-4 지층 가호 성동구 하왕십리동1058 극동미래주103-1203	
8	불광동 330-5	대문 담장		1식 1식		문대득	경기 양주군 광적면 광석리471	
						최남준	은평구 불광동330-5 무지개빌라102호	
						연인자	불광동330-5 제2층 제201호	
						홍원수	불광동330-5 무지개빌라 202호	
						홍근종	불광동330-5 무지개빌라 301호	
						김진구	불광동330-5 무지개빌라 302호	
						노영상	불광동330-5 무지개빌라 지층1호	
박병철	불광동330-5 무지개빌라 지층2호							

◎금천구공고 제2005-100호

도시계획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독산·난곡지구”)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

1. 건설교통부고시 제34호(68. 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제 2002-43호(2002. 2.22)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되고, 금천구고시 제2002-8호(2002. 3. 9)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승인된 우리구 관악산 도시자연공원(독산·난곡지구)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 하고자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을 열람공고 합니다.
3.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시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열람장소 : 금천구청 공원녹지과

(☎890-2395~7)

2005년 3월 17일

금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산89-7번지 외 2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관악산도시자연공원“독산·난곡지구”)

다. 면적 : 7,650㎡

라. 사업내용 : 공원조성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바. 사업착수·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별첨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소재지	지목	지적 (㎡)	수용할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종류	비고
					성 명	공유지분	주 소		
계			7,650	7,650					
1	금천구 시흥동 산89-7	임야	4,437	4,437	문선오	4290분의 359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4-2(4층)		
					구자선	4290분의 69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광장이파트 7-403		
2	금천구 시흥동 산89-8	임야	2,122	2,122	김종진	140분의 16.25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89-6		
					강명구	140분의 16.25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86-4		
					정준호	140분의 32.5중 5분의 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04 석수빌라 2-115		
					정만호	140분의 32.5 중 5분의 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04 석수빌라 2-315	압류 관리자:금천구 세무1과	
					정창호	140분의 32.5 중 5분의 1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15 우성7차아파트 111동 1206호		
					정정숙	140분의 32.5 중 5분의 1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140 독산동중앙하이츠빌 103-1101		
					정정순	140분의 32.5 중 5분의 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45-37		
					재단법인 한국기독교 교회복지원	140분의 8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15 현대빌딩 3층		
					김동용	140분의 3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3-32		
					최숙련	140분의 32 중 11분의 3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1-5 수리아파트 803동 1001호		
					원은숙	140분의 32 중 11분의 2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26-1 대우로얄빌라트 1-602		
					원인상	140분의 32 중 11분의 4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7 계룡아파트 831동 502호		
					원효상	140분의 32 중 11분의 2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264 반포아파트 73동 506호		
					노영숙	140분의 3 중 7분의 3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182		
김원재	140분의 3 중 7분의 2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73 삼성빌라 4동 304호							
김훈재	140분의 3 중 7분의 2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182							
1	금천구 시흥동 산89-5	임야	1,091	1,091	장필동	3분의1 중 5분의1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559 평화아파트 A동 806호		
					권영숙	3분의1 중 5분의1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559 평화아파트 A동 806호		
					정의승	3분의1 중 5분의1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559 평화아파트 A동 806호		
					장광림	3분의1 중 5분의1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559 평화아파트 A동 806호		
					장유덕	12분의6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30-2 삼호가든맨션 5동 409호		
					장광남	12분의2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4-8 목련아파트 710동 302호		
장윤숙	3분의1 중 5분의1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4-8 목련아파트 710동 302호							

시 설 조 서

구 분	시 설 명	수 량	단 위	비 고
기반조성	지반정비	1	식	
주요시설	다목적광장	1	식	
운동시설	배드민턴장 등	1	식	
수목식재	소나무 등 15종	약 3,000	주	
시 설 물	원형스텐드, 의자 등	1	식	
기 타	산책로	1	식	

사업소 고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고시

제2005-4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17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 허가 받은자
 - 성명 : 한국수상레저 안전연합회 서울 지부장 류진수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1058-1 동부A 102-1302
- 허가점용(사용)개요
 - 하천명 : 한강
(성산대교에서가양대교사이)
 - 점용(사용)면적 : 모타보트3척
 - 점용목적 : 수상레저 사업용 선박운항
 - 점용기간 : 2005. 3.11 ~ 2005.12.31
- 허가연월일 : 2005. 3.10

◎영등포소방서고시 제2005-3호

소방시설업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영 등 포 소 방 서 장

- 등록번호 : 제영등포 2005-1호
- 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상호 : 주식회사 설비인
- 대표자(생년월일) : 오승일(1961.10.10)

- 법인등록번호 : 110111-3146978
-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88-6 라이너빌딩5층
- 등록일자 : 2005. 3. 8.
- 등록번호 : 제영등포 2005-2호
- 업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전기)
- 상호 : 주식회사 서울건축종합 건축사 사무소
- 대표자(생년월일) :
최규설(1951. 2. 1)
김성대(1953.12.15)
정운주(1954. 6.21)
- 법인등록번호 : 110111-0217764
-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 등록일자 : 2005. 3. 8.

사업소 공고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공고

제2005-가-2호

도시공원시설(천호동공원전시관)관리위탁

도시공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탁하였기에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장

○관리위탁내용

가. 공원명 : 천호동공원(도시근린공원)

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60

다. 시설명 : 천호동공원 전시관

라. 면적 : 1층 336.52㎡ 중 22.23㎡

마. 위탁기간 :

2005. 4. 1 ~ 2006. 3. 31(1년간)

바. 수탁자 : 강동구 길1동 391-14

(사) 한국민족문화사업회 대표이사
류중석

○서울시립대학교공고 제2005-4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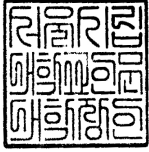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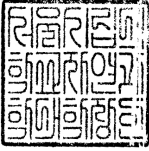
공인신조등록및폐기

국립 및 공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교의 공인을 교부 및 폐기하고, 동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시립대학교총장

1. 공인교부사유: 서울시립대학교 학칙개정(2004.11.29 규정 제675호, 시행일 2005. 3. 1)으로 문리과대학이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으로 분리됨에 따라 대학폐지 및 신설
2. 신조공인 내용

공인종류	공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최초사용일자
직인	서울시립대학교 인문대학장인	한글전서체 (정방형) 2.7cm×2.7cm		2005.3.1
직인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인	한글전서체 (정방형) 2.7cm×2.7cm		2005.3.1

3. 폐기공인 내역

공인종류	공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폐기일자
직인	서울시립대학교 문리과대학장인	한글전서체 (정방형) 2.7cm×2.7cm		2005.3.1

◎서울시립미술관공고 제2005-3호

소장작품구입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소장작품 구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작품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

1. 구입대상작품

- (1) 한국현대미술의 전개 과정 중 주요한 사조, 운동, 경향에 지대한 역할을 한 미술사의 주요대표 작품
- (2) 2005년도 시립미술관 기획전 출품작 (예정작 포함) 중 우수작품
- (3) 한국미술사의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작가들의 초기작품 수집으로 주요작가에 대한 시기별, 매체별, 양식별 대표작
- (4) 역량있는 신인과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청년작가의 작품
- (5) 해외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주요 외국작가의 작품
- (6) 근현대 서울의 문화적, 역사적 컨텍스트를 담고 있는 다큐먼트 사진과 이와 연계된 한국사진사의 주요 도시아카이브 사진

2. 참가자격: 작가, 작품소장자, 화랑관련자, 작품 매매업자 및 법인 등

3. 신청기간: 2005년 4월 4일부터 2005년 4월 9일(10:00~17:00)까지

※ 4월 5일(화)은 제외

※ 신청기간 이 외 접수 불가, 우편접수의 경우 당일 소인까지 유효

4. 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5. 신청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37 서울시립미술관 수집보존과

6. 신청서류

가. 작품매도신청서 (소정양식: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음) 1통

- 나.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증사본 1통
- 다. 작품 중계업자나 화랑주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라. 작품 칼라사진(10×15cm) 각 2매
- 마. 작품 이미지 파일(jpg) 1개 (www.webhard.co.kr/ID-hjh0713, PW-a123)
- 바. 작품 슬라이드(120mm) 1매
- 사.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자료 (작품의 전시내역, 전시도록, 작가이력 등)

7. 작품접수

신청서류 및 작품사진을 검토한 후 평가대상 작품으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지하며, 작품 접수는 시립미술관 수집 절차에 의함

8. 구입작품선정

서울시립미술관 작품수집추천회의 및 가격평가위원회,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평가에 의함

9. 가격평가: 가격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함

10. 구입결정: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매도희망자와 작품매매약정을 체결하되 구입가격은 가격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11. 소유권이전: 작품매매약정 체결 후 작품의 미술관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작품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이전됨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미술관 수집보존과(☎02-2124-89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소방서공고 제2005-6호

소방시설업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성 동 소 방 서 장

- 등록번호 : 제 성동2005-8호
- 등록일자 : 2005. 3. 9
- 업종 :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 상호 : (주)건국이엔아이
- 대표자 : 박정렬
- 영업소재지 : 서울 성동구 송정동 87-15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동소방서 예방과(☎ 02-452-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랑소방서공고 제2005-5호

소방시설업신규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 등록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중 랑 소 방 서 장

- 등록번호 : 제중랑 2005-2호
- 업종 :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 상호 : 주식회사 대현방재 엔지니어링
- 대표자 : 윤중희
- 주민등록번호 : 680923-#####
- 영업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13-81 혜남빌딩4층
- 등록일자 : 2005. 3.10

◎성북소방서공고 제2005-1호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성 북 소 방 서 장

- 등록번호 : 제서울성북 2005-1호
- 업종 : 소방시설관리유지업
- 상호 : 오성방재공영(주)
- 대표자 : 이충희
- 생년월일 : 1954. 5.20
- 법인등록번호 : 110111-0574726
-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46-118
- 등록일자 : 2005. 3. 9

◎마포소방서공고 제2005-7호

소방시설업신규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7일

마 포 소 방 서 장

1. 등록번호 : 제마포2005-3호
2. 업종(등급 및 분야)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3. 상호 : 휴즈어소웨이즈코리아 주식회사
4. 대표자 : 철우 스킷 정
5. 법인등록번호 : 110111-3158121
6.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0-1
7. 등록일자 : 2005년 3월 5일

◎마포소방서공고 제2005-8호

소방시설업신규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7일

마 포 소 방 서 장

1. 등록번호 : 제마포2005-4호

- 2. 업종(등급 및 분야)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3. 상호 : 주식회사 바라이엔지
- 4. 대표자 : 최봉호
- 5. 법인등록번호 : 110111-2096554
- 6.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10-13 한성빌딩 3층 2호
- 7. 등록일자 : 2005년 03월 10일

◎서초소방서공고 제2005-13호

소방시설업신규등록

소방시설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 초 소 방 서 장

- 등록번호 : 제서초 2005-11호
- 업종(분야) :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 상호 : 석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법인등록번호 : 110111-0986012
- 대표자 : 김윤석
- 주민등록번호 : 500415-1*****
- 영업소재지 : 서울 서초구 양재동 8-34
- 등록일자 : 2005. 3. 9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초소방서 예방과(☎02-594-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4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성명 : 서울특별시장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37번지 일원(광진교 남단)
 - 면적 : 5.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광진교 남단 연결램프 건설 기본설계용역을 위한 지반조사
 - 개요 : 시추공 4개소
5. 점용(공사)기간 : 2005. 3.10~2005. 4. 9
(점용기간과 동일)

◎국방부고시 제2004-9-1호

변경고시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시보 제2569호('04.7.10), 국방부 고시 제2004-9호
2. 위 관련 국방부 고시 제2004-9호의 고시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5년 3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시행자 : 국군체육부대장
2.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3. 사업의 개요 : '04년 군사용 사유지 토지매수
4. 시행기간 : '04. 7. 5~ '05.12.31
5. 사업시행청과 그 주소
 - 가. 시 행 청 : 국군체육부대
 - 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창곡동 사서함 122-16
 - ☎ (02) 3400-6081
6. 토지의 세목 :
 - 변경전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산228-1 외 1필지 6,383㎡
 - 변경후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산228-50 번지의 1필지 5,463㎡(변경토지 세목조서 및 변경물건조서 별첨)

변경토지세목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목	공부면적 (당초면적)	편입면적 (당초면적)	현실 이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관리종류 및 내용	
								주소	성명	관리명	관계인
계		2필지		5.463 (109,707)	5.463㎡ (6.383㎡)						
1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산228-50 (산228-1)	임야	1,200㎡ (69,666㎡)	1,200㎡ (1,200㎡)	임야 및 건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저축, 일부학교, 보전임지(공익), 허가구역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126	학교법인 정의학원 (공유자지분 69,666분의 51,419)	푸른동산 지분 가압류 (결정2000 카합1731)	문화 재청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6	재단법인 태능푸른동산 (공유자지분 69,666분의 18,247)	푸른동산 지분 압류 (징세46100- 8797)	도봉 세무서
										푸른동산 지분 압류 (세일13410-3120)	노원구 세무1과
										푸른동산 지분 가압류 (결정2003 카단19862)	이용대
2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산211-15 (산211-5)	임야	4,263㎡ (40,041㎡)	4,263㎡ (5,183㎡)	임야 및 건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내, 일부군사시설 보호구역, 보전임지(공익), 허가구역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11동 701호	박순태	압류 (징세46100- 5681)	강남 세무서

※ 1번(산228-1번지에서 분할 → 산228-50) : 공부면적변경

※ 2번(산211-5번지에서 분할 → 산211-15) : 공부면적변경 및 매수면적 920㎡ 감소 및 지상권 말소

변경물건조서

일련 번호	물건의 소재지	지 번 (당초)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R : cm)	수량 (당초수량)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소	성명	권리명	관계인	내용
1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28-50 (산228-1)	소나무	8	0주 (5주)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126	학교법인 정의학원			
			밤나무	10	0주 (8주)					
			아카시아	10	0주 (18주)					
2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산211-15 (산211-5)	소나무	8	0주 (35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 11동 701호	박순태			
			밤나무	10	0주 (12주)					
			아카시아	10	0주 (17주)					

※ 수목은 모두 자생수목으로 토지매입비에 포함되어 물건조서에서 제외됨

㊟국방부고시 제2004-35-1호

실시계획승인(변경)

1. 관련근거

서울시보 제2582호('04.9.10) 92쪽, 국방부
고시 제2004-35호

2. 위 관련 국방부 고시 제2004-35호의
고시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변경 고시
합니다.

2005년 3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시행자 : 육군참모총장
2.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3. 사업의 개요 : '04 군사용 사유지 매수
4. 시행기간 : '04. 9. 3~'05.12.31
5. 사업시행부대와 그 주소
 - 가. 시행부대 : 육군 제7273부대
 - 나.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소하 2동 사서함
3호 ☎ (02) 801-6465

6. 토지의 세목

- 변경전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산
12-413번지의 1필지 25,106㎡중 3,438㎡
(1,040평)
- 변경후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산
12-715번지의 3필지 3,629㎡(1,098평)
(토지세목조서 별첨)

토 지 세 목 조 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현실 이용	용 도 지 역 또 는 지 구	소 유 자		소유권이의 권리인		
								주 소	성 명	주소	성 명	권리명
계		4필지		3,629	3,629							
1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산12-715	임	34	34	부대 진입로	자연 녹지/ 도시 지역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4 진주아파트 16동 502호	김형식			
2		산12-716	임	3,189	3,189	부대 진입로						
3		산12-510	임	332	332	도로 법면 부지						
4		산12-718	임	74	74	관사 진입로						